

정책보고서 2008-49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1990~2006) and Comparison of Family Policies
among OECD Members

고 경 환
장 영 식
강 지 원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s), 그리고 순사회복지출(Net Social Expenditures)의 추계와 국제비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 이들 통계들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매년 제출해야 할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출규모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매년 지출규모 파악과 추이분석에 초점을 두고 보고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여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작성기준의 변경이나 분류체계의 변경, 그리고 기존 미 생산된 부분의 추가 생산 등 OECD에 제출한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나아가 이에 대해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관계전문가의 연구활동에는 물론 복지재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복지재정 문제와 사회정책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 및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자, 정부의 통계담당자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 장영식 연구위원, 강지원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은 그 동안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실의 김영균과장, 연구진행과 원고검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현영남사무관, 연구결과와 추이 등에 수시로 관심을 보낸 여러 독자와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노동사회부의 David GRUBB 등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본 연구진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류근춘 연구위원과 최성은 부연구위원에게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또한 研究進行 過程에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 協조하여 주신 공공 및 민간기관들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조사와 자료정리를 꼼꼼히 해 주신 정영애 선생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著者의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목 차

요 약	11
I. 서 론	31
1. 연구배경	31
2. 연구목적 및 내용	33
3. 연구방법	34
II. 사회복지지출의 개념 정의	39
1.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39
2.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54
III.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69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69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79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83
IV.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93
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93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97
3.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01
4.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114
5.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6

6.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117
7. 국제비교	119
V. OECD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125
1. 서론	125
2. 이론적 배경	132
3. 분석 및 결과	148
4. 결론 및 정책제언	166
VI. 요약 및 연구의 한계	171
1. 요약	171
2. 연구의 한계	174
참 고 문 헌	176
부 록	191

표 목 차

〈표 II-1〉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모형: 공공부문	47
〈표 II-2〉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모형: 민간부문	53
〈표 II-3〉	사회복지재원 형태와 범위	61
〈표 II-4〉	순사회복지지출 산출과정 개관	68
〈표 III-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70
〈표 III-2〉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72
〈표 III-3〉	4대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과정	73
〈표 III-4〉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79
〈표 III-5〉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80
〈표 III-6〉	자발적 민간부문의 개념적 구성항목	82
〈표 III-7〉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84
〈표 III-8〉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85
〈표 III-9〉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89
〈표 IV-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연도별, 기능별	94
〈표 IV-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연도별, 기능별	98
〈표 IV-3〉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연도별, 기능별	104
〈표 IV-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6)	108
〈표 IV-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6)	112
〈표 IV-6〉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기능별	115
〈표 IV-7〉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6)	117
〈표 IV-8〉	우리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6)	118
〈표 IV-9〉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 지출의 비교(2006): 한국, OECD평균	119

〈표 V-1〉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2003)	120
〈표 V-2〉	주요 OECD국의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비교(2003)	121
〈표 V-3〉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3)	122
〈표 V-4〉	OECD SOCX의 가족급여 지출 하위항목의 예	129
〈표 V-5〉	에스핑 안텔센의 복지국가 유형	140
〈표 V-6〉	총 가족조세격차의 비교(2007년 기준)	153
〈표 V-7〉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율 비교	155
〈표 V-8〉	합계 출산율과 연령별 시설 이용율	156
〈표 V-9〉	변수들의 상관관계	158

그림 목 차

[그림 II-1]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종류별 포괄범위 비교	58
[그림 II-2]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	60
[그림 IV-1]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제도별(1990~2006)	103
[그림 IV-2]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재원별(1990~2006)	103
[그림 V-1]	가족정책의 분석모형	150
[그림 V-2]	가족정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160
[그림 V-3]	각 유형별 대표국가들의 위치	161
[그림 V-4]	2000년 군집화분석에 따른 덴드로그램	163
[그림 V-5]	2003년 군집화분석에 따른 덴드로그램	163
[그림 V-6]	항목별 지출을 통해 본 유형별 위치	164

부 표 목 차

〈부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	192
〈부표 2〉 교통·통신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194
〈부표 3〉 사회복지지출	196
〈부표 4〉 사회복지지출(구성비)	196
〈부표 5〉 사회복지지출(증감률)	198
〈부표 6〉 사회복지지출(GDP대비)	198
〈부표 7〉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200
〈부표 8〉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202
〈부표 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증감률)	204
〈부표 10〉 기능별 사회복지지출(GDP대비)	206
〈부표 11〉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08
〈부표 12〉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212
〈부표 13〉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14
〈부표 1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16
〈부표 15〉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220
〈부표 16〉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22
〈부표 17〉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224
〈부표 18〉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228
〈부표 19〉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30
〈부표 20〉 총사회복지지출	232
〈부표 21〉 총사회복지지출(구성비)	233
〈부표 22〉 사회복지지출 총괄(증감률)	234

〈부표 23〉	사회복지지출 총괄(GDP대비)	235
〈부표 2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236
〈부표 2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237
〈부표 2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증감률)	238
〈부표 27〉	기능별 사회복지지출(GDP대비)	239
〈부표 2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240

부도 목 차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	241
[부도 2]	사회적 급여의 범위: 의사결정나무분석	242
[부도 3]	GDP와 총사회지출 추이	243
[부도 4]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243
[부도 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44
[부도 6]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244
[부도 7]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245

요 약

□ 용어의 명칭

- 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복지지출
-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
- Gross 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
- Net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

1. 연구배경과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를 제출하고 있음.
- OECD는 통계작성 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되 통계의 개선을 위해 일부 기준들을 이따금씩 변경함에 따라 매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2003년에는 사회복지지출을 13가지 기능별로 분류하던 기존방식을 9가지로 재편하여 분류하고 있음.
 - 2004년에는 OECD가 주거급여의 분류체계를 변경하고 포괄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주거급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

~ 2003년	2004년 ~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	현금급여 · 주거수당 · 기타현금급여
	현물급여 · 주거지원 · 기타현물급여

※ 참고로 우리의 공공부조제도에 주거급여는 있지만 이는 생계급여를 보충하는 성격의 급여이어서 그 동안 공공부조에 포함하였음. 앞으로 공공부조제도의 주거급여가 개별급여로 정착되면 OECD의 주거급여로 포함예정(이에 대해 이미 OECD와 협의하였음).

- 2006년에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해 구성항목의 재구조화(근로인센티브, start-up incentives, 장애인 통합정책 등 추가).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정책수립이나 복지수준 평가, 국제비교 또는 복지정책 연구 등에 빈번히 활용되는 국가 기본통계로 매년 Up Date가 요구됨.

- 참여정부가 국민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복지계획수립(200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사회복지·보건분야 투자계획(2004, 2005),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2006), 그리고 ‘복지비전 2030(2006)’ 등에 기본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보건복지재정 투자방향 및 투자전략(보건복지부, 2008)” 수립에도 핵심통계로 활용하고 있음.
- 나아가 국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우리의 복지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인용

□ 나아가 OECD는 1980년 이래 20여년 동안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의 제출만 요구하다 2000년부터 회원국들에게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과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추계를 새로이 추가하고 있음.

- 총사회복지지출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지출에 자국의 자발적 민간
 급여를 추가
 -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
 상의 혜택은 추가하고 부담은 차감한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
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을 생산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2. 사회복지자원의 유형과 체계

- 공공부문 자원체계
- 일반정부와 사회보험으로 구성

〈표 1〉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틀: 공공부문

영역	구 분	세부항목	
중앙 정부	사회보험	· 공적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사회 복지 서비스	취 약 계 층 지 원	아동 ·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 ·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특수학교운영지원
			모·부 자 지원 등 · 시설지원 ·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 여성복지단체
			노인 · 노인복지서비스 · 경로연금
			기타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여성·보육	· 보육사업 · 여성복지(여성권익증진)	
	보 훈	· 보훈대상자 보상금 및 교육, 단체, 의료지원	
	보건의료	· 정부부문의 보건의료비(시설·장비 포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자활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 정책 · 청년 실업 대책	
	조세지출	·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관련 · 사회보장관련	
	공공요금감면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요금 감면제도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	· 새터민 정착지원금과 교육 · 법률지원 · 저소득층아동, 유아 지원 ·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지방 정부	사회복지예산	·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편성한 사회복지예산	

주: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관련 기금으로는 사회보험기금과 우체국연금기금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응급의료기금, 노동부 소관의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성부 소관의 여성발전기금, 보훈처 소관의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총리실 소관의 복권기금 등.

□ 민간부문의 자원체계

○ 기업, 제3섹터, 공동체로 구성

〈표 2〉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틀: 민간부문

영역	구분	세부항목
기업	기업복지	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퇴직금 · 4대보험 고용주부담분 · 산전후 휴가급여(60일, 고용주분) ·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임금
		비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고용연계급여(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등) · 기업의 사내(후생)복지(체력단련비, 각종 수당 등)
	사회공헌	· 사회복지목적성 기부금
	공공요금 감면	·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공기업 포함)
시장	사보험 보험금	· 생명보험에서 만기환급형을 제외한 보장성(사망, 상해, 질병 등) 보험금 · 손해보험에서 만기환급형을 제외한 보장성(화재, 장기손해, 자동차, 보증, 개인연금 손해 등) 보험금
제3섹터	지출	종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교회의 사회봉사비 등)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설의 총지출 · 이용시설의 총지출 · 미신고시설의 총지출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모금	모금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모금기관의 모금 · 민간모금기관의 모금
		협회·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협의체의 자체 모금
자원봉사	·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공동체	공제급여	· 공제회의 공제급여
	사적이전	· 가족, 친척 등에 의한 현금이전

주: OECD작성기준에서는 시장의 사보험의 보험금, 제3섹터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공동체의 사적이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조세와 사회보험료 체계

○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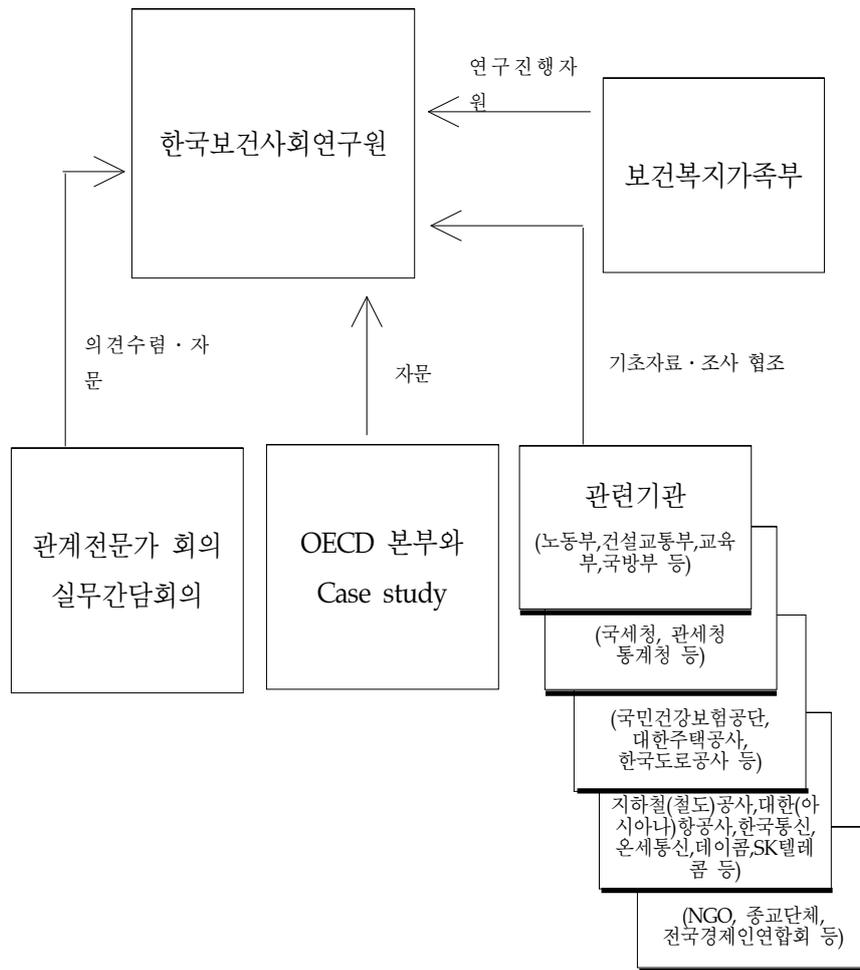
〈표 3〉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틀: 조세와 사회보험료

영역	구분	세부항목
조세부담	1. 직접세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기업) 질병휴가급여
	2. 간접세	이전소득자의 가계지출
	3. 사회보험료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법정민간급여에 부과되는 사회 보험료
조세혜택	1. 관세 감면	장애인용 의료용구 등의 수입물품 감면
	2.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용 자동차
		· 구입단계 · 등록 및 보유단계
	3. 재산세 등 감면	비영리법인
	4. 근로소득 공제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기부금 등 공제
5. 법인세 감면	기업	

3. 개념과 범주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있는(또는 처할)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법정민간부문으로부터 수령하는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와 사회복지관련 정부의 재정지출”을 의미함.
 - 사회적 급여결정과정에 대해서는 (그림 1) 참조
 - 추계영역에 대해서는 (부표 1) 참조
-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에 자발적 민간부문을 포함한 총괄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의미함.
- 순사회복지지출이란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은 추가하고 부담은 공제하여 얻은 실제의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을 순지출로 보아야 한다는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음.
 - 추계과정에 대해서는 (부표 2) 참조
 - 즉 한 국가가 지출하는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사회급여수령자 등이 부담 하는 조세금액은 공제하고 조세혜택금액은 더하여 얻는 통계임. 따라서 총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순사회복지지출 규모보다 큰 것이 일반적임.
 - 여기서 총(Gross)의 뜻은 사회급여수령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간접세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임.

4. 연구수행체계



5. 연구내용

-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6년
-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6년
 - 관련기관의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예산(결산)자료, 통계연보 등)
 - 관련기관의 전산자료 분석(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세청, 건설교통부, 관련 민간기관 등)
 - 기초자료수집의 한계로 일부 미생산된 항목에 대하여 생산실시 또는 통계생산방안 수립
- 총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6년
 - 자발적 민간부문의 실태조사, 자료수집 및 추계
-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6년
 - 조세의 부담 및 조세지출 관련 자료수집 및 추계

6.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국내자료는 사회복지관련 문헌을 통해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제도화 그 성격을,
 - 외국자료는 OECD가 최근 발간한 통계작성기준과 추계자료, 외국참고서, UN의 국민계정체계(1993)를 참고.
- Bottom-up 방식
 - 사회복지관련 각 행정부처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통계연감과 각 사회보험의 통계연보(결산서) 등
 - 정부부문 :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험 :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 자발적 민간 : •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 특정집단의 공제회 보상금 등
- 조세혜택 : • 비영리공익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세감면액
•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에 따른 감세금액
•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 전산자료는 사전에 산출방법과 분석형태를 해당기관에 제공한 후 수집
- 법정민간 : • 법정퇴직금(공적연금의 퇴직수당 포함)
• 산전후휴가급여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의 감면금액 등 일부
- 조세혜택 : • 장애인용 자동차세의 면세금액
• 장애인용의료용구의 수입물품 관세감면금액 등
- 조세부담 : •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등

□ Survey(조사연구)

- 법정민간 :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의 감면액 일부
- 자발적 민간 : • 민간모금단체 배분액
•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참여 실태 등

□ 2차자료 수집 및 가공분석

- 법정민간 : • 정부부문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용(직접현물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등
- 조세부담 : • 이전소득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과 간접세액
• 법정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과 간접세액

- 산전후휴가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과 간접세액
- 유급질병휴가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과 간접세액
- 조세혜택에 따른 감세금액의 간접세액

□ OECD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 통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질의 또는 토의

□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 학계, 보건복지부, 관련기관 등 관계자와 의견수렴

7. 추계의 결과

가.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

□ 2006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66조 4010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 GDP) 대비 7.83%임. 이는 10년 전(1996)에 비해 4배, 5년 전(2001년)에 비해 2배의 높은 증가 속도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금 액(조원)	5	13	29	34	36	41	49	56	66
경상 GDP 대비 %	2.91	3.34	4.95	5.44	5.31	5.61	6.34	6.86	7.83

나. 사회복지지출 추계

- 2006년도 사회복지지출은 84조 93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 GDP) 대비 10.01%임. OECD통계를 생산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금 액(조원)	7	18	47	48	49	56	67	73	85
경상 GDP 대비 %	3.95	4.64	8.12	7.72	7.22	7.79	8.65	9.04	10.01

-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01%(06)로 OECD 회원국 중 복지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16.59%, 2003년, 이후 동일연도), 일본(18.39%)에 비하여 약 50%수준임. 특히 GDP 대비 30% 수준의 스웨덴(31.85%), 프랑스(29.08%), 독일(28.40%) 등에 비해서는 약 30% 수준임.

OECD주요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3)

(단위: 경상 GDP 대비 %)

OECD 평균	한 국 ¹⁾	스웨덴	프랑스	독 일	덴마크	영 국	네덜란드	일 본	미 국
21.83	10.01	31.85	29.08	28.40	27.80	21.43	21.38	18.39	16.59

주: 1) 한국은 본 연구결과이며 2006년 임.

자료: 외국자료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6.

다. 총사회복지지출 추계

- 2006년의 총사회복지지출은 102조 3300억원으로 요소비용에 의한 GDP의 13.75%임. 총사회복지지출의 주요 급여부문을 백분율로 보면 '공공지출'이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민간지출'이 18.1%를, '자발적 민간지출'이 17.0%를 차지하고 있음.
 - 총사회복지지출 중 공공지출의 비중은 스웨덴, 독일이 90%, 덴마크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발적 민간지출의 비중이 높은 미국은 61%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금 액(조원)	8	26	59	61	64	73	81	88	102
FC GDP 대비 %	4.56	7.46	11.63	11.20	10.69	11.53	11.75	12.36	13.75

라.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 2006년 순사회복지지출은 101조 5060억원으로 요소비용에 의한 GDP의 13.64%임.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13.75%)보다 0.11% 포인트 낮게 나타남.
 -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관련 조세부과가 조세감면보다 0.11%포인트 높다는 것을 의미함.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금 액(조원)	8	25	57	59	64	72	79	87	102
FC GDP 대비 %	4.56	7.15	11.13	10.84	10.65	11.44	11.57	12.24	13.64

마. 사회복지지출의 종류별 추이비교

〈표 4〉 사회복지지출의 종류별 규모추이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 (C+D)	7,573	8,912	10,908	12,624	15,336	26,481	30,849	38,770	55,908	
사회복지지출 (C=A+B)	7,371	8,682	10,649	12,293	14,915	18,514	21,557	28,547	47,085	
공공부문(A)	5,431	6,395	7,854	9,101	10,711	13,301	15,747	18,666	25,329	
법정민간 부문(B)	1,940	2,287	2,796	3,192	4,205	5,212	5,810	9,881	21,756	
자발적 민간 부문(D)	202	231	259	331	420	7,967	9,292	10,223	8,823	
GDP(조원)	186.7	226.0	257.5	290.7	340.2	398.8	448.6	491.1	484.1	
증가율 (공공부문)		-	17.7	22.8	15.8	17.7	24.1	18.3	18.5	35.6
전년대비 연평균						16.93				

〈표 5〉 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율 추이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 (C+D)	4.06	3.94	4.24	4.34	4.51	6.64	6.88	7.89	11.55
사회복지지출 (C=A+B)	3.95	3.84	4.14	4.23	4.38	4.64	4.81	5.81	9.73
공공부문(A)	2.91	2.83	3.05	3.13	3.15	3.33	3.51	3.80	5.23
법정민간 부문(B)	1.04	1.01	1.09	1.10	1.24	1.31	1.30	2.01	4.49
자발적민간 부문(D)	0.11	0.10	0.10	0.11	0.12	2.00	2.07	2.08	1.82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A)					6.38				

〈표 4〉 계속

(단위: 십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분
58,543	59,109	60,949	63,752	73,070	80,693	88,253	102,330	총사회복지지출 (C+D)
47,160	47,015	48,058	49,386	56,460	67,390	73,275	84,930	사회복지지출 (C=A+B)
33,352	28,653	33,837	36,365	40,668	49,392	55,634	66,401	공공부문(A)
13,808	18,362	14,221	13,021	15,791	17,999	17,641	18,529	법정민간 부문(B)
11,383	12,094	12,890	14,366	16,611	13,303	14,978	17,400	자발적민간 부문(D)
529.5	578.7	622.1	684.3	727.7	779.4	810.5	848.0	GDP(조원)
31.6	-14.0	18.1	7.5	11.8	21.4	12.7	19.3	전년대비 연평균 증가율 (공공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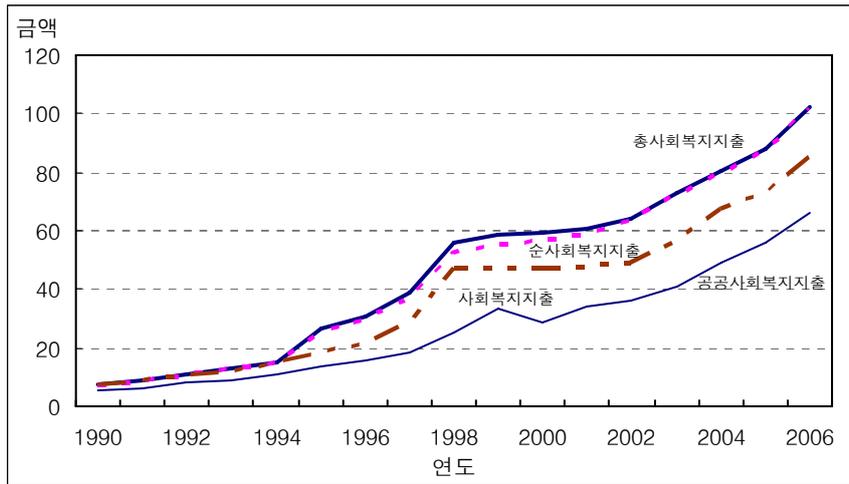
〈표 5〉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분
11.06	10.21	9.80	9.32	10.08	10.35	10.89	12.07	총사회복지지출 (C+D)
8.91	8.12	7.72	7.22	7.79	8.65	9.04	10.01	사회복지지출 (C=A+B)
6.30	4.95	5.44	5.31	5.61	6.34	6.86	7.83	공공부문(A)
2.61	3.17	2.29	1.90	2.18	2.31	2.18	2.18	법정민간 부문(B)
2.15	2.09	2.07	2.10	2.29	1.71	1.85	2.05	자발적민간 부문(D)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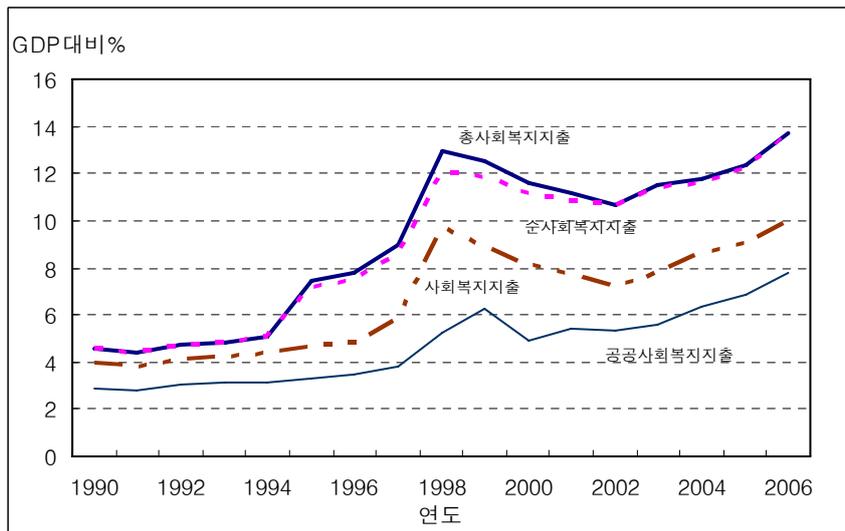
[그림 2] 사회복지지출의 종류별 추이비교(금액)

(단위: 조원)



[그림 3] 사회복지지출의 종류별 추이비교(GDP대비)

(단위: %)



8. OECD국기의 가족정책 비교

- 공공부문의 가족급여(OECD SOCX No. 5)와 각국의 가족정책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OECD 23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함.
 - 독일(영국)은 전통적인 가족의 소득보장에 대한 지출이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중요한 정책대상이 아니며, 어린 영아에 대해서는 가족내 돌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매우 발달.
 - 반면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소득보장에 대한 헌신과 함께 일가족양립에 대한 지원 및 성과도 높게 나타남. 뿐만 아니라 어린 영아에서 유아까지 돌봄 서비스가 잘 발달해있어 가장 균형 있는 가족정책을 나타냄.
 - 한편 미국(영국)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있으나 일가족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출은 전혀 없으며 영아에 대해서는 시장 서비스의 구매에 의존하는 반면 유아를 위한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헌신은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출과 보육이용률(0~5세) 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보육투자가 증가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연관. 또한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은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9. 연구의 한계점

- 사회복지 공급주체간 지원금의 이중계산 부분 존재.
 - 기업재단의 지출금액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일부 금액이 포함. 이러한 이중계산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각 기업재단에 배분된 금액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어 이 부분만큼 과다계상.
 -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의 배분처와 배분액 또는 각 기업재단의 수입자료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심층연구가 필요.

- 본 연구에서 간접세율은 국민 모두에 대한 간접세율이 아니라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임. 따라서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기초자료의 활용상 한계가 있음.
 - 현재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이전급여수령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액을 추계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사례수가 너무 작아(전체조사가구의 10%, 550가구, 2005) 세부적인 분석이 불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지침에 따라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하고 있음. 다만, 가계 부문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 항목을 일부 포함하는 한계점이 있음(아래의 Minim 적용).

Minim = (일반소비세 + 국내소비세)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 임금)

Medium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 (민간소비 + 정부소비 - 공무원 임금)

Maxim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 민간최종소비지출

- 기초자료 부족으로 세부 분류할 수 없어 일괄분류한 법정퇴직금과 실업급여

-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수령 원인별(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해고)로 분류·생산되어야 하지만 기초자료 부재로 '실업'에 일괄분류하고 있음
 - '실업급여'에는 '실업'과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령자의 실업유형을 분류할 기초 자료가 없어 '실업'에 일괄분류하고 있음.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기업의 정리해고에 의한 실적이든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실적이든 원인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있음.
- 끝으로 자료공개의 비협조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공제회의 보상액을 포함할 수 없었음.

I.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장노력을 나타내는 통계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수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공공부문과 법정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들은 GDP대비 약 30%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 못지않게 자발적 민간부문이 큰 국가들도 있어 국가의 복지수준을 사회복지지출로만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OECD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한 나라의 총체적 사회복지지출수준을 나타내고자 사회복지지출과 자국의 자발적 민간급여를 합한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추계를 권유하고 있다. 또한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공제한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¹⁾이라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여 회원국에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이 통계의 추계준비를 요구받아 2000년에 처음 제출하였다.

최근 OECD가 일부회원국을 대상으로 추계한 순사회복지지출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국가간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

1) Net Social Expenditure란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통계이다. 이는 마치 총소득(Gross Income)에 조세를 공제한 후의 순소득(Net Income)을 추계하는 것과 같다.

들어 비슷한 수준에서 수렴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요소 GDP²⁾ 대비 사회복지지출(2002년)은 덴마크 32.5%, 스웨덴 37.8%, 그리고 미국 17.8%임에 비하여 순사회복지지출은 각각 덴마크 24.9%, 스웨덴 30.8%, 그리고 미국 27.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가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차이는 약 20% 포인트임에 비해 순사회복지지출은 약 6% 포인트로 그 차이가 크게 줄었으며 OECD선진국들의 요소 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이 약 23% 전후 수준임을 알 수 있다³⁾. 이는 각 국가별 복지수준이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 민간부문과 조세제도를 반영하면 비슷한 수준이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OECD회원국의 경우 순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총사회복지지출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조세혜택 보다 조세부담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들 통계는 OECD가 매년 생산을 시도하는 통계인 만큼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기초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 통계는 국제기구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 수행에 앞서 국내적으로 필요한 연구라는 점이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전체의 외형적인 지출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조세 부담에 따른 실질이전소득의 감소와 반대로 조세감면에 의한 실질이전소득의 증가분을 모두 감안한 지출규모는 얼마인가? 나아가 그 수준은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기초적인 통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정부와 학계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발적 민간부문과 조세부문을 과연 추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사회의 통계수집 체계나 통계생산 현황으로 보아 사회복지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2) 시장가격에 의한 GDP에 정부부문(간접세,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요소비용만을 고려한 GDP를 의미한다(제IV장 제5절 각주 30번 참조).

3) 참고로 복지후진국인 일본의 사회복지지출은 15.6%(97), 한국 7.41%임에 비하여 순사회복지지출은 일본 15.7%, 한국 9.28%이다.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조금씩 극복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제도의 급여를 총체적으로 추계해 봄으로써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다만 순사회복지지출 통계가 사회복지분야의 총체적 통계인 만큼 생산상 한계를 한 두 해의 연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각 부문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기초자료 수집과 생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비로소 이러한 연구가 몇 년간 연속적으로 축적될 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지출통계의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OECD통계생산기준에 따라 그 동안 추계한 '사회복지 지출'에 자발적 민간급여를 추가한 '총사회복지지출'과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 데 있다. 이들 통계는 우리의 복지수준을 총량적 또는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로 시계열자료를 확보하여 지출수준과 동향을 파악하고,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지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를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OECD 추계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종류별 추계방법을 알아본다. 제Ⅳ장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총 및 순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총괄측면의 국제비교와 아울러 9개의 기능 중 가족급여에 국한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건의를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문헌연구,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OECD사무국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관계전문가 회의 등의 연구방법에 의하여 진행하였다.

가. 국내외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국내자료와 국외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내자료는 사회복지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제도, 그리고 기존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추계는 8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순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기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순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각 분야별 연구는 일부 있다. 즉, 기업복지제도의 실태, 민간부문의 모금활동,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현황, 도시·농촌가구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간접세 추계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실태에 대한 현황분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점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필요한 지출규모 등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마저도 사회복지분야의 조세혜택에 대한 규모를 추계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한편 세부적으로 참고한 자료는 각 복지사업별 사업개요와 업무지침서, 통계자료집, 법령집, 그리고 각 단체나 기관의 보고서 또는 내부자료 등의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제도의 세부내용과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자료는 OECD가 최근 발간한 통계작성기준과 추계자료(OECD, 2007; 2001a; 2001b; 1998; Adema, W. 1999), 사회복지 관련 외국참고서, 그리고 UN의 국민계정체계(1993), 간접세의 거시자료로 OECD의 Revenue Statistics(1999; 2000; 2002)를 참고하였다.

나. Bottom-up방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행정부처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특성파악과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기초통계자료는 사회복지관련 각 행정부처의 세입세출예산서와 각 공단의 통계연보(결산서), 여러 기관의 전산자료 분석,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조례에 의한 조세감면자료가 수록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연감을 사용하였다. 이 중 세입세출예산서와 통계연보는 공표자료를 이용하여 하위단위의 지출항목을 재분석하였다. 즉 공표자료를 세부 분해하여 전체구성을 파악하는 Bottom-up방법을 사용하였다.

다. 2차자료수집 및 가공분석

일부 복지제도의 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2차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 또는 담당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얻었다. 먼저 2차자료를 수집하여 가공분석한 것은 정부부문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용(직접현물급여)에 임대수입을 공제한 주거지원 급여, 법정민간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인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등 이다. 다음 급여내용이 수록된 원자료의 경우 외부유출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에 산출방법과 분석형태를 해당기관에 제공한 후 분석결과를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법정퇴직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휴가급여 등이 있다. 이렇게 수집된 기초자료는 OECD 추계방법에 따라 기능별 급여주체별로 분류하였다. 이때 기능별 분류를 더욱 명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등의 급여나 정부의 세출항목, 그리고 전산분석자료를 가능한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데 노력하였다. 다만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자료원을 언급하면서 향후 생산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Survey(조사연구)

조사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의 주요 영역인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의 감면액, 또한 자발적 민간부문인 민간모금단체·종교단체의 사회복지참여 실태 등이다.

마. OECD 관계자와의 사례연구(Case Study)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통계작성기준은 개괄적이며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각 국가간 상이한 제도에 대해 공통의 목표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본다. 즉, 국가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출하는 급여를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로 추계 하고자 공통의 기준을 설정하는 본질의 한계이다. 하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자로서는 보다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OECD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지출이나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통계작성의 기준 및 예시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체계가 선진국과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통계산출 과정에서 우리 제도를 각 기능별로 분류하거나 또는 포함여부에 대한 고심스런 내용에 대하여 OECD관계자들⁴⁾과 OECD 회원국의 통계생산 연구자들⁵⁾과 Case Study를 병행하였다. 이들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질의와 토의는 OECD 작성기준에 적합한 추계가 달성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4) 'OECD 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 Senior Economist, Maxime LADAIQUE Manager, 교육지표분석과의 Etienne ALBISER, 고용노동사회부의 David GRUBB 등이다.

5) 독일 연방보건복지부(Federal Ministry of Health & Social Security)의 Dr. Roland Berntsen, Dr. Jörg Peschner,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회복지계정 통계담당자인 Mr. Arne Kubitz 등이다.

바. 관계전문가 회의 및 실무간담회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 추계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추계의 정확성은 결국 통계의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당원의 연구진과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 노동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그리고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처음 생산하는 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산출방안에 대한 업무협약과 추계결과에 대한 실무간담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통계생산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추계결과의 한계점이나 향후 생산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주로 실무간담회 관계자는 자발적 민간급여와 관련된 기관들이다.

II . 사회복지지출의 개념 정의

1.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⁶⁾

본 장에서는 한 국가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용가능한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자원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을 규정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자원과 총량 추계방법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자원 총량은 본 연구의 작성기준인 OECD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을 밝히며, 본 장에서는 자원총량의 추계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는 만큼 혼동의 여지가 없기를 바란다.

가. 사회복지자원의 개념과 특성

1) 사회복지자원의 개념

사회복지자원(social welfare resources)이란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자원(resources)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원적 측면에서 두 단어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자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서 복지(welfare)는 어의적으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본 절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5)와 자발적 민간급여 실태조사』, 2007의 제II장 제1절 내용(김교성 집필) 일부를 재정리한 것이다.

이 개념에서 핵심은 사회구성원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needs)의 범주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베버리지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같은 욕구인식의 틀과 그것을 구체화하여 어떤 자원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 대(對) 자원에 관한 제도적 목록이 욕구의 범주를 나타내고 있다.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적 차원의 욕구(individual needs)는 무한하며 매우 다양하다. 개인적 수준과 범위에 따라 상이한 이러한 욕구들을 일일이 충족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다.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이 하나의 사회적 개체로써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성별, 계층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기본적인(basic) 욕구, 즉 사회적 욕구(social needs)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간의 생존, 성장,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결여되거나 결핍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각종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s)가 발생하고, 이것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직면하게 되는데, 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시간적 변화 상태를 의미하는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요소인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social)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인간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욕구와 문제, 그리고 위험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집합적 노력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이윤추구와 같은 경제적 동기가 아닌 이타주의와 상부상조, 연대의식과 같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추구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복지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 문제, 위험을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원(resources)이란 사전적 의미에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의식주를 비롯하여 경제적 생산을 위한 원료와 에너지 등 자연에 의해 주어지며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인적차원의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 가운데,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의 개념을 결합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물질적 요소를 총칭하여 사회복지자원(social welfare resources)이라 규정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자원의 특성

사회복지자원의 범주와 총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자원이 일반적 의미의 자원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자원은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할 때 자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자연상태의 자원이 적절한 방식으로 가공되어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적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자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효용을 줄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가공되지 못한다면 현실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자원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자원은 양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규모는 한 사회의 생산 및 동원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능력은 경제발전의 수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자원의 범위와 형태는 당시의 역사성·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며,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사회복지자원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 되는가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의 헤게모니는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자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개념과 범위가 변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형성이전에 복지 성격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잔여적이었으며 자원의 범위 역시 매우 협소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한 소위 복지국가의 발달단계에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보편성을 가지고 되고 가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자원 역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자원의 확대가 총체적 차원에서 복지발달로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양적측면에서 사용가능한 사회복지자원자의 종류와 양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질적 측면에서 복지발달로 해석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질적 측면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자원의 성격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하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이 탈상품화와 계층화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복지발달의 성격을 유형화했듯이, 질적 측면에서 복지발달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즉 전체적인 총량의 많고 적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총량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 항목의 내역과 성격, 지출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자원은 대체로 영리적 목적의 상품성으로부터 벗어나 비영리성 내지 탈상품성을 띤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 가운데 하나인 시장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위이지만, 기업이 제공하는 기부 및 후원, 또는 기업복지적 차원에

서 제공되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과 법정퇴직금 등은 그 자체로 판매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자원으로 간주된다. 다만, 시장에서 제공하는 사보험 보험금은 이러한 특성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나. 사회복지자원 체계

앞서 살펴본 추상적 개념의 사회복지자원이 현실에서 지출되고 있는 총량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자원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자원체계(social welfare resources system)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체계(system)란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부분들 간의 유기적 관계로 형성된 일련의 복합체를 말한다.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적으로는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전체로서 작동할 때 완전한 의미와 그 본래의 목적을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자원체계란 사회복지자원이 최종적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련의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적 구조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자원체계는 크게 최종수요자에게 사회복지자원을 생산하고 이를 전달 또는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급주체'와 제공되는 '자원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공급주체에 따른 유형화

공급주체라 함은 사회복지자원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주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 2004)이 정의한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의미를 포함한다. 길버트와 테럴의 전달체계란 서비스의 제공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 장치(arrangements)를 의미하는데, 이는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도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공공성(公共性)을 기준으로 공적주체와 사적(민간)주체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자원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the third sector), 공동체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공적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국가와 공기업 및 공단을 포괄하는 공공기관과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문을 통해 지출되는 자원의 유형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공적이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 통신,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등의 조세지출 등이 해당된다.

한편 공급자로서 사적주체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윤추구의 유무에 따라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으로 구분되며, 다시 전자는 기업과 시장으로, 후자는 제3섹터와 공동체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제3섹터(the third sector)란 비정부기구(NGO)와 비영리기구(NPO)를 포함하여 국가와 시장의 영역이 아닌 법인형태의 공식적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시민단체, 공익재단,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이 해당되며, 공동체는 법인의 형태가 아닌 비공식적 조직형태를 띠는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민간부문을 통해 지출되는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영리부문에서는 기업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기업복지와 사회공헌성 후원 및 기부금, 시장에서 사보험 상품을 통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된다. 민간 비영리부문에서는 제3섹터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모금과 후원,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자원봉사활동 등과 가족, 친척 등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 현금이전과 공제회의 공제급여 등이 있다.

2) 자원형태에 따른 유형화

사회복지자원은 공급되는 형태에 따라서 크게 현금자원과 현물자원, 그리고 그 외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 2004)은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크게 현금(cash)방식과 재화(goods)나 서비스(services)와 같은 현물(in-kinds)방식, 그리고 그 외의 형태로 증서(vouchers)와 세금공제(tax credits), 권력, 신용 등으로 분류했다.

현금은 급여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화폐로 지급되는 형태로, 자원의 소비시점에서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없어 목적효율성이 낮아지는 반면, 보다 많은 소비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자원의 전달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회적 낙인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현물방식은 그 반대의 특성을 갖는다. 한편 증서는 현금과 현물방식의 장점을 접목시켜 소비자의 선택과 사회적 통제를 조화시키고자하는 의도에서 구상되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정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한국 사회복지자원의 유형과 특성

앞서 제시한 사회복지자원과약을 위한 분석틀과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가 주는 실천적 함의에 기초하여,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자원의 유형과 특성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 부문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자원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의 형태에는 사회보

협,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조세지출, 공공요금 감면,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이 해당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일반 회계, 특별회계,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마련된다. 여기서 정부소관기금이란 4대 사회보험기금과 우체국연금기금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응급의료기금, 노동부 소관의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성부 소관의 여성발전기금, 보훈처 소관의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총리실 소관의 복권기금을 말한다. 이를 세부적인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모형: 공공부문

영역	구분	세부항목	
중앙 정부	사회보험	· 공적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사회 복지 서비스	아동	·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	·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특수학교운영지원
		노인	· 노인복지서비스 · 경로연금
		가족	· 모·부자시설지원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보육사업
		여성	· 여성복지(여성권익증진) · 여성복지단체 지원 등
		기타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보건의료	· 정부부문의 보건의료비(시설·장비 포함)	
	보훈	· 보훈대상자 보상금 및 교육, 단체, 의료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자활지원 · 일자리창출 지원 정책 · 청년 실업 대책	
	조세지출	·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관련 · 사회보장관련	
	공공요금감면	·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 요금 감면제도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	· 법률지원 ·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지방 정부	사회복지예산	·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 자체사업 · 새터민 정착지원금과 교육(2008년부터 지방이양) · (저소득층) 아동, 유아 지원(2008년부터 지방이양)	

사회보험은 2008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외한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제공되는 각종 연금과 급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 기관 및 인력에 지출되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 의료급여, 일시적 구호사업, 자활지원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보육·여성, 노인, 장애인, 모·부자, 보훈서비스의 수급대상 영역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노인복지서비스는 경로연금, 일자리 지원 및 운영, 고령화대책기구 자원사업 등으로, 아동복지서비스는 보육을 제외한 저소득가정지원, 아동보호사업 등이 해당되며, 모·부자복지서비스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부자시설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단체지원, 장애인생활시설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등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부소관 사업은 자활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장애인 취업훈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용역사업, 사회복지사무소지원, 건강가정육성사업 등은 기타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공공부조와 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급여와 재정지출은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사업 지출, 내부거래지출, 특별회계재원에 의한 지출을 포함한다. 보건의료사업은 건강증진질병관리, 원폭피해자지원, 정신질환 지원, 의료체계구축, 보건산업진흥, 한방정책,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예산에 의한 내부거래 지출은 크게 기관의 인건비등의 운영비와 차관상환금으로 구성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부소관 일자리 창출사업이 해당되며, 크게 청년실업대책사업,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고용 인프라구축 및 중소기업 유희일자리 충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재정용자특별회계,

국유재산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재정부지출을 포함한다. 조세지출은 2가지 항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하나는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의 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통한 조세감면과 소득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에 대한 조세감면과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간접세 면제가 해당된다.

공공요금감면은 교통요금감면과 통신요금감면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급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의 주체가 모두 사기업이므로 민간부문으로 처리한다. 교통요금감면의 경우 공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철도공사와 도시지하철공사가 운영주체인 KTX, 기차, 지하철은 공공부분에 포함되고, 항공은 민간부분에 포함된다.

예산편성기준 외 사회복지지출은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으로 지출되었던 사업이외에 사회복지 목적성을 띤 지출로, 그 내용은 국방부의 새터민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설비 지원, 취약계층 유아교육비, 급식지급, 장애인지원사업, 타 부처의 장애인지원사업,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실업대책지원사업, 법무부의 법률지원복지사업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되는 사회보장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예산 중 일반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건관리,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 혹은 지출로 추계할 수 있다.

2) 민간 부문

민간부문 사회복지자원의 체계는 아래 <표 II-2> 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입한 보험시장을 통해 제공되는 사보험은 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보장성 제도라는 점

에서는 사회복지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여 사회복지자원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구조는 민간부문의 자원을 기업, 시장, 제3섹터, 공동체로 구분하여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는 조금 다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은 크게 법정기업복지와 비법정기업복지, 사회공헌활동, 공공요금감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될 항목은 법정기업복지인데, OECD의 사회적 지출 개념을 따르고 있는 고경환 외(2003)에서는 이를 공공사회지출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에 의해 법정기업복지비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자원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정기업복지는 법적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자원으로써 법정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고용주부담금, 출산 전후 휴가급여 중 고용주 지급분(60일 이상 지급분), 질병휴가 기간 동안의 별정임금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기업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비법정 기업복지는 체력단련비와 각종 수당 등 사내복지와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과 같은 기업의 고용연계급여가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그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NGO 등에 대한 사회복지목적성의 기부금(품)과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제공되는 공공요금감면은 크게 교통부와 통신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통부문은 항공회사의 요금 감면을 의미하며, 통신부문은 KT, 하나로통신, SKT, KTF, LGT, 데이콤 등의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시내·시외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등에서의 요금 감면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부문 사회복지자원에는 개별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한 사보험을 통해 이전된 보험금 총액이 해당된다. 이것은 선행연구에

서 사회복지자원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불의의 사망·상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Adema, 2001), 위험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금 지출과 만기도래에 의한 저축성 보험금 지출의 성격을 분리해 내면 사회복지 자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한편 김교성·김종건(2006)의 연구는 최근 저소득층의 신용회복과 자산형성 지원 등 사회공헌기금으로 귀속되는 방향으로 그 활용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는 휴면계좌를 사회복지자원으로 시장부문에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용방향이 여전히 정책적으로 불분명함으로 제외하기로 한다.

셋째, 제3섹터는 그 성격상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하되 공급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의 특성을 가진다. 대표적인 자원제공 주체는 종교단체, 복지시설 및 기관, 시민단체, 그리고 모금기관 등이다. 우선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적 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현금 및 현물지출과 교인들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이 포함된다.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 부랑인시설 등의 생활시설과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 그리고 미신고시설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총량을 의미한다. 모금의 경우, 모금기관, 사회복지 관련협의체, 그리고 기타(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수행된 모금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3섹터에 의한 자원은 현금자원 뿐 아니라 각 기관·단체들에 의해 조성·지급된 현물후원 등이 포함되며, 이는 중요한 사회복지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 차원의 사회복지자원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과 개인 또는 집단단위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상호부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공제급여가 포함된다. 공제급여에는 군인, 경찰, 교직원, 지방공무원, 건설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제회가 포함되고, 사적이전은 가족과 친지에 의한 현금이전을 의미하며, 자

원봉사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산출량 접근법(output-related method)와 투입량 접근법(input-related method)이 있다. 전자는 자원봉사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노동시간에 화폐가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적대체법, 전문가대체법, 기회비용법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종합적대체법(global substitution method)은 자원봉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그와 같은 직업을 수행할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치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이며, 전문가대체법(specialized substitution method)은 자원봉사와 같은 직무의 숙련을 가진 전문가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자원봉사자가 무급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시장임금을 가치평가에 사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표 II-2〉 사회복지자원총량 세부 분석모형: 민간부문

영역	구분	세부항목	
기업	기업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퇴직금 · 4대보험 고용주부담분 · 산전후 휴가급여(60일, 고용주분) ·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별정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고용연계급여(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 기업의 사내(후생)복지(체력단련비, 각종 수당 등) 	
	사회공헌	· 사회복지목적성 기부금	
	공공요금감면	·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공기업 포함)	
시장	사보험보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에서 만기환급형을 제외한 보장성(사망, 상해, 질병 등) 보험금 · 손해보험에서 만기환급형을 제외한 보장성(화재, 장기손해, 자동차, 보증, 개인연금 손해 등) 보험금 	
제3섹터	지출	종교기관	·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설의 총지출 · 이용시설의 총지출 · 미신고시설의 총지출
		시민단체	· 시민단체의 사회복지목적성 지출
	모금	모금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모금기관의 모금 · 민간모금기관의 모금
		협회·협의체	· 사회복지관련 협회 및 협의체의 자체 모금
자원봉사	·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공동체	공제급여	· 공제회의 공제급여	
	사적이전	· 가족, 친척 등에 의한 현금이전	

주: OECD작성기준에서는 시장의 사보험의 보험금, 제3섹터 자원봉사의 현금가치, 공동체의 사적이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2.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가.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

OECD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에 이어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으로 정의된다. 다만 급여혜택이나 재정지원 중 특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직접지급이나 개별계약 또는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급여에는 현금이전일 수도 있고 재화나 서비스 같은 현물일 수도 있다.

“Social expenditure is defined as the provision by public institutions of benefits to,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argeted at,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during circumstances which adversely affect their welfare, prov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benefits and financial contributions constitutes neither a direct payment for a particular goods or service nor an 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 Such benefits can be cash transfers, or can be the direct(“in-kind”)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OECD, 2006)”.

이와 같이 사회복지지출의 공급주체는 공공부문이며, 객체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와 개인이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은 다음 네 가지 광의의 지출 카테고리 분류되어질 수 있다. 첫째, 연금(노령현금급여, 유족급여) 급여, 둘째,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소득지원(장애현금급여, 직업상해 또는 질병급여, 가족현금급여, 실업급여, 주거급여, 기타), 셋째, 공공보건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적 서비스(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가족서비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조세 전 지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에 자발적 민간부문을 포함한 총괄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총(Gross)의 뜻은 자발적 민간부문을 포함하고 사회보장 수급자가 수령하는 급여인 이전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소득세와 소비생활에서 부담하는 간접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순사회복지지출은 이러한 세금을 총사회복지지출에서 공제하고 조세혜택을 추가한 개념이다.

구체적인 재원범위와 급여요건은 다음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OECD에서는 순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지만 의미의 명료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 이유는 OECD가 순사회복지지출이란 것은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에 급여범위와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만 별도 추가한 입장에서 통계의 활용 목적만 분명히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아래의 개념은 OECD가 2001년 처음 제시한 것으로 회원국의 통계생산을 추진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나 작성방법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사회복지 차원의 노력은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현금급여와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를 통하여 사회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稅前 총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복지효과의 측정은 사회적 목적의 조세혜택(예: 아동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 급여수령자의 소비에 따른 간접세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순(稅後)사회복지지출이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부문

에서의 조세정책을 구사하는 재정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복지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경제의 생산량 가운데에서 그들이 배분 받는 비중으로 볼 수 있다.

“Social effort is not just determined by the prevalence of public and private social cash benefits and services, but also by the extent to which governments pursue social policy objectives through the tax system. To measure this effect on gross(before tax) social expenditure indicators, account has to be taken of tax advantages for social purposes(e.g. child tax allowances): direct taxation of benefit income: and, indirect taxation of consumption by benefit-recipients.

From the government perspective, “net(after tax) public social expenditure” gives an impression of budgetary efforts in the social field after tax. From the perspective of benefit-recipients “net total social expenditure” gives an impression of the proportion of an economy’s domestic production to which they lay claim(OECD, 2001)”.

이 통계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차원의 재분배(re-allocate)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참고로 OECD가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는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돌아가는 몫이 국내 총생산⁷⁾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Adema, W., 1999)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순사회복지지출은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순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중 어느 것이

7) 엄격히 말하면 요소 GDP를 의미한다.

더 클 것인가는 그 나라의 조세제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사회보장 수급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금액이 조세경감액(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이하 TBSPs, 조세혜택)⁸⁾보다 크면 순사회복지지출이 작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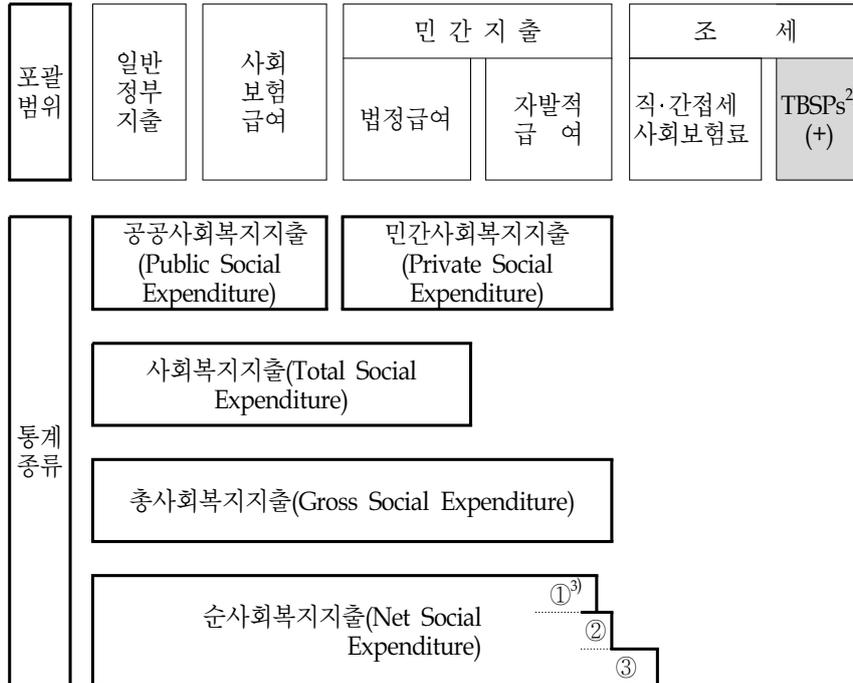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종류별 포괄범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림 II-1]과 같이 간략히 도시하여 보았다.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에 법정민간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것이며,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에 자발적 민간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더한 것이다.

또한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은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에 조세혜택은 더하고 이전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직·간접세는 공제한 것이다.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의 크기는 [그림 II-1]의 ①, ② 또는 ③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정부가 사회적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에게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재정적 조세혜택제도이다.

[그림 II-1]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종류별 포괄범위 비교



- 주: 1) Tax: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
 2) TBSPs((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비영리법인재산·근로자소득공제·지방세감면대상자·장애인용의료용구관세 등에 대한 조세혜택
 3) ①은 Tax > TBSPs, ②는 TBSPs = Tax, ③은 TBSPs > Tax 임.

조세혜택의 총액이 조세징수총액(직·간접세의 합)과 같다면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은 같을 것이다(그림 II-1에서 ②부분). 반면에 조세부담이 조세혜택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왼쪽으로 이동(그림 II-1에서 ①부분)하게 되어 결국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작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차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그림 II-1에서 ③부분)하게 되므로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보다 크게 될 것이다.

OECD가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을 구

성하는 각 포괄범위에 대하여는 [그림 II-1]과 같이 설정하고 있으나 각 부문간 이중계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어 향후 일부 통계작성 방법의 지침이 마련되리라 본다.

또한 [그림 II-1]에서 살펴본 순사회복지지출의 포괄범위를 추계과정측면에서 도시하면 [부도 1]과 같다. 특히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의 감면'은 비근로연계의 법정민간급여로 분류하여 도시하였다.

참고로 OECD가 일부 회원국에 대하여 이들 통계를 추계한 결과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도 조세부담이 조세혜택보다 높아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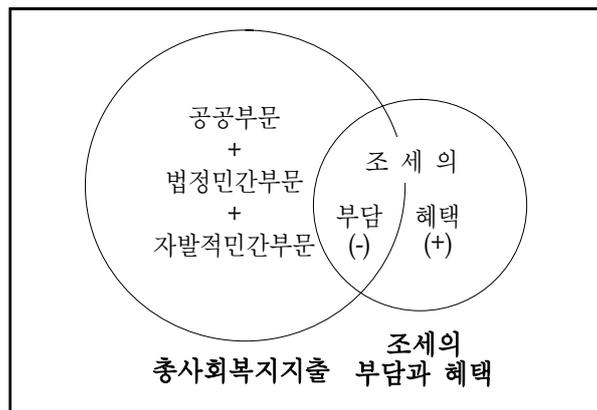
이들 통계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Social Expenditure와 Gross Social Expenditure, 그리고 Net Social Expenditure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OECD가 사용하는 Social Expenditure에 대하여 그 동안 '사회보장비'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을 통하여 보장을 강제하는 지출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출측면의 통계인 '사회보장비'라는 용어는 4대 사회보험의 재원측면의 통계와 용어상의 혼동이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OECD가 사용하는 Net Social Expenditure는 Social Expenditure 영역에 자발적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조세부문(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까지 추가한 통계이다(그림 II-2 참조). 따라서 이들 통계는 재원의 성격이나 영역의 범위 차이는 있지만 동일 영문표기부분(Social Expenditure)을 고려할 때 동일하게 한글용어를 표기하는 것이 앞으로 예견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Net Social Expenditure를 '순사회보장지출'이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자발적 민간부문은 불우이웃을 돕는 차원이지만 보장차원이 약하며, 또한 조세제도 중 조세부담은 반드시 차기의 사회보장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Social Expenditure는 '사

회복지지출⁹⁾로, Gross Social Expenditure는 '총사회복지지출', 그리고 Net Social Expenditure는 '순사회복지지출'로 부르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OECD에서도 용어는 국가의 특성 또는 통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선택하되 반드시 순(Net)과 총(Gross)이라는 용어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으로 OECD가 Social Expenditure, Gross Social Expenditure, Net Social Expenditure의 통계를 계속 발표할 계획이어서 향후 이용자의 혼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그림 11-2]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



9) 사회복지가 사회보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사회보장, 보건위생, 노동, 교육, 주택 등 생활과 관계되는 공공시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대상자는 전국민이며 그 범위도 생활과 관계되는 사회적 서비스 전부를 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보장은 빈곤상태에 빠지거나 생활 수준이 저하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최저한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공적제도로 국한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3).

나. OECD의 순사회복지지출 작성기준

1) 재원범위와 급여요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재원범위는 순수공공부문과 순수민간부문의 양 극단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이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사회적 급여인가? 둘째, 누가 재원을 부담하는가? 셋째, 누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재원범위를 분류하고 있다.

OECD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범위는 순수공공급여, 공공급여, 그리고 민간급여로 하고 있으며, 순수민간급여는 제외하고 있다(표 II-3 참조). 순수민간급여란 사회적 급여 성격이 없거나 있어도 개별적 계약으로 재원과 제공(운영)이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등을 받는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형태는 차츰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사회적 급여라 하면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로 공식화된 조직이 지출하는 재분배적·무상거래적 성격을 가진 급여를 말한다. 여기서 공식화된 조직은 일반정부(사회보험기관 포함), 고용주, NPO, 그리고 사회적 위험을 가진 특정집단의 공제회 등이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라 할지라도 시장가격에 기초한 개별적 계약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표 II-3〉 사회복지재원 형태와 범위

형 태	순수공공급여	공공급여	민간급여	순수민간급여
사회적급여 여부	○	○	○	×
재 원 부 담	공공	공공/민간	공공/민간	민간
제 공 주 체	공공	공공	민간	민간
본 연구포함 여부	○	○	○	×

주: ○표는 포함, ×표는 불포함

본 연구에 포함되는 사회적 급여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공공급여와 민간급여를 포함하되 시장가격에 기초한 개별적 위험에 대한 민간급여와 비사회적 급여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흐름은 [부도 2]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으로 볼 때 '비사회적 급여(1)'는 뿌리마디에 해당하며 '개별적 민간급여의 비사회적 급여(2)'는 자식마디에 해당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이란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류 또는 예측의 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한 추론규칙(induction rule)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판별분석, 회귀분석 등)에 비해서 연구자가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나무구조로부터 어떤 급여가 사회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급여가 해당되지 않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 공공급여

공공급여(public benefits)란 일반정부(사회보험기관 포함)에 의해 재원이 조달(지출 포함)되고 급여(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급여를 말한다. 예로서 일반정부의 사회복지·보건·노동관련 지출과 사회보험의 제 급여를 들 수 있다.

또한 TBSPs는 정부예산에 대한 손실(cost)로 결국 현금급여와 같은 효과로 볼 수 있는 공공급여이다.

나) 민간급여

민간급여(private social benefits)란 급여와 재원이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급여는 민간부문에서 재원은 공공과 민간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당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 때 급여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와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급여로 이 경우 사회적(social)은 순수민간(purely private)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지출이라 할지라도 시장가격으로 급여되는 계약이나 보험은 아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비사회적(not social)이라고 보아 본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가구간 이전지출을 들 수 있다 (Adema, W., 1999: 9).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재원의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이어야 하며 지출주체는 일반정부(사회보험기관 포함), 고용주, NPO, 공제회 등 다양하다. 다만, 사회복지지출은 무상거래(unrequited)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장가격에 기초한 개별적 계약이나 보험관련 지출은 제외하고 있다.

(1) 법정민간급여(Mandatory private social benefits)

법정민간급여는 경제행위자(대체로 고용주)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급여를 의미한다. 표면상 사회복지 재원 및 운영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이다. 최근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재원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제3섹터'와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급여 수준, 급여대상(coverage), 급여기간 등의 규정에 있어 관여하지만, 규제의 정도는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다.

OECD 회원국의 법정민간급여를 예로 살펴보면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서는 정부가 고용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상병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에 의한 산재급여의 제공도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 출산휴가급여, 그리고 상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가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의 감면(또는 무료)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법정민간지출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금년 연구부터는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그 동안 OECD가 사회복지지출의 통계작성 기준에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하면서 이를 포함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민간부문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러한 교통·통신요금감면혜택을 정부가 법률¹⁰⁾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민간급여라 보고 있다. 다만, 서비스제공주체와 재원부담주체, 그리고 운영주체가 모두 민간부문인 경우도 있고 일부만 민간부문인 경우도 있다. 요금할인제도를 강제하는 관련법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자는 자발적 민간급여로, 후자는 법정민간급여로 볼 수도 있으나 법적 강제화라는 현실을 볼 때 후자로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제도는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타 회원국가와 달리 정부가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자발적 민간급여(Voluntary private social benefits)

자발적 민간급여는 공적 전달체계 외부에서 제공되는 민간급여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 재원 및 운영이 정부의 지원 없이 주로 고용주나 NPO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문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민간급여는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시장가격으로 지급되는 계약이나 보험은 제외하고 있으며 비법정 민간사회급여는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종종 정부도 조세제도를 통하여 자발적 민간급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혜택이 민간연금에 주로 적용되지만, 건강보험에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자선기관에 대한 공공지원은 세금공제나 자선기관의 활동

10) 관련법률은 노인복지법(제26조)과 장애인복지법(제27조) 등 8개의 법률과 그 외 2개의 규칙들이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제3장 제1절 3)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자발적인 고용연계 급여는 대체로 고용주와 노조간의 단체협상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개별기업 단위이거나 또는 산업별, 부문별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회급여를 명문화하는 근로계약(labour contracts)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자발적 민간급여에는 단체협상의 일부로 마련된 것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도 포함하는데,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은 모든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일부의 피고용인 집단(예를 들어 사무직에게만)에게만 적용될 수도 있다.

OECD 회원국의 자발적 민간급여를 예로 보면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은 단체협상이나 직역연금과 관련된 고용주 공급의 연금을 들 수 있다. 특히 덴마크의 민간연금급여는 보충적 고용관련 급여이다. 그 외 자발적 민간급여의 종류로는 퇴직수당(severance pay), 보충적 실업수당, 상병급여, 그리고 출산급여(maternity pay)와 육아휴직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모금(공동모금 등), 기업의 복지재단, 고용주의 자발적 급여가 있으며 주지하다시피 개인연금이나 개인생명보험은 제외하고 있다.

다) 조세의 부과와 경감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도 한다. 전자는 이전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이며 후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우대(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이하 TBSPs) 제도이다. TBSPs란 "사회급여로 분류되는 이전급여(transfer payments)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민간급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세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감면

(reduction), 면세(exemption), 공제(deduction), 그리고 납기연장(postponements) 등을 들 수 있다”(OECD, 1998).

순사회복지지출 추계에 있어 TBSPs는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연금기여에 따른 감세 또는 환급하는 세금우대(Tax breaks for pension)이며 다른 하나는 NPO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 또는 개인이나 기업이 NPO에 기부한 것에 대한 세금우대(TBSPs on “current” private social benefits)이다.

정부는 TBSPs를 통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며 결국 이는 공공예산에 대한 손실(cost)로 간주된다. 이를 정부입장에서 보면 조세혜택만큼 세수가 줄고, 그만큼 정부지출이 줄어들므로 정부지출의 하나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OECD가 제시한 순사회복지지출의 산출과정은 <표 II-4> 와 같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조세의 부과는 공제하고 혜택은 더한다. 먼저 조세의 부과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사회복지지출의 추계(No. 13: 표 II-4의 산출과정 번호, 이하 같음)는 총공공지출(1)과 총법정민간지출(7) 그리고 총자발적민간지출(10)에 각각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간접세를 공제한다. 이 때 각 부문별 지출 중 조세가 부과되는 현금급여만 추계에 포함하고 현물급여는 제외한다. 참고로 현물급여는 정부나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로 그 범위는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정부가 생활안정과 사회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적·재정적 조세혜택(T1, T2) 과정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현금급여적 조세혜택’과 ‘민간부문의 조세혜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T1은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家主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다. 다만 직접세 계산에 반영된 연금급여는 TBSPs에서 제외한다. T2는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TBSPs이다. 예로 기

업의 복지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조세혜택 등이 있다.

이렇게 구한 각 부문별 세부항목의 세 가지 부문 즉, 순공공지출(6), 순법정민간지출(8), 그리고 순자발적 민간지출(11)의 총합에서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2)를 제외한 것이 순사회복지지출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2)은 순공공지출(6)을 추계하는 과정에는 더하지만 순사회복지지출(13)을 계산할 때에는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하고 있다. 예로서 기업의 복지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들 수 있다. 즉, 이미 기업의 복지지출은 총자발적 민간지출(10)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출 때문에 기업은 정부로부터 법인세혜택을 받았으므로 이 둘을 동시에 포함하면 이중계산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추계과정은 제IV장 제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1-4〉 순사회복지지출 산출과정 개관

부 문	가 감	No.	산 출 과 정(Item)
공 공 부 문	-	1.	총공공지출(직접)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2.	순공공지출(현금형태) 간접세
	+	3.	순공공지출(직접)
	-	T1	현금급여적 조세혜택(TBSPs) ¹⁾²⁾ 간접세
	+	4.	순TBSPs(현금형태)
		T2	민간부문의 조세혜택(TBSPs) ¹⁾³⁾
		5.	순TBSPs(연금 제외)
		6.	순공공지출(경상)[3+5]
민 간 부 문	-	7.	총법정민간지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간접세
		8.	순법정민간지출(직접)
		9.	순공공·법정지출[6+8]
	-	10.	총자발적 민간지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		간접세
	11.	순자발적 민간지출(직접)	
	12.	순민간지출[8+11]	
		13.	(총)순사회복지지출[6+12-T2] ⁴⁾

주: 1) 정부가 사회적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에게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재정적 조세혜택제도(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TBSPs).

2) 근로가구 중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여성가구주 등에 대한 조세감면임. 다만 직접세 계산에 반영된 현금급여는 TBSPs에서 제외함.

3) 민간급여와 같은 효과가 있는 지원금 또는 시설에 대한 TBSPs임. 예로 기업의 복지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조세혜택 등이 있음.

4) T2의 공제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함.

자료: OECD, Net Social Expenditure, 2001a.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사회복지지출이란 우리의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용어로 'Social Expenditure'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다 '건강 및 노동·복지서비스'를 추가한 개념으로 앞장의 제1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분류기준과 개념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사회복지지출의 재원범위로는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의 재정, 법률로 설립된 사회보험기관의 급여, 그리고 민간(고용주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의 지출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지출이란 국가 등이 사회보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중 통계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총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통계작성기준의 의미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과 부록에 수록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항목(부표 1 참조)에 따라 산출한 기준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급여주체인 정부, 사회보험기관 그리고 기업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부지출

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사회보상제도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특별보상의 취지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종종 사회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의 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로서 국가는 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일례로 전쟁 중 개인의 희생이나 재산상 손실의 경우 외교적 또는 군사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의 보상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보상제도로는 국가보훈제도, 고엽제피해 보상과 위안부보호 등이 있다. 본 추계에는 <표 III-1>의 급여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

<표 III-1>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상제도의 개관

	공공부조제도	사회보상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¹⁾	국가보훈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애국지사, 순국·애지유족, 군경유족, 무공수훈자, 4.19 부상자 및 그 유족 등
급여 내용	-7종(긴급급여 포함 8종) • 생계급여 • 주거급여(신설)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자활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 등
전달 체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훈처

주: 1) 재원조달은 생활보호와 같이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음.

2)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노령, 장애, 기타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와는 차별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노인인구와 장애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득보장, 고용기회 확대, 의료문제, 기타 사회활동 참여 문제의 확충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요보호대상자(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부랑인 등)에게 상담, 재활, 시설입소, 직업보도 등을 행하는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외형상 해당프로그램은 다양하나, 노인교통수당이나 교통요금할인과 같이 보편성을 가진 서비스가 부족하며, 현행 복지정책은 시설 등 요보호대상자의 구호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표 III-2 참조). 본 연구에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추계자료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세입세출예산서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추계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직접지출은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자치단체고유사업)를 포함¹¹⁾하였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보건과 복지분야의 자료수집이 어려워 2006년도 실태조사를 통해 2003년도 이후부터 포함하고 있다.

〈표 III-2〉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별 개관

계 도	소관부처	급 여 종 류
노인과 장애인	보건복지부	-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교 육 부	-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 운영지원
가 족 복 지	보건복지부	- 보육·아동사업 등 - 복지관 운영 등 지원
보 건 의 료 ¹⁾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 정부부문의 보건의료비 (시설·장비포함)
적극적 노 동 시 장 정 책 ²⁾	노 동 부 등	- 실업자·취업자에 대한 훈련 -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 실업자 창업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 등 - 기타 고용서비스와 행정

주: 1) 건강보험의 급여 비포함
고용보험의 급여 비포함

나. 사회보험

우리의 사회보험은 1960년대 초 연금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1970년대 말에 의료보험을, 그리고 1995년에 이르러 고용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험 도입 이후 35년만에 4대 사회보험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은 4대 사회보험의 틀이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급속히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III-3 참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 자영자, 그리고 공무원·사립교직원·군인 등 적용대상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I-3〉 4대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과정

연 대	연금보험 ¹⁾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²⁾
1960~ 1980	공무원('60) 군인('60) 사립교직원 ('75)	- 500인 이상('77) 300인 이상, 공무원·교원('79)	500인 이상('64) 200인 이상('65) 150인 이상('66) 100인 이상('67) 30인 이상('72) 16인 이상('73)	- -
1981~ 1990	국민연금 10인 이상('88)	100인 이상('81) 16인 이상('83) 농어촌('88) 도시지역('89)	10인 이상('82) 5인 이상('88)	-
1991~ 현재	5인 이상 사업장('92) 농어촌지역 주민 ('95.7) 도시지역 자영업자('99.4)	급여수혜기간: 270일('97), 300('98), 330('99), 365(2000),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원공 단의 통합 ('98.10) 직장조합 포함한 완전 통합(2000)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 이관 ('95.5)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6) 금융·보험업('98.7) 5인 미만 사업장 (2000.7)	고용보험제정 ('93) 30인 이상('95.7) 10인 이상('98.1) 5인 이상('98.3) 1인 이상·시간제 ('98.10)

주: 1) 정보통신부소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생략함.
 실업급여의 경우이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95), 50인
 이상('98.1), 5인 이상('98.7), 1인 이상('98.10)임

1) 공적연금보험

우리의 공적연금보험은 직역별 구분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
 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이들 연금의 급여종류로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별정

우체국직원연금은 제외)을 공통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급여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¹²⁾.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의 확대가 1989년에 달성되었으며, 정부가 건강보험자별 다양하게 운영되던 기존의 의료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관리운영분야를 통합(2000. 7. 1)하였으며 이어 2003년에 재정분야까지 통합하였다. 이들 건강보험의 급여종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급여 중 현물급여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범위가 최근 1인 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 시간제근로자로서까지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례비로 이루어져 있다. 고용보험의 급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모성보호사업¹³⁾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4대 사회보험의 지출액 추계는 각 통계연보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12) 퇴직수당의 경우 각 연금에서 급여(국민연금 제외)를 실시하고 있다.

13) 모성보호사업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음.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72조) 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남녀고용평등법 18조) 지급함. 육아휴직은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근로기준법 19조)가 1년 내의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매월 20만원을 지급함

다. 기업복지(법정민간부문)

1) 고용주의 법정급여

민간복지 중 법률로 강제된 기업복지에 한하여 살펴보면 법정퇴직금과 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가 있다. 이들 세 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제정(1953)되면서 법률상 뒷받침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확대되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1999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2001년부터 유급질병휴가급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법정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법정퇴직금의 추계는 퇴직자의 전체 기초자료가 수록된 국세청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전후휴가급여(동법 제72조)는 기업주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유급 보호휴가를 실시한 90일¹⁴⁾ 동안의 급여이다. 이들 3개월 중 2개월은 기업이, 나머지 1개월은 고용보험이 부담한다. 먼저 기업부담은 건강보험 급여 화일에서 분만급여를 수령한 자와 자격화일에서 보수월액¹⁵⁾을 분석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개월)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다음 고용보험 부담은 고용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분만근로자가 산전 후휴가기간동안 월평균소득을 수령한다는 가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Maternity\ Bene\ Private = \sum W_{ij} \times 2$$

$$W_{ij} = i\text{연도 직장여성 중 분만한 } j\text{취업자의 월평균소득}$$

14) 2001년 11월부터 90일로 확대되었다.

15)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출을 위한 분만급여 수령시점의 월보수액을 의미

그리고 근로자의 유급질병휴가급여(동법 제8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사용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휴업 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다. 이 급여의 추계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유병률, 외병일수)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추정상 전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휴가 동안 월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였다.

$$Sickness\ Bene = \sum (M_{ij} \times B_{ij} \times 26.0714^{\text{상수1}} \times E_{ij} \times W_{ij} \times 0.02^{\text{상수2}})$$

이 때, *Sickness BENE* = 질병휴가기간 동안 법정임금

M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유병률(%)

B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외병일수

E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취업자수

W_{ij} = i 연도 j 연령층의 월평균임금

상수1 = 표본집단의 14일간 유병률 및 외병일수의 연간화

상수2 = 법정임금(60%)의 일할 환산치임.

2)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 등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취약계층이나 사회보상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교통·통신과 관련한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을 법률¹⁶⁾로 규정하

16) 관련법률은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 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동법시행령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제23조: 고궁 등의 이용보호), 방송법(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동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철도법(제7조의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 유료도로법(제15조: 통행료납부의 대상 등, 동법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전기

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전화, 이동통신, 철도, 지하철, 국내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받는 이 제도는 대상자와 서비스업종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요금감면대상자인 노인인구와 등록 장애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수 또한 늘고 있다. 이로서 앞으로 서비스요금의 감면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추계의 범위로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국한하며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제외한다 (외국의 자발적 참여 서비스로는 미국의 Senior Card, 뉴질랜드의 Senior Citizen's ID Card를 들 수 있음)¹⁷⁾.

이러한 감면제도의 목표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의 장소이동과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생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본생활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액범위를 살펴보면, 서비스별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범위가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통요금은 무료~10%, 통신요금은 무료~30%, 그리고 관람요금은 무료~50%이다. 이와 같이 교통·통신요금의 경우 일정한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적거나 1회 이용의 단가가 낮을수록 감액범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행 교

통신사업법(제3조의2: 보편적 의무,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보편적 의무의 내용),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제5조: 무료관람) 등이다.

17) 미국은 지역시민단체와 자영업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Senior Card를 소지한 노인에 대해 음식료, 목욕료, 실비용품 등에 대해 일부 할인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도 한국과 같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Senior Citizen's ID Card라 불리는 이 경로우대증은 오클랜드지역에서 버스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할 때 4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통신요금 등의 감액기준은 〈부표 2〉를 참고하기 바란다.

추계방법은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철도청·문화재청 등의 협조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각 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의 내용을 분석하여 추계하였다. 다만, 기초 자료가 다소 미흡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릉 무료금액은 내부 자료를 기초로 별도 추정하였다(표 III-4 참조).

〈표 III-4〉 교통·통신요금 감면제도별 조사대상기관과 조사방법

제 도	서비스대상	조 사 대 상 기 관	조 사 방 법
교 통	철 도	철도청	실태조사
	지하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실태조사
	국내선항공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실태조사
	고속도로통행료	한국도로공사	실태조사
통 신	시내·외 전화요금	한국통신, 하나로, 데이콤, 온세통신	실태조사 (정보통신부협조)
	이동통신	SK텔레콤(011·017), KTF(016·018), LG텔레콤(019)	실태조사 (정보통신부협조)
	TV수신료	KBS	실태조사
입 장 관 략	공·릉	문화재청	기관의 내부자료로 추정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본 절에서는 총사회복지지출과 관련된 우리의 제도와 지출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 민간부문의 지출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 영역은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자발적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I-5〉은 총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개념적 구성항목들로 비음영부분은 ‘사회복지지출’ 영역이며 음영부분은 자발적 민간부문영역으로 본 절에서는 음영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III-5〉 총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구 분	구 성 항 목	
공공부조	• 생활보호, 의료급여, 귀순복한동포보호, 국가보훈 급여 등	
사회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과 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민 간	법 정 부 문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부 문	자 발 적 부 문	• 민간모금단체·종교단체의 복지사업 관련 지출
		• 기업·기업재단의 사회복지활동 - 사회복지, 재해복구·예방 등
		• 기업의 고용연계 급여 -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 특정집단의 공제급여 -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협회공제회
		• 민간의료비 -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치료비 - 비영리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지출, 기업의 법정의 복리비 중 보건의료비 등

- 주: 1) 기업의 기부금이나 사회복지활동은 '기업재단'과의 이중계산을 명확히 검토할 수 없어 제외하며 '기업의 현물급여'와 '기업재단' 중심으로 살펴봄.
2) 비음영부분은 '사회복지지출' 영역이며 음영부분은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추가 영역임.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부재원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가복지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의 복지도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발적 민간급여는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정부에 비하여 소규모이며 내용도 한정적이지만 국가의 복지활동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발적 민간부문의 재원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거나 또는 민간집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민간인으로부터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 결핵기금모금, 적십자회비 모금, 재해의연금모금, MBC 새생명모금, 그리고 결연후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시대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해 온 종교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범위는 크게 두 가지 즉, 종교계 법인, 성직자 또는 신자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참여와 종교기관 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인 사회복지시설외 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 끝으로, 기업의 고용연계와 관련한 법정외급여와 경제인 단체나 기업체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활동 재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이나 기관에 의하여 공동모금 되고 있는 재원을 중심으로 하며 개인에게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기부한 경우는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사회복지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표 III-6> 은 지금까지 언급한 자발적 민간부문의 개념적 구성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자발적 민간부문의 세부구성항목별 추계방법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고서¹⁸⁾를 참조하기 바란다.

18) 고경환·장영식·이내연,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1, 2004.

〈표 III-6〉 자발적 민간부문의 개념적 구성항목

분 류	종 류 / 사업내용	활 용 자 료
1. 복지사업의 민간모금 ¹⁾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회복지사업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재해의연금모금, 재해지원사업	전국재해구조협회
	3) 적십자회비 모금, 구호사업외	대한적십자사
	4) 결핵협회모금, 결핵예방.연구사업	대한결핵협회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MBC 어린이 새생명모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 아동시설지원.가정결연사업외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7) 가정위탁 지원사업외	한국복지재단
	8) 심장병 검사지원사업외	한국심장재단
	9) 아동교육.장학결연사업외	세이브더칠드런
	10) 국내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외	UNICEF 한국위원회
	11) 결연후원사업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2) 교육문화지원.기금프로그램개발사업외	아이들과 미래
	13) 저소득층 자활지원외	아름다운재단
	14) 아동학대예방.결식아동지원사업외	Good Neighbors
	15) 소외계층여성들의 삶의질 향상을위한 사업	한국여성재단
	16) 불우이웃돕기사업외	한국라이온스클럽
2. 종교단체 복지사업	1)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참여 2) 사회복지시설외 참여(미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기업의 사회복지 활동	고용연계급여 - 보육비·학비·근로자 휴양비 등 지원	노동부
	기업·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전국경제인연합회
4. 특정집단의 공제회	1) 의료분쟁 2) 학교생활중의 사고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교육청
5. 민간의료비	자동차책임보험 대인치료비 ²⁾	보험개발원

주: 1) 사회복지조직이나 기관에 의한 민간모금임.

2)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치료비는 시장가격에 따른 계약임으로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로 볼 수 없어 제외함.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은 더하고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감하고 있다(표 III-7 참조).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이전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조세를 경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순사회복지지출 추계와 관련된 조세부담에는 먼저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세혜택에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를 경감하거나 소득세 대상금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있다.

세부적으로 먼저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직접세는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간접세는 이전소득자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관세 등이 있다.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들 수 있다. 다음 조세혜택은 크게 공익법인·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자¹⁹⁾의 연말정산 등 이다.

19)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 후원수당을 받는 자이다(소득세법 제144의 2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표 III-7〉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구 분		구 성 항 목	
총 사 회 복 지 지 출	공 공 부 조	• 생활보호, 의료급여, 귀순복한동포보호, 국가보훈 급여 등	
	사 회 보 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민 간 부 문	법정부문	•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
		자발적 부문	• 민간모금단체·종교단체의 복지사업 관련 지출
			• 기업·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 사회복지, 재해복구·예방
• 기업의 고용연계 급여 -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 특정집단의 공제급여 - 대한의사협회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 민간의료비 -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치료비		
순 사 회 복 지 지 출	조세부담 (-)	• 대상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 추계 - 법정민간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 이전(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액	
	조세혜택 (+)	• 각종 조세감면금액 추계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금액 · 구입단계(특소세, 교육세) 면세금액 · 등록단계(취득세, 등록세) 면세금액 · 보유단계(자동차세, 면허세) 면세금액	
		•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 장애인, 경로, 부녀자세대주, 기부금의 소득공제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방세 및 지방조례) •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회보험료 부담 (-)	•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부담액 • 법정민간급여 수령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주: 비음영부분은 '총사회복지지출' 영역이며 음영부분은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추가 영역임.

〈표 III-8〉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구체화한 개념적 구성항목으로 활용자료 등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조세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으로 조세혜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I-8〉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개념적 구성항목

분 류	종 류	대 상	활 용 자 료
조 세 부 담	1. 직접세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기업) 질병휴가급여	국세청
	2. 간접세	이전소득자의 가계지출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3. 사회보험료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 법정민간급여에 부과되는 사회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세청
조 세 혜 택	1. 관세 감면	장애인용 의료용구 등의 수입물품 감면	관세청
	2. 자동차세 면세	장애인용 자동차	국세청
		· 구입단계 · 등록 및 보유단계	행자부
	3. 재산세 등 감면	비영리법인	행자부
	4. 근로소득 공제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기부금 등 공제	국세청 재정경제부
5. 법인세 감면	기업	국세청 재정경제부	

가. 조세부과 제도

조세부담 추계는 세수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소득세와 간접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계에 대해 살펴보게 한다.

1) 소득세액(Income tax)

현재 소득세법(제12조)에서 이전소득 중 연금과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은 과세하고 있다. 즉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질병휴가기간 동안의 유급급여는 소득세법(제4조)에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세율을 알아야 하는데 각 개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없어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실효세율'은 '결정세액²⁰⁾을 공제 전의 '근로자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2) 간접세액(Indirect tax)

가) 간접세률의 추계

(1) 미시자료를 활용한 추계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 부담 분석은 대부분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가계의 소득 및 지출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각 가구의 지출 항목이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세 부담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계자료는 도시가계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가구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농촌가계자료와 어가경제자료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들 가계자료도 도

20) OECD에서는 홑벌이 부부로 2명의 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이는 전형적인 핵가족의 대표시민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n Shola Orloff, 'Gender and the Social Right of Citizenship', 'Th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Volume I' p66, edited by Robert E. Goodin and Deborah Mitcheall 참조)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과정을 거쳐 결정세액을 추계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추가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과세표준액을 추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이용하고자 한다.

시가계자료와 마찬가지로 농촌과 어가가계에 대한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 세 종류의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모집단가구에 대한 대표성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도시가계조사”에서 이전급여수령자의 사례수가 너무 작아(전체조사 가구의 10%, 550가구, 2001) 분석결과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향후 이전급여수령자가 더 확대되고 4대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세부 소득원별로 조사가 확충되어야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2) 거시자료를 활용한 추계

OECD는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조세자료²¹⁾와 국민계정자료가 수록된 Data base를 구축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간접세율을 추계하고 있다. 즉 OECD는 간접세율을 계산함에 있어 OECD Revenue Statistics와 National Accounts를 기초로 목시적 평균 간접세율(average implicit indirect tax rate)을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가장 근접하면서도 투명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²²⁾.

간접세율 계산방법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일반 소비세(부가가치세)와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국내소비세”를 더해 간접세

21) OECD는 우리나라 재정경제부의 국세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Revenue Statistics라는 책으로 매년 공표하고 있다.

22) 본 연구에서 간접세율은 국민 모두에 대한 간접세율이 아니라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거시자료를 활용하면 국민전체가 부담하는 간접세율이 된다. 결국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이전소득자 등이 부담하는 직·간접세액을 공제한 후 얻는 순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를 위해 미시자료가 적합하다고 본다. 하지만 OECD는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세율을 보다 쉽게 추계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국가별 미시자료의 수집 또는 접근이 어렵거나 이전소득자와 일반소득자간의 소비형태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수입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세금 외에도 재정 독점적 이윤(profits from fiscal monopolies, 전매익세, 재정전매수익), 관세, 서비스에 대한 세금, 기타 미미한 세금들” 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여기에 자동차 면허나 주류 판매와 같은 재화 사용에 대한 부가세” 를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세율을 계산할 수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가계 부문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 항목을 첫 번째 방법에 비해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²³⁾. 따라서 첫 번째의 간접세 계산 방법이 오차 범위가 가장 작으며, 급여소득자의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 계산에 그나마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세율의 크기에 따라 전자를 Minim, 중간을 Medium, 후자를 Maxim으로 부르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text{Minim} &= (\text{일반소비세} + \text{국내소비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ediu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소비} + \text{정부소비} - \text{공무원 임금}) \\ \text{Maxim} &= \text{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 \div \text{민간최종소비지출} \end{aligned}$$

〈표 III-9〉는 거시자료를 이용한 간접세율의 추계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추계결과 간접세율은 Minim 12.61%(’05), Medium 14.68%, 그리고 Maxim 16.64%로 나타났다.

나) 간접세액의 추계

본 연구에서 추계하고자 하는 간접세액의 세율은 〈표 III-9〉와 같이

23) 비교적 제한적 측정법인 첫 번째 방법조차도 가계 부문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 항목을 일부 포함하는 한계점이 있다.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세원은 정부부문(서비스부문 비포함²⁴⁾)의 현금급여, 사회보험 현금급여, 법정민간부문의 현금급여, 자발적 민간부문의 현금급여 그리고 조세감면이다. 이 때 간접세액을 추계함에 있어 현금급여는 포함하고 현물급여는 제외하였다.

〈표 III-9〉 공공·민간부문별 간접세액 추계범위

부 문	추 계 범 위
정 부 부 문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생계보호, 국가보훈의 보상금 등): 포함 공공부조의 현물급여(의료급여, 교육보호): 제외 국가공급의 사회복지서비스: 제외
사 회 보 험	현금급여(공적연금,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포함 현물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제외
법정민간부문	현금급여(법정퇴직금, 유급질병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포함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감면액: 제외
자 발 적 민 간 부 문	현금급여(기업의 고용연계급여 등): 포함 현물급여(종교 및 자선단체의 이전지출(현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및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학교안전공제회, 대한의사회공제회, 민간의료비 등): 제외
조 세 감 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방세 및 지방조례),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금액(구입단계), 근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포함

24)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종교 및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의료보건의용역은 면세하고 있다.

3) 사회보험료

가) 이전소득자

이전소득자가 그의 소득 중 사회보험료로 지불하는 경우는 연금수령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유일하다. 즉, 연금수령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매월 불입하는 건강보험료가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보험료 산정에는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부과자료인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소득 등이 반영되어 있어 자료 활용에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보험료를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를 포함하였을 때 과대추계가 제외하였을 때 과소추계보다 참값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나) 근로연계급여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산전산후휴가급여와 질병휴가기간 동안 유급급여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근로자 부담)이다. 이의 추계는 근로자부담의 3대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평균), 고용보험료율)의 합을 반영하였다.

나. 조세감면제도

정부는 사회적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조세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세금감면, 면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과할 조세를 감면함

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음으로 간접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감면 대상을 세법상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이는 사회복지 및 자선 관련 재산과 수익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이다. 둘째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사회보호대상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연말소득공제제도로 노인, 장애인, 부녀자세대주 등이 있는 가족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셋째는 국세, 지방세감면 조례에 의한 조세감면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구입·등록·보유 단계의 자동차세 감면, 넷째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입물품에 관세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시켜 주는 관세감면, 다섯째, 기업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추계자료는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의 통계연보와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IV.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1. 공공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6년 약 66조 401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경상 GDP(신계정)²⁵⁾ 대비 7.83%로 나타났다. 최근 16년간('90~'06)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크게 향상되어 왔다. 지출규모로 보면 12.2배가 증가(5조 → 66조)하였으며, GDP대비로 보면 7배 증가(2.91% → 7.83%)하였다. 또한 연평균증가율로 볼 때 동 기간 GDP증가율(9.9%)을 상회한 16.9%로 나타났다.

〈표 IV-1〉에서 주요 지출항목의 구성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보건'(4)이 30조 120억원으로 전체의 45.2%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노령'(1)이 13조 8810억원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실업'(7)이 2조 740억원으로 3.1%이다. 이들 3개 부문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69.4%)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요 지출부문의 세부구성 백분율을 보면 '보건'(4)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의 현물급여가 대부분이며 노령(1)은 특수직역연금이 대부분이다.

이어서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에 대한 급여인 '근로무능력관련급여'(3)가 5조 190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백분율로 볼 때 7.6%를 차지한다. 끝으로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6)이 1조 890억원으로 가장 낮음(1.6%)을 알 수 있으며, '주거'(8)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공란으로 두었다.

25) 국민계정의 기준 년도 등을 개편(2000)한 신계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투자지출처리, SOC 및 군사용 고정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소모계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즉 2002년도 신계정에 따른 GDP(684조 2,635억원)는 구계정(596조 3,812억원)에 비해 14%나 높다.

〈표 IV-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추이1): 연도별, 기능별
(단위: 십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노령	1,166	1,471	2,028	2,661	3,317	4,346
2. 유족	298	409	452	494	569	637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2)	563	778	988	977	1,275	1,491
4. 보건3)	2,959	3,269	3,844	4,313	4,889	5,947
5. 가족	60	89	111	154	185	262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51	44	103	144	114	168
7. 실업	-	-	-	-	-	-
• 실업보상4)	-	-	-	-	-	-
8. 주거	-	-	-	-	-	-
9. 기타5)	335	336	328	359	363	451
계	5,431	6,395	7,854	9,101	10,711	13,301
경상 GDP 대비 %	2.91	2.83	3.05	3.13	3.15	3.34
경상 GDP(조원)	186.7	226.0	257.5	290.7	340.2	398.8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는 제외

2)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3)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구조,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07에서 재구성

〈표 IV-1〉 계속

(단위: 십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4,617	5,416	8,873	12,935	7,479	6,591	1. 노령
720	819	874	900	1,040	1,172	2. 유족
1,738	2,065	2,051	1,902	2,189	2,557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2)
7,565	8,771	9,679	11,432	12,857	17,721	4. 보건3)
337	429	555	529	665	941	5. 가족
184	360	1,627	3,266	2,313	1,429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10	79	799	936	471	845	7. 실업
10	79	799	936	471	845	• 실업보상4)
-	-	-	-	-	-	8. 주거
576	729	871	1,452	1,640	2,581	9. 기타5)
15,747	18,666	25,329	33,352	28,653	33,837	계
3.51	3.80	5.23	6.30	4.95	5.44	경상 GDP 대비 %
448.6	491.1	484.1	529.5	578.7	622.1	경상 GDP(조원)

4)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5)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표 IV-1〉 계속

(단위: 십억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1. 노령	7,188	8,623	11,037	12,390	13,881
2. 유족	1,364	1,597	1,825	2,013	2,235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2)	3,025	3,649	4,293	4,535	5,019
4. 보건3)	18,568	20,315	22,427	25,729	30,012
5. 가족	1,013	1,268	1,975	2,203	4,644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1,342	932	941	1,035	1,089
7. 실업	835	1,030	1,448	1,752	2,074
• 실업보상4)	835	1,030	1,448	1,752	2,074
8. 주거	-	-	-	-	-
9. 기타5)	3,029	3,256	5,446	5,977	7,447
계	36,365	40,668	49,392	55,634	66,401
경상 GDP 대비 %	5.31	5.61	6.34	6.86	7.83
경상 GDP(조원)	684.3	724.7	779.4	810.5	848.0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우리나라의 법정민간 사회복지지출은 2006년 약 18조 529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경상 GDP대비 2.18%로 나타났다. 최근 16년간('90~'06)간 우리나라의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지출규모로 보면 9.7배가 증가(1.9조 → 18.5조)하였으며, GDP대비로 보면 2.1배 증가(1.04% → 2.18%)하였다. 또한 연평균증가율로 볼 때 동 기간 GDP증가율(9.9%)을 상회한 15.1%로 나타났다.

〈표 IV-2〉에서 주요 지출항목의 구성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실업'(7)이 89.9%(16조 6,490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에 대한 급여인 '근로근로무능력관련급여'(3)가 6.5%(1조 2,020억원)를 차지하며, 다음은 '가족'(5)으로 2.0%(3,670억원), '노령'(1) 1.6%(2,94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의 법정퇴직금에 대해 OECD는 퇴직원인별(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해고)로 분류·생산하되 이 중 정년퇴직만 SOCX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국제비교 가능성을 들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국가별로 대상이나 산정방식, 성격 등이 다양한 만큼 미국, 프랑스는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았으며 일본과 이태리는 최근 제외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법정퇴직금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노령연금'적 성격과 해고 등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적 성격을 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성숙되어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SOCX에 포함하여 왔다. 앞으로 법정퇴직금이 제외되는 경우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이나 금액에 혼동이 올 수 있다.

〈표 IV-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이1): 연도별, 기능별
(단위: 십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노령	-	-	-	-	-	27
2. 유족	-	-	-	-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2)	143	166	190	205	220	253
4. 보건3)	-	-	-	-	-	-
5. 가족	-	-	-	-	-	1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	-	-	-
7. 실업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 퇴직금4)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8. 주거	-	-	-	-	-	-
9. 기타5)	-	-	-	-	-	9
계	1,940	2,287	2,796	3,192	4,205	5,212
경상 GDP 대비 %	1.04	1.01	1.09	1.10	1.24	1.31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는 제외

2)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3)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07에서 재구성

〈표 IV-2〉 계속

(단위: 십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34	43	60	73	95	128	1. 노령
-	-	-	-	-	-	2. 유족
311	379	453	530	662	770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2)
-	-	-	-	-	-	4. 보건3)
2	86	95	155	214	311	5. 가족
-	-	-	-	-	-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5,453	9,358	21,131	13,032	17,371	12,993	7. 실업
5,453	9,358	21,131	13,032	17,371	12,993	• 퇴직금4)
-	-	-	-	-	-	8. 주거
11	16	17	18	19	19	9. 기타5)
5,810	9,881	21,756	13,808	18,362	14,221	계
1.30	2.01	4.49	2.61	3.17	2.29	경상 GDP 대비 %

4)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임.

5)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표 IV-2〉 계속

(단위: 십억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1. 노령	150	178	210	259	294
2. 유족	-	-	-	-	-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2)	937	951	1,082	1,151	1,202
4. 보건3)	-	-	-	-	-
5. 가족	260	321	362	307	367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	-	-	-
7. 실업	11,652	14,313	16,331	15,909	16,649
• 퇴직금4)	11,652	14,313	16,331	15,909	16,649
8. 주거	-	-	-	-	-
9. 기타5)	22	28	14	14	18
계	13,021	15,791	17,999	17,641	18,529
경상 GDP 대비 %	1.90	2.18	2.31	2.18	2.18

3.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가.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주요 지출항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2006년 약 84조 93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경상 GDP대비 10.01%로 나타났다. 최근 16년간('90~'06)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지출규모로 보면 11.5배가 증가(7.3조 → 84.9조)하였으며, GDP대비로 보면 2.5배 증가(3.95% → 10.01%)하였다. 또한 연평균증가율로 볼 때 동 기간 GDP증가율(9.9%)을 상회한 16.5%로 나타났다.

〈표 IV-3〉에서 주요 지출항목의 구성비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보건'(4)이 30조 120억원으로 전체의 35.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실업'(7)이 18조 7230억원으로 2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노령'(1)이 14조 1750억원으로 16.7%이다. 이들 3개 부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74.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요 지출부문의 세부구성 백분율을 보면 '보건'(4)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의 현물급여가 대부분이며 '실업'(7)은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16조 6490억원)이 대부분(88.9%)을 이루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2조 740억원)의 비중은 낮다. 노령(1)은 특수직역연금이 대부분이다.

이어서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에 대한 급여인 '근로근로무능력관련급여'(3)가 6조 2210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백분율로 볼 때 7.3%를 차지한다. 끝으로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6)이 1조 890억원으로 가장 낮음(1.3%)을 알 수 있으며, '주거'(8)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공란으로 두었다.

나. 사회복지지출의 부담형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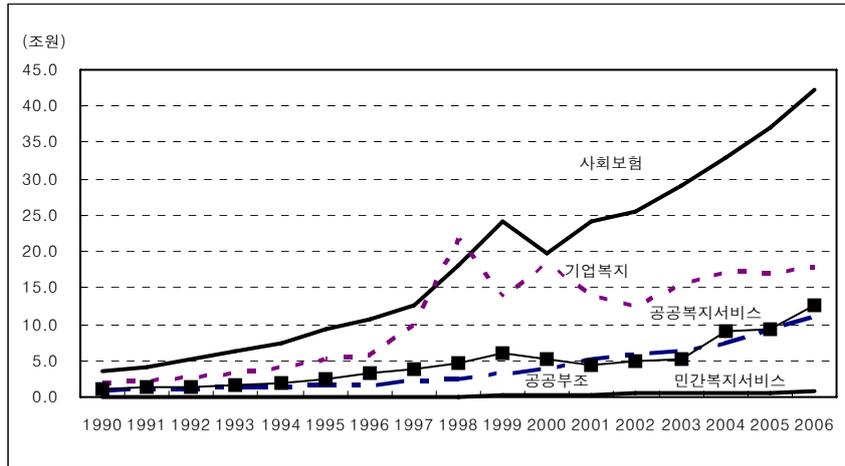
국민경제의 재화흐름을 생산, 분배, 지출의 각기 다른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삼면등가의 원칙을 사회복지지출에 적용하여 기능, 제도, 재원의 삼면에서 부담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측면은 이미 본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인 노령, 무능력(장애·산업재해·질병), 실업 등으로 분류된 9개 부문 <표 IV-3>이며, 제도측면은 지금까지 OECD 추계방법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제도별로 재분류한 것이다(표 IV-4 참조). 그리고 재원측면은 사회복지지출을 부담주체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표 IV-5 참조).

2006년도의 세 가지 측면의 백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능측면은 이미 앞의 <표 IV-3>에서 '보건'(4), '실업(퇴직금 포함, 7)', 그리고 '노령'(1)의 3개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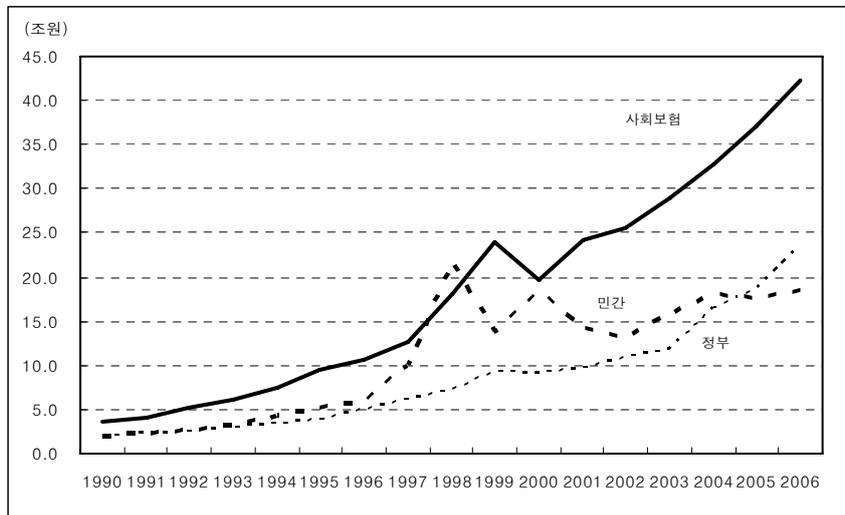
다음으로 제도측면을 <표 IV-4>에서 보면, 사회보험이 49.2%로 가장 높으며, 기업복지가 20.9%, 공공부조 13.0%, 공공복지서비스 16.0%, 그리고 민간복지서비스 0.9%의 순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12년간의 지출추이를 [그림 IV-1]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와 공공복지서비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기업복지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을 기점으로 기업복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보험을 추월하다 1999년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 IMF 구제금융 하에서 대규모 실직과 퇴직의 발생에 따라 지출된 '법정퇴직금'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V-1]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제도별(1990~2006)



[그림 IV-2]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자원별(1990~2006)



〈표 IV-3〉 사회복지지출의 추이1): 연도별, 기능별

(단위: 십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노령	1,166	1,471	2,028	2,661	3,317	4,373
2. 유족	298	409	452	494	569	637
3. 무능력 관련 급여2)	705	944	1,178	1,182	1,495	1,744
4. 보건3)	2,959	3,269	3,844	4,313	4,889	5,947
5. 가족	60	89	111	154	185	263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51	44	103	144	114	168
7. 실업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 실업보상4)	-	-	-	-	-	-
• 퇴직금5)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8. 주거	-	-	-	-	-	-
9. 기타6)	335	336	328	359	363	459
계	7,371	8,682	10,649	12,293	14,915	18,514
경상 GDP 대비 %	3.95	3.84	4.14	4.23	4.38	4.64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는 제외

2)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관련 급여임.

3)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07에서 재구성

〈표 IV-3〉 계속

(단위: 십억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4,651	5,459	8,932	13,008	7,574	6,719	1. 노령
720	819	874	900	1,040	1,172	2. 유족
2,049	2,443	2,504	2,432	2,851	3,327	3. 무능력 관련 급여2)
7,565	8,771	9,679	11,432	12,857	17,721	4. 보건3)
339	515	651	684	879	1,252	5. 가족
184	360	1,627	3,266	2,313	1,429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5,463	9,436	21,930	13,968	17,842	13,838	7. 실업
10	79	799	936	471	845	• 실업보상4)
5,453	9,358	21,131	13,032	17,371	12,993	• 퇴직금5)
-	-	-	-	-	-	8. 주거
586	745	888	1,469	1,659	2,600	9. 기타6)
21,557	28,547	47,085	47,160	47,015	48,058	계
4.81	5.81	9.73	8.91	8.12	7.72	경상 GDP 대비 %

4)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5)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 현금급여를 포함.

〈표 IV-3〉 계속

(단위: 십억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1. 노령	7,338	8,801	11,247	12,649	14,175
2. 유족	1,364	1,597	1,825	2,013	2,235
3. 무능력 관련 급여2)	3,962	4,600	5,375	5,686	6,221
4. 보건3)	18,568	20,315	22,427	25,729	30,012
5. 가족	1,273	1,589	2,337	2,510	5,010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1,342	932	941	1,035	1,089
7. 실업	12,487	15,343	17,780	17,661	18,723
• 실업보상4)	835	1,030	1,448	1,752	2,074
• 퇴직금5)	11,652	14,313	16,331	15,909	16,649
8. 주거	-	-	-	-	-
9. 기타6)	3,052	3,284	5,460	5,992	7,465
계	49,386	56,460	67,390	73,275	84,930
경상 GDP 대비 %	7.22	7.79	8.65	9.04	10.01

〈표 IV-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6)

(단위: 십억원)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 계	7,371	8,682	10,649	12,293	14,915	18,514
공공 부조	소 계	861	1,035	1,127	1,258	1,324	1,524
	생활보호 ¹⁾	821	1,014	1,126	1,246	1,320	1,490
(사회 보상)	재해구호 ²⁾	40	21	1	12	4	33
	북한이탈주민지원	-	-	-	-	-	1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공공 복지 서비스	소 계	1,031	1,240	1,460	1,633	2,037	2,366
	시설보호 ³⁾	52	64	74	85	123	138
	재가복지 ⁴⁾	104	128	174	239	297	424
	근로복지 ⁵⁾	38	30	90	107	237	319
	보건의료 ⁶⁾	837	1,018	1,122	1,202	1,380	1,485
	주거복지	-	-	-	-	-	-
	교육복지	-	-	-	-	-	-
사회 보험	소 계	3,539	4,121	5,266	6,211	7,350	9,411
	연 금 ⁷⁾	1,235	1,571	2,141	2,785	3,453	4,482
	의료보장 ⁸⁾	1,765	1,848	2,193	2,573	2,918	3,793
	산업재해보상보험	539	702	932	853	979	1,134
	고용보험	-	-	-	-	-	2
	민간복지서비스 ⁹⁾	-	-	-	-	-	55
기업 복지	소 계	1,940	2,287	2,796	3,192	4,205	5,157
	법정퇴직금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출산휴가급여	-	-	-	-	-	-
	유급질병휴가급여 ¹⁰⁾	143	166	190	205	220	235

주: 1) 생계보호, 일시구호, 교육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의료급여, 국가보훈

2) 주택복구비, 이재민구호비

3) 장애인복지시설보호, 노인시설보호, 아동시설보호, 모자보호 및 선도보호시설 등

4) 재가장애인보호, 재가노인지원, 아동건전육성,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표 IV-4〉 계속

(단위: 십억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부제도	제 도
21,557	28,547	47,085	47,160	47,015	48,058	합 계	
1,781	2,077	2,512	3,352	3,810	5,265	소 계	공공 부조
1,751	2,069	2,449	3,286	3,784	5,239	생활보호 ¹⁾	
29	7	62	65	19	10	재해구호 ²⁾	(사회 보상)
1	1	1	1	7	16	북한이탈주민지원 고엽제, 위안부보호	
-	-	-	-	-	-		
3,259	3,973	4,768	5,921	5,186	4,463	소 계	공공 복지 서비스
163	216	216	197	258	362	시설보호 ³⁾	
580	797	840	915	1,152	1,357	재가복지 ⁴⁾	
355	601	1,516	3,015	2,149	1,266	근로복지 ⁵⁾	
2,161	2,359	2,004	1,626	1,421	1,101	보건의료 ⁶⁾	
-	-	-	-	-	-	주거복지	
-	-	192	168	206	377	교육복지	
10,707	12,617	18,048	24,079	19,657	24,110	소 계	사회 보험
4,728	5,511	8,945	13,052	7,656	6,712	연 금 ⁷⁾	
4,600	5,432	6,542	8,315	9,623	14,292	의료보장 ⁸⁾	
1,355	1,556	1,451	1,274	1,456	1,745	산업재해보상보험	
24	118	1,110	1,438	922	1,361	고용보험	
68	96	134	172	272	348	민간복지서비스 ⁹⁾	
5,742	9,786	21,622	13,636	18,089	13,873	소 계	기업 복지
5,453	9,358	21,131	13,032	17,371	12,993	법정퇴직금	
-	85	94	153	212	309	출산휴가급여	
289	343	397	451	506	571	유급질병휴가급여 ¹⁰⁾	

5) 장애인특수학교 운영비, 고용서비스, 직업훈련기관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직업 훈련 및 운영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6)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건지출

7)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8) 직장·지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

〈표 IV-4〉 계속

(단위: 십억원)

계도	세부제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49,386	56,460	67,390	73,275	84,930
공공 부조	소계	5,850	6,370	7,503	9,205	11,002
	생활보호 ¹⁾	5,528	6,137	7,468	9,167	10,831
(사회 보상)	재해구호 ²⁾	297	197	35	28	168
	북한이탈주민지원 고엽제, 위안부보호	25	36	-	9	1
		-	-	-	1	2
공공 복지 서비스	소계	4,909	5,316	9,055	9,382	13,614
	시설보호 ³⁾	442	458	752	161	1,004
	재가복지 ⁴⁾	2,138	2,548	2,755	3,129	4,874
	근로복지 ⁵⁾	860	366	320	269	248
	보건의료 ⁶⁾	1,118	1,544	1,591	2,482	3,137
	주거복지	-	-	3,161	2,776	3,763
	교육복지	352	400	476	565	588
사회 보험	소계	25,608	28,982	32,834	37,047	41,786
	연금 ⁷⁾	7,330	8,912	10,294	12,095	13,332
	의료보장 ⁸⁾	14,916	15,947	17,548	19,334	22,249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2,016	2,482	2,860	3,026	3,164
	1,347	1,641	2,132	2,592	3,041	
	민간복지서비스 ⁹⁾	430	525	605	674	757
기업 복지	소계	12,591	15,267	17,394	16,967	17,772
	법정퇴직금	11,652	14,313	16,331	15,909	16,649
	출산휴가급여	260	321	362	307	366
	유급질병휴가급여 ¹⁰⁾	679	633	701	751	757

9)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액임.

10) 근로자의 유급질병휴가에 대한 급여임.

〈표 IV-5〉 재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1990~2006)

(단위: 십억원, %)

연 도	총 계	계	공 공 부 문	
			정 부 ¹⁾	사회보험 ²⁾
1990	7,371	5,431	1,892	3,539
1991	8,682	6,395	2,275	4,121
1992	10,649	7,854	2,587	5,266
1993	12,293	9,101	2,891	6,211
1994	14,915	10,711	3,361	7,350
1995	18,514	13,301	3,890	9,411
1996	21,557	15,747	5,040	10,707
1997	28,547	18,666	6,050	12,617
1998	47,085	25,329	7,280	18,048
1999	47,160	33,352	9,273	24,079
2000	47,015	28,653	8,996	19,657
2001	48,058	33,837	9,728	24,110
2002	49,386	36,365	10,759	25,608
2003	56,460	40,668	11,686	28,982
2004	67,390	49,392	16,558	32,834
2005	73,275	55,634	18,587	37,047
2006	84,930	66,401	24,616	41,786
(‘06년 백분율)	(100.0)	(78.2)	(29.0)	(49.2)

주: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금액임.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2004년 이후 포함.

〈표 IV-5〉 계속

(단위: 십억원, %)

계	민 간 부 문				연 도
	법정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질병휴가 급여	민간복지 서비스	
1,940	1,797	-	143	-	1990
2,287	2,121	-	166	-	1991
2,796	2,605	-	190	-	1992
3,192	2,987	-	205	-	1993
4,205	3,985	-	220	-	1994
5,212	4,922	-	235	55	1995
5,810	5,453	-	289	68	1996
9,881	9,358	85	343	96	1997
21,756	21,131	94	397	134	1998
13,808	13,032	153	451	172	1999
18,362	17,371	212	506	272	2000
14,221	12,993	309	571	348	2001
13,021	11,652	260	679	430	2002
15,791	14,313	321	633	525	2003
17,999	16,331	362	701	605	2004
17,641	15,909	307	751	674	2005
18,529	16,649	366	757	757	2006
(21.8)	(19.6)	(0.4)	(0.9)	(0.9)	('06년 백분율)

3) 4대 사회보험의 급여액임.

4)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액임.

끝으로 재원별 구성백분율을 <표 IV-5>에서 보면, 제도측면과 같이 사회보험 50.1%, 민간부문 22.0%, 그리고 일반정부 2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간 재원별 지출추이를 [그림 IV-2]에서 살펴보면 정부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사회보험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민간복지는 IMF충격시점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후 하향하여 점증하고 있다.

4.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앞에서 OECD는 사회복지지출의 통계항목을 9가지로 대분류하여 각각의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표 IV-6>의 9개 부문의 통계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개의 관심영역과 39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여야 할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항목 수는 부문에서 관심영역, 그리고 세부관심영역까지 총 66개이다.

본 연구에서 생산한 통계항목은 8개 부문의 47개 항목으로 평균생산율은 71.2%로 나타났다. 미 생산된 19개의 통계를 원인별로 보면, 제도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18개 항목(27.3%),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OECD가 요구하는 항목으로 세분화할 수 없는 것이 1개 항목(1.5%)이다. 먼저 제도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급여는 질병급여²⁶⁾, 주거급여 등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기업의 경영자체에 의한 실직이든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실직이든 원인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OECD 작성기준에는 '실업'과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26) OECD가 요구하는 질병급여는 아직 미도입 상태이지만, 우리나라 제도 중 각 사업장이 근로자의 질병휴가기간 동안 지급하는 유급휴가급여를 추계하여 포함하고 있다.

실업급여수령자의 실업유형을 분류할 기초 자료가 없어 이 또한 생산할 수 없다.

통계생산현황을 이들 9개 부문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IV-6> 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는 9개 부문의 통계를 살펴보면 요구통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근로무능력관련급여'로 11개(16.7%)²⁷⁾이며 다음이 '노령', '가족',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으로 8개(12.1%), 반면 '보건'과 '실업'이 가장 낮은 5개(7.6%)임을 알 수 있다.

<표 IV-6>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기능별 (2006년 기준)

사회복지지출통계의 구성					생산현황
부	문	관심영역	세	부	생산수(생산율) ¹⁾
			관심영역	총요구	
				갯 수	
1.	노령	2	5	8	7(87.5)
2.	유족	2	4	7	4(57.1)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2	8	11	9(81.8)
4.	보건	2	2	5	4(80.0)
5.	가족	2	5	8	7(87.5)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2	5	8	7(87.5)
7.	실업	2	2	5	3(60.0)
8.	주거	2	4	7	-
9.	기타	2	4	7	6(85.7)
계: 9개 부문		18	39	66	47(71.2)

주: 1) 생산율 = 생산수 / 요구통계수 × 100, OECD요구 통계 중 우리나라의 제도와 급여가 없는 경우, 미 생산(제출)한 것으로 계산함.

자료: 부문과 영역은 OECD, 2003 Edition of SOCX Database A New Structure, 2003.

27) '전체 요구통계수'에 대한 '각 부문별 요구통계수'의 백분율이다. 이하 같다.

5. 총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전체 망라한 총사회복지지출은 2006년에 약 102조 3300억원으로 요소 GDP의 1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참고로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할 때에는 요소 GDP(GDP at factor costs)를 사용하고 있다(Adema, W., 1999)²⁸).

총사회복지지출은 <표 IV-7>에서 공공부문의 지출(1)과 법정민간부문의 지출(2)의 합인 사회복지지출(1+2)에 자발적 민간지출(3)이 추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발적 민간지출에는 민간모금단체의 복지시설 등에 대한 배분액,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지출,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지원금이 추가되었다.

각 부문별 백분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의 총공공지출(1)은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총법정민간지출(2)이 18.1%를, 마지막으로 총자발적 민간지출(3)이 17.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 중 공공지출의 비중은 스웨덴, 독일이 90%, 덴마크 71%가 차지하고 있으며 자발적 민간지출의 비중이 높은 미국도 61%이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총사회복지지출 구성을 보면 공공부문의 지출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8) 요소비용GDP란 시장가격에 의한 GDP에 정부부문(간접세, 정부보조)을 제외한 요소비용만을 고려한 GDP를 말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GDP at market cost - (간접세 + 정부보조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정부부문을 제외하는 이유는 정부가 재화와 용역에 간접세를 부과하므로 시장가격은 간접세만큼 높아지는 반면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경상보조금만큼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소 GDP는 실제 생산에 참여한 경제주체들(개인과 기업)의 묶인 요소비용(factor cost)과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시장가격에 의한 GDP보다 요소가격에 의한 GDP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직접세는 국민계정의 본원소득에서 고려하지 않고 제2차 소득분배계정에 포함하고 있다.

〈표 IV-7〉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6)
(단위: 십억원, 요소 GDP대비 %)

구 성 항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사회복지지출(1+2+3)	59,109	60,949	63,752	73,070	80,693	88,253	102,330
요소 GDP 대비 %	11.63	11.20	10.69	11.53	11.75	12.36	13.75
1. 총공공지출1)	28,653	33,837	36,365	40,668	49,392	55,634	66,401
2. 총법정민간지출2)	18,362	14,221	13,021	15,791	17,999	17,641	18,529
3. 총자발적 민간지출3)	12,094	12,890	14,366	16,611	13,303	14,978	17,400

주: 1)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의 급여
 2)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등의 감면
 3) 민간모금단체, 종교단체, 기업의 법정외복리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민간의료비 등
 4)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의 법정외복리비가 감소하기 때문임. 즉 1인당 법정외복리비가 2002년 197천원에서 2003년 227천원을 최고로 2004년부터 162천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용근로자 수는 일정함.

6. 순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부담은 공제하고 조세혜택은 더한 순사회복지지출은 2006년에 약 101조 5060억원으로 요소 GDP 대비 13.64%로 추계되었다. 금액으로 볼 때 총사회복지지출이 순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8240억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부담이 조세혜택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

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가 개인 또는 민간부문의 복지증진과 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혜택 보다 높다는 것이다(표 IV-8 참고).

〈표 IV-8〉 우리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 규모(2000~2006)

(단위: 십억원, 요소 GDP 대비 %)

구 성 항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총사회복지지출	59,109	60,949	63,752	73,070	80,693	88,253	102,330
2. 조세부담1)							
직접세 및	3,979	3,717	3,716	4,666	5,442	5,784	6,127
사회보험료	399	359	344	513	803	983	1,095
간접세	3,580	3,358	3,371	4,153	4,639	4,801	5,032
3. 조세혜택2)							
T1	1,461	1,767	3,482	4,090	4,209	4,945	5,304
T2	1,461	1,767	3,482	4,090	4,209	4,945	5,304
T2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1-2+3-T2)	56,591	58,999	63,518	72,494	79,460	87,414	101,506
요소 GDP 대비 %	11.13	10.84	10.65	11.44	11.57	12.24	13.64

주: 1) 직접세는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부과된 소득세임(참고로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는 면세임).

간접세는 사회보험의 급여, 법정민간급여, 조세감면액에 대한 도·농가구의 평균간접세율로 추계함.

2) 근로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감세,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액,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임. 단,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몇 % 포인트나 증가할 것이며, 순사회복지지출이 약 23% 수준에서 수렴하는 복지선진국가의 몇 % 수준인가를 살펴보자. 우리의 2006년도 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 대비 11.41%, 순사회복지지출은 13.64%로 사회복지지출 보다 순사회복지지

출 수준이 약 2.23%포인트가 높았다(표 IV-9 참조). 또한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평균(23.2%기준, 통계제출 24개국)의 58.8%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9〉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 지출의 비교(2006): 한국, OECD평균

	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한 국	OECD평균	한 국	OECD평균
요소 GDP 대비 %	11.41	24.5	13.64	23.2
OECD평균 대비 한국수준(%)	46.6		58.8	

주: OECD평균은 2003년도 자료임.

7. 국제비교

가.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2003년 기준) 〈표 V-1〉 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상 GDP 대비 10.01%(2006)로 OECD 회원국 중 복지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16.59%), 일본(18.39%)에 비하여 약 50%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경상GDP 대비 30% 수준의 스웨덴(31.85%), 프랑스(29.08%), 독일(28.40%) 등은 우리의 3 배 이상의 수준이다.

〈표 V-1〉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2003)

(단위: 경상 GDP 대비 %)

OECD 평 균	한 국 ¹⁾	스웨덴	프랑스	독 일	덴마크	영 국	네덜 란드	일 본	미 국
21.83	10.01	31.85	29.08	28.40	27.80	21.43	21.38	18.39	16.59

주: 1) 한국은 본 연구결과이며, 2006년자료 임.

자료: 외국자료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2007.

그러나 이러한 단순비교방법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이나 인구고령화 수준은 우리에게 비해 약 1.4~2배 이상 높은 상태이다. 또한 복지국가유형에 따라 재원의 배분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다만, 복지국가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학자들간 어느 유형을 모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를 우리의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나. 총사회복지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²⁹⁾

주요 OECD 국가의 요소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13.75%(2006)로 미국의 28.2%(2003, 이하 동일), 일본의 22.6%에 비해 낮았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은 약 34%를 넘어 우리의 약 3배 이상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의 약 30~5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 순사회복지지출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3.64%(2006)로 일본

29) OECD가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에 대해 국민계정 구계열로 발표한 2002년도 자료는 있으나 신계열의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OECD의 신계열 내부자료를 입수(2003년도)하여 활용하는 만큼 추후 일부 숫자의 변화가능성이 있다.

22.2%, 미국 27.0%, 영국 28.2%, 덴마크 25.2%, 그리고 스웨덴 30.9%에 비해 약 39~55%의 수준이다. 즉,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의 격차는 총사회복지지출(30~54%)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 V-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과의 요소GDP 대비 비율의 차이를 보면 약 0.2~10%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격차는 각각 0.11, 0.4%포인트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총사회복지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에 상응하는 조세혜택간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의 격차는 1%포인트, 독일과 영국은 3%포인트, 그리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10%포인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2> 주요 OECD국의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비교(2003)
(단위: 요소 GDP 대비 %)

	한 국 ¹⁾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총사회복지지출(A)	13.75	40.7	35.2	33.9	31.4	25.7	28.2	22.6
순사회복지지출(B)	13.64	30.9	25.2	30.8	28.2	24.0	27.0	22.2
증 감 (B-A)	-0.11	-9.8	-10.0	-3.1	-3.2	-1.7	-1.2	-0.4

주: 1) 한국은 본 연구결과로 2006년임.
자료: 외국자료는 OECD, *Net Social Expenditure* 관련 내부자료

다.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주요 OECD 국가의 요소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2003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11.41%(2006)로 미국의 17.8%, 일본의 19.8%에 비해 낮았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독일은 30%를 넘어 우리의 3배 이상

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주요 회원국의 27~57%에 불과한 수준이다(표 V-3참조).

다음으로 OECD 국가의 요소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차이를 살펴보면 <표 V-3> 과 같이 복지선진국가는 사회복지지출에 비해 순사회복지지출이 감소되는 경향을, 반면에 영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변화폭은 백분율로 볼 때 덴마크, 스웨덴이 약 20% 감소, 반면에 영국, 일본은 10% 증가, 우리나라는 19% 증가, 특히 미국은 50%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V-3〉 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2003)
(단위: 요소 GDP 대비 %)

	한 국 ¹⁾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 국	미 국	일 본
사회복지지출(A)	11.41	32.5	37.8	31.8	24.6	17.8	19.8
순사회복지 지 출 (B)	13.64	25.2	30.9	30.8	28.2	27.0	22.2
증 감(C, =B - A)	2.23	-7.3	-6.9	-1.0	3.6	9.2	2.4
증감률(% (C/A×100)	(19.5)	(-22.4)	(-18.2)	(-3.1)	(14.6)	(51.7)	(12.1)

주: 1) 한국은 본 연구결과로 2006년임.
자료: 외국자료는 OECD, *Net Social Expenditure* 관련 내부자료

이러한 이유는 자발적 민간급여와 조세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먼저 자발적 민간급여가 덴마크와 스웨덴은 사회복지지출에 약 3%(요소 GDP 대비)가 추가되며 일본 2.8%, 영국 6.8%가 더해진다. 특히 미국은 10.4%가 추가되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총사회복지지출(표 V-2)에서 사회복지지출(표 V-3)을 차감한 것이다. 다음 조세제도에

의해 감소되는 폭은 <표 V-2>의 “증감”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미국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낮지만 순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복지선진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V. OECD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차례의 세계 전쟁 후 복지국가는 남성가장에게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대부분의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였고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었다. 즉 전통적인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 소득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가족정책의 내용은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의 현금급여와 조세급여를 통한 보충적인 소득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가족정책은 몇 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출산의 감소와 연기, 이혼, 한부모 가족, 동거와 혼외 출산의 증가 등 가족 구조와 가족 유형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몇몇 국가에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다. 둘째, 연속적인 경기 침체, 평균 이상의 실업률 수준,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을 증가시켰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는 남성 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정책의 변화를 요구했고, 여성 혹은 남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강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된 경제로 인한 지속적인 경쟁의 강화는 인적 자본의 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 수준의 차이를 야기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성인

의 탈빈곤 혹은 고용 정책의 효과가 아동기 투자의 효과보다 낮으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연구 결과(Cunha et al., 2005; Heckman & Lochner, 2000)들은 아동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주장하였다(Gauthier, 2002; Esping-Andersen et al., 2002).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 정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가족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지 않거나 몇몇 국가에서는 심지어 감소하였다. OECD SOCX 데이터의 G에 대비 가족 급여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1980년 0.14에서 2003년 0.11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독일(0.10→0.07), 미국(0.06→0.04), 네덜란드(0.10→0.08)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한국은 1990년 0.01에서 2003년 0.02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근 선진국들은 가족이 처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여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족정책을 확대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³⁰⁾. 따라서 가족급여에 대한 지출 수준만을 종속변수로 살펴볼 때 제도의 변화가 주는 함의를 찾아내기 어려워 각국의 제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에 대한 각국의 정의와 개념이 다르고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여 각국의 가족정책을 아우르는 단일한 분석틀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Kammerman 과 Kahn(1978)이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한 가족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때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해지며, 때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성정책과 결합하기도 한다³¹⁾.

30)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은 근로빈곤층 가구의 소득보장과 근로동기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나 가족정책의 소득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미국의 'EITC'는 기존의 급여 수준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중산층 유자녀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아동빈곤 0%를 목표로 하는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일부이다.

31) Kammerman and Kahn(1978)은 유럽에서 행해지는 소득재분배와 인구정책, 부양자에 대

각국에서 가족정책의 목적을 전통적인 1인부양자가구의 유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2인소득자가구의 유지에 두는가는 중요한 분석의 기준이 된다. 이는 다시 자녀에 대한 지원방식과 결합하는데 1인부양자가구에서는 여성이 가정에 남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투자는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과 인지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2인소득자 가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적인 유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기 때문에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과 결합한다. 즉 가족정책을 통한 선호하는 가족의 유형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고 이는 가족급여의 지출에도 반영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로 지출 수준을 산출변수로 유형화하여 각국의 제도에 대한 고유성을 간과하는 한계와 각국의 제도와 특징을 상세히 소개하지만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의 투입(input)변수라고 할 수 있는 가족급여의 지출 수준을 통한 클러스터를 시도하고, 각국에서 선호하는 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의 목표에 따른 제도의 결과(output)변수들을 통한 클러스터를 시도한다. 두 가지 기준을 통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는 OECD 각국이 가족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구성에 대한 유형들을 제공하고, 특히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들에서 투입과 그에 따른 결과가 배치되는지 여부를 통해 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가족정책의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보조적인 지원이 전통적인 기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보다 최근에 강조되는 가족의 기능으로는 아동의 삶의 조건을 향상과 여성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가족 급여 지출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자료는 1980년에서 2003년까지 공표된 OECD SOCX 데이터를 이용한다. OECD SOCX 데이터는 공공부문, 법정민간 부문, 자발적 민간부문으로 구성되며, 현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부문의 지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가족정책의 의도된 목표에 따른 지출의 구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급여의 하위 항목(subcategory)별로 지출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현금 지원(family allowance),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지출(maternity and parental leave),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서비스 지출(child care), 그 외 다양한 현물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 V-4〉에서 보듯이 각국마다 가족급여지출의 하위항목은 상이하다. 따라서 정책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급여지출의 하위항목을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준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선택하였다. 먼저 정책 동기가 가족의 소득보장인가, 유자녀 가족의 일-가족 양립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자녀 가족에 대한 현금 급여의 총 지출과(10.5.1.1.0), 출산 및 육아휴직의 총 지출(10.5.1.2.0)을 살펴보았다. 소득보장의 총 지출은 아동수당과 가족수당, 양육수당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현금 지원과 WTC(영국-유자녀 가족 중 가족 요소)와 Child Tax Benefit(캐나다) 등 조세를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출산 및 육아휴직의 총 지출은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소득 지원과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일시적인 휴가의 현금 급여, 임신 현금 급여, 입양 수당 등이 포함된다.

〈표 V-4〉 OECD SOCX의 가족급여 지출 하위항목의 예

	스웨덴	미국
10.5.0.0.0	FAMILY	FAMILY
10.2.1.0.0	Cash benefits	Cash benefits
10.5.1.1.0	Family allowances	Family allowances
10.5.1.1.1	Family or child allowance	AFDC
10.5.1.1.2	Child supplement	Emergency assistance
10.5.1.1.3		TANF
10.5.1.2.0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10.5.1.2.1	Income support during parental leave	
10.5.1.2.2	Income maintenance	
10.5.1.2.3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10.5.1.2.4	Pregnancy cash benefit	
10.5.1.2.5	Parental leave	
10.5.1.2.6	Adoption allowance	
10.5.1.3.0	Other cash benefits	Other cash benefits
10.5.1.3.1	Other cash benefits	
10.5.2.0.0	Benefits in kind	Benefits in kind
10.5.2.1.0	Day care/Home-help services	Day care/Home-help services
10.5.2.1.1	Child care	At-risk child care
10.5.2.1.2	Child care(pre-primary education)	Child care (pre-primary education)
10.5.2.1.3	Accommodation	
10.5.2.1.4	Home help	
10.5.2.1.7	Child day care(by local government)	
10.5.2.1.8	Accommodation(by local government)	
10.5.2.2.0	Other benefits in kind	Other benefits in kind
10.5.2.2.1	School meals	Child welfare: IV-B programmes
10.5.2.2.2	Individual and family assistances	Child welfare: IV-E programmes
10.5.2.2.3	Other benefits in kind	Social Service Block Grant(SSBG)
10.5.2.2.4		Child Care Development Block grant(CCDBG)
10.5.2.2.5	Other benefits in kind(by local government)	Child Support Enforcement(CS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Source: OECD SOCX(2005).

다음으로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 각국의 제도의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헤를트와 카우프만(Herlth and Kaufmann, 1982)의 정책에 대한 유형적 접근에 따르며 OECD에서 발간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먼저 1인 가구에 대한 유자녀 가구의 조세 격차(tax wedge)를 살펴보기 위해서 OECD Taxing Wages(2007)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평균 소득을 가지는 1인 가구 소득자와 2 자녀를 둔 1인 생계부양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조세부담을 살펴봄으로써 소득보장이 가족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만약 가족정책의 목적이 맞벌이 가구의 일-가족 양립에 있다면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15세 미만 자녀의 수가 2명인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1인 일 때는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하지만 자녀가 2인 이상일 때는 보육비용으로 인한 기대임금의 상승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OECD Babies and Bosses(2005; 2007)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편 가족정책의 목표가 전통적인 가족의 유지와 소득보장에 있다면 육아는 사회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책임자는 주로 여성(어머니)이 된다. 따라서 어린 연령의 자녀는 가정내 보육이 주를 이루며 3-5세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성 함양과 인지적 학습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반면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국가에서는 일-가족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의 근로시간 동안을 충분히 포함하는 보육이 발달하게 된다. 사실상 폭넓은 연령까지 보육이 제공되는 것이 요구되나,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이 높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부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거나 노동시장에서 사실상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린 연령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OECD Starting Strong II (2005)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정책의 유형화는 두 가지 수준에서 진행된다. 먼저 가족정책의 투입이자 결과를 강제하는 가족급여 지출의 하위항목별 유형화이다. 다음으로 가족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그로 인한 성과의 유형화이다. 이 때 지출과 제도의 유형화의 클러스터들이 각각 동일한 국가들로 구성된다면 가족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명시적이고 영역이 단일한(monopoly) 가족정책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지출과 제도의 유형화가 다르다면 가족정책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지출이 되었거나 가족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이 서로 배치되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유형화가 단순한 이상형(ideal type)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각 유형화의 대표성을 가지는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현재 가족정책과 각 유형별 대표성을 가지는 국가들의 가족정책의 상이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다시 한국의 가족정책의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가. 가족정책의 개념 및 범주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위, 분류방식은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정책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Kammerman & Kahn(1978)은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으나 정책의 제정과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 정책(explicit policy)과 묵시적 정책(implicit policy)으로 분류했다. 명시적 정책은 보육서비스, 공공부조, 각종 조세혜택처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을 지원하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가진 정책인 반면 묵시적 정책은 도로와 건물의 배치, 이민정책 등 특별히 가족을 위한 정책은 아니나 그 결과나 실행에 있어 가족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한편 Gauthier(1999, 2000; 2002)의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이와 유사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정책의 혼합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가족정책에는 재정 지원, 근로 부부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 의료와 교육에 연관되는 정책, 가족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티에는 일반적인 문헌들이 협소한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Kaufmann et al.(2002) 역시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는 가족정책이 일관성 있는 분야가 아님을 강조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다. 먼저 법적 개입 형태로는 가족 내 역할과 관련되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권리와 의무 규정(즉 결혼 및 이혼, 친권, 아동의 권리, 상속 등과 관련되는 가족법), 아동양육과 관련되는 상황을 존중하도록 제 3자를 강제하는 규정(작업장 내 모성에 대한 보호, 편부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 출산 및 양

육 휴가, 세법이나 연금에서 가족에 대한 크레딧 등)이 있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는 조세법과 사회보장, 빈곤 프로그램에서 아동이나 가족 수당 등의 현금 급여가 있다.

이러한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가족 그 자체의 정의와 연관된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 두 명의 성인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지거나(Murdock, 1949), 결혼제도에 의해 결합된 한 쌍의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지며 가족원 각자는 주어진 성역할에 따라 구분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단위(Parsons, 1949)였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족은 생물학적 요구에 기인하는 보편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Schultz, 1977), 가족복지 역시 전체로서의 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인 것이다(Feldman & Scherz, 1990). 이로써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정책 역시 전체로서의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 위기와 함께 고실업 저성장 체제가 장기화되자 남성 1인이 생계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족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졌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선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내 돌봄 노동은 여성에게 책임이 부과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계상황을 맞이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써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육서비스(ECEC 서비스)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가가 요구되었다. 이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역할도 하였다.

현대 가족의 변화는 '전체로서의 가족'의 구성원이자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모성과 부성이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족정책의 일환이자 고용정책이며 여성정책이기도 한 '일-가족 양립정책'을 탄생시켰다. 이 때 가족정책과 일-가족양립정책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Meyers et al.(1999; 2000)은 EU 또는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비교하면서 공보육체계와 모성휴가제도, 양육수당과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Kammerman(1997)은 일-가족 양립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연구 내용과 거리를 유지하며 가족정책을 고용관련 정책, 소득관련정책, 사회적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고용관련 제도는 모성부성정책과 피고용자 급여, 소득관련제도는 세금제도(세율의 차등 적용, 피부양자를 위한 면세제도, 빈곤자 면세, 근로소득공제)와 가족급여(공공부조, 피부양자 수당, food-stamp제도), 사회적 서비스로는 ECEC 서비스, 모성 및 아동 건강, 주택정책, 특별한 요구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책 등이다.

최근 OECD는 가족과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Family database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족정책이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즉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며, 고용 기회에서 젠더 평등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이다(OECD, 2008). 이외에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아동, 청소년, 가족정책의 국제비교를 하는 Clearinghous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Child, Youth and Family Policies 역시 가족정책을 모성·부성·육아·가족휴가와 ECEC 서비스, 가족수당,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세금혜택, 자녀부양, 자녀와 연관된 소득이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Esping-Andersen et al.(2002)은 최근의 저작에서 가족이 처한 새로운 위험들을 지적하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보듯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취학전 자녀의 양육문제가 제기되면서 보육서비스의 발달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에스핑-안텔센이 지적하듯이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전통적인 빈곤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서 접근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들을 제기되었다. Cunha et al.(2005)은 생애주기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회수율을 추정했는데, 각 생애주기에 동일한 양의 투자를 가정했을 때 투자 회수율은 취학전 아동이 가장 높고 그 영향이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한 페리 프로그램의 패널 자료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한다. 즉 취학전 페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고용율이 18% 높고 월소득은 \$453나 높으며 복지 이용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Starting Strong 2*, 2005).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의 가족정책과 아동 수당 등의 특정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들이 있으며(심창학, 2003; 이선주·박선영·김은정, 2007; 신행선, 2007), 다음으로 이론적 시각에서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연구들이 있고(조홍식 외, 2002; 변화순 외, 2001; 최경석 외, 2001; 최연실, 2004),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비교 혹은 유형화를 시도하고 한국의 가족정책에 정책적 함의를 주는 연구들이 있다(장혜경 외, 2002; 윤홍식, 2006; 정연택, 2007).

먼저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연구들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의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에의 도입 타당성을 논의하는 탐색적 연구들이다. 다음으로 특수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환경과 배경을 통해 해당 국가 특정 시기에 대한 사회문화적 시대상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들도 있다. 전

자의 특징을 가지는 대표적인 연구로써 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7)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가 많은 가정의 빈곤을 예방함으로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전 육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아동수당 제도를 고찰하였다.

반면에 심창학(2003)과 신행선(2007)은 후자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심창학(2003)은 Kammerman과 Kahn(1978)이 명시적이라고 규정하고 Gauthier(1999; 2002)가 협소한 가족정책이라고 범주화한 가족 수당과 공단 중심의 가족 부양 급여 제도,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및 양육 급여 등 직접적 소득 이전과 조세 제도를 통한 간접적 소득 이전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한부모 및 가족 복지정책의 특징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신행선(2007)은 프랑스의 비시(Vichy) 정부(1940-1944)가 민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였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유기체적인 사회 질서와 도덕적 질서 회복의 기반으로 '가족'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정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각 학자들마다 매우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조홍식 외(2001)는 가족의 기능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내용을 범주화하였고, 그에 따르면 가족생활교육, 부부관계개선교육, 가족법 및 가족상담치료, 근로복지와 각종 소득보장제도, 위탁 및 보호시설, 각종 치료프로그램과 쉼터 등이 가족정책에 포함된다. 변화순 외(2001)와 최경석 외(2001)은 가족의 욕구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족의 욕구는 가족가치관 및 규범에 대한 인식, 소득안정, 건강 및 보건, 보호 및 양육, 주거보장, 심리·정서적 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에 포함되는 가족정책의 범주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과 제도, 소득보장제도 및 소득공제제도, 가족 수당 및 아동수당, 건강보장제도, 노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주택프로그램과 주거관련 급여, 대인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편 최연실(2004)은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가족정책을 구분하였는데,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한 정책과 개별 가족구성원(아동, 노인,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르면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공공부조, 소득공제제도, 주택정책, 가정폭력방지책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교육정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알선 및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비교 혹은 유형을 시도한 연구들은 주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분석틀을 구성하고 가족정책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함께 논의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연구는 윤홍식(2006a; 2006b; 2007)의 연구들이다. 그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가족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가족정책을 분석하면서 일-가족양립정책만을 연구 범위로 제한하였다. 그에 따라 탈상품화와 가족화를 살펴보는 부모권과 탈가족화와 상품화를 살펴보는 노동권을 분석의 틀로 제시하였고, 분석 내용에는 부모휴가의 급여대체수준과 기간 및 유연성, 0-2세 보육비율과 3-5세 보육비율, GDP 대비 지출, 순보육비용 등을 살펴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장혜경 외(2002: 24)도 페미니즘 시각에 근접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가족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을 전통적 요소와 비전통적 요소로 구분하였고, 전통적 요소로는 소득지원정책(직접적 이전, 조세정책)과 자녀양육지원정책(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 비전통적 요소로는 노인부양관련정책(노인수발자 지원정책)을 포함하였다.

한편 정연택(2007)은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일반 사회정책을 가족정책으로 포함시킬 경우 양자의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가족 정책을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범주에는 가족과 아동에 대한 소득이전과 부부가 함께 근로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tax

neutrality), 가족의 형태나 기능 유지와 관련된 여성고용정책, 노인에 대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에서 가족정책은 개념의 정의와 범주에서부터 매우 다양하다. 가족정책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의 연구들은 외국 사례의 소개에 가깝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국제비교와 유형화를 통해 한국 가족정책의 현재를 지적하고 미래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주소이다. 이에 대해 이진숙·안은숙(2006)은 그동안 한국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대상에 포함되는 정책은 존재하였으나 가족복지정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연택(2007)은 인구 정책이나 고용정책을 가족정책과 혼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분의 프로그램만을 보기 때문에 가족정책 제도간의 상보성이나 효과에 대한 논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 이론적 고찰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 연구를 주도해온 정치경제학에서 분석의 초점은 국가와 시장간의 투쟁에 고정되어 있었고, 가족은 계급 구성원의 소재이거나 분배 결과와 탈상품화의 수혜자인데 한해서만 언급될 뿐이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에스핑-안데센(Esping-Andersen)이 있다. 그는 최초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그의 저서에서 분석의 초점을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두었으며, 분석대상을 유급노동을 하는 남성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전체에서 그는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사회 연대의 양식을 기준으로 세 개의 세계를 규정하였다.

먼저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근간은 열등수급의 원칙(less eligibility)과 자조(self-help)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시장의 우월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국가를 최소화하고 위험을 개인화하며 시장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보편주의와 관대한 급여에 더하여 '위험의 포괄적인 사회화'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민주주의국가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관대한 소득지표로 인해 표준적인 소득보장이 보완됨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동기를 보유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위험과 지위가 분산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남성이 주 생계원이라는 것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최종적인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Esping-Andersen, 1990).

한편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중심적인 '주류'복지국가 이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였다(Korpi, 2000; Orloff, 1993; Hernes, 1987). 특히 코르피(Korpi, 2000)는 에스핑-안텔센의 복지국가 유형이 성별분화된 결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국가와 시장 관계와 남성의 유급노동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여성의 무급노동은 고려하지 않았고,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부정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에스핑-안텔센은 그의 후기 저서에서 '가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제도이며, 사회의 초석이자 하나의 행위자, 곧 의사결정자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가족은 그 자체가 가족해체의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단일 소득자 가족의 감소와 모의 고용을 급증 등의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에스핑-안텔센은 그의 기존 논의에서 확장하여 가족이 지고 있는 복지책임이 가족을 떠나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조달되는지를 측정하는 '탈가족화' 지표를 분석틀에 포함시켰다. 그는 기존의 분석틀에 가족을 포함하면서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분석틀은 확장되었지만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예외적인 국가로 설명하는데 먼저, 영국은 세계대전 직후 수십년의 시기를

대상으로 비교한다면 영국과 스칸디나비아는 동일한 체제를 이루지만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현대의 시점에서 영국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영국은 분석 시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체제유형이 달라진다. 다음으로 네덜란드는 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네덜란드는 강력한 보편주의와 포괄적인 적용범위, 관대한 탈상품화로 인해 사민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의 역할을 고려한 사회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발달과 소득보장이 주로 남성주생계원이라는 가정 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보수주의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표 V-5〉 에스핑 안델센의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
역할의 비중:			
가족	주변적	주변적	중심적
시장	중심적	주변적	주변적
국가	주변적	중심적	보충적
복지국가:			
지배적인 연대양식	개인적	보편적	혈연 조합주의 국가주의
지배적인 연대의 소재	시장	국가	가족
탈상품화 정도	최소	최대	높음(주생계원)
대표국가	미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Source: Esping-Andersen,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1999: 176.

최근의 연구에서 에스핑-안델센 외(2002)는 사회적 통합과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이라는 복지 주체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초기 아동기는 사람의 삶의 과정을 결정하는 주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아동기에 적절한 교육과 보호가 제공되지 않아서 충분한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가지지 않은 채 성인기에 도달한다면, 실업과 빈곤으로 인하여 사회적 처치가 필요한데 성인기의 개입 효과는 매우 낮기 때문이다(Cunha et al., 2005). 따라서 에스핑-안텔센은 생애초기 아동기의 중요성 때문에 가족의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며, 역설적으로 여성의 유급고용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에스핑-안텔센은 유급노동을 하는 남성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를 토대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으나 이후 가족을 또 하나의 복지주체로 도입하면서 여성의 무급노동까지 확대하는 분석틀에 근거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에스핑-안텔센은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이상적인 모델로 설정함으로써 여성의 무급노동보다는 유급노동 참여에 선호를 두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예, 보육서비스와 노인재가복지 서비스 등)를 지표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무급노동은 다시 분석틀에서 미발달된 것으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페미니스트들은 유급노동을 하는 남성과 경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유형화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분석틀을 가진 복지국가 유형화를 제안하였다. Orloff(1993)는 에스핑 안텔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의 세 차원에 젠더 관점을 통합시켜 수정하고 '여성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추가하였다. Sainsbury(1999)는 사회적 권리가 혼인상태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나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 등을 포함하면서 더 중요한 기준으로 양육자로서 여성의 권리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살펴본다.

한편 Korpi(2000)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불평등에 대한 기초

를 형성하고 가족내 자원분배를 결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적 돌봄 노동의 재분배가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일반적인 가족 지원 모형은 아내들이 가족 내에서 돌봄과 재생산에 대한 과업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단지 이차 소득자로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유급노동에 진입하는 것을 가정하는 반면 이중 소득자 모델은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부모되기를 가능하게 해주고, 여성과 함께 남성이 유급노동과 함께 부모되기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국가의 가부장적 가족지원 체계에 대해 비판하고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영역에서 성통합을 이루고, 탈가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모형의 모색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또한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유급노동에의 접근성이다. 이는 다시 사회적인 돌봄노동에의 수급권을 결정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 가족정책이라고 할 때 돌봄 노동은 당연한 부산물로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세인즈베리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통칭하여 ECEC 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코르피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 시설의 공급이 2인소득자 가구를 지원하는 반면 3-6세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에 대한 공급이 일반적인 가족을 지원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다. 선행연구의 검토

전통적인 가족정책의 유형화는 카머만과 칸(197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우선 명시적인 가족정책과 묵시적인 가족정책으로 구분하고, 명시적인 가족정책에는 다시 포괄적인(comprehensive) 범주의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와 하나의 정책분야(as a "field")로서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로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가 있고, 명시적이고 독립된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이다. 한편 묵시적인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는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이다.

초기의 가족정책의 유형화는 주로 가족정책의 대상과 목적, 기능과 역할 등을 통한 가족정책의 개념화에 따른 인과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최근의 가족정책에 대한 유형화의 관심은 주류 복지국가유형화에서 배제된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과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페미니스트들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다양한 접근 등이 가족정책의 유형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세인즈베리는 초기에 성별 분업 여부와 혼인 상태가 여성의 사회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남성 부양자레짐(male-breadwinner regime)과 성역할 분리레짐(seperate gender roles regime), 부양-양육자레짐(individual earner-carer regime)으로 구분하였으나(Sainsbury, 1993), 여러 차례의 수정 이후 부양자모델과 개인적 모델로 구분하였다(Sainsbury, 1999).

먼저 부양자모델은 소득자로서 남편의 역할과 돌봄 노동의 제공자로서 아내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따라서 복지 수급권은 부부간에 다르고 복지의 수급 근거는 가족의 부양자 여부에 달려있다. 즉 남성은 부양자로서 직접적인 복지 수급자격을 가지나 여성은 피부양자로서 복지수혜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국가로 네덜란드와 미국을 포함하였다. 반면에 개인적 모델은 부부 각자가 소득자이자 돌봄노동의 제공자로 역할을 하며, 복지의 수급권은 동일하다. 즉 개인이 복지혜택의 단위이자 수급자가 되며, 돌봄노동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강한 국가이다. 대표적인 예는 스웨덴이다.

이러한 논의는 각 국가에서 가족을 위한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코르피(2000)는 이를 보다 확장시켜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의 접근권과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가족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과 아동 및 비경제활동 배우자에 대한 가족조세급여의 수준이 높고 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반면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고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이중 소득자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0-2세 아동의 시설 이용률이 높고 유급 모성휴가의 소득이전 대체율 및 급여 기한, 대상 적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노인에 대한 공적 가정지원 서비스도 잘되어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지향적인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연역적인 방식으로 문헌분석이나 데이터를 통해 자의적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아동빈곤율 등의 결과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한 반면 고티에(2002)는 에스핑 안델센의 복지국가 유형화를 기준으로 가족정책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각 유형들이 수렴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의 범주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는 두 개의 주요한 가족정책의 내용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현금 급여와 근로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현금급여로는 평균 소득 100% 수준인 가구의 가족 유형별(양부모 가구와 1인 가구) 가처분 소득 대비 가족급여의 비중이다. 다음으로 근로부모에 대한 지원으로는 출산휴가의 기간, 전체 휴가의 기간, 출산 휴가 동안의 현금급여 대체율 등을 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합주의 국가들(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은 여전히 가족에 대한 직간접적인 현금 지원이 가장 높았고 사민주의 국가들(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현금 지원은 조합주의 국가들보다 2%정도 낮았다. 반면에 남유럽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부모에 대한 지원은 자유주의, 남유럽, 보수주의 국가들에서 일정하나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증가가 나타났다. 출산휴가기한동안 지급되는 급여의 경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민주의 국가에서 더 높고, 자유주의 국가들보다 보수주의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가족양립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으며, 초기에 연역적인 방식이 많이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을 둔 귀납적인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장지연 외(2005)는 국가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양육문제에 개입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첫째 근로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유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전일제 근로자의 증가율을 높이는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짧으나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은 높고, 공보육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과세 단위는 개인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 등의 사민주의 국가들이 있으나 프랑스도 보육정책에 있어서는 이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어도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임금 노동을 중단하는 것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육아휴직 기간이 길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대체율 수준은 높으나 보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을 선호한다.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과 네덜란드가 있다. 셋째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은 미국과 영국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보육은 시장에 의존하거나 비공식적 부문에 의존한다.

한편 최은영(2005)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사회화 정

도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이 때 분석기준은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지원의 수준이다. 즉 접근성이 높고 비용지원이 높을수록 사회화되어 있고, 접근성이 낮고 비용이 낮을수록 덜 사회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접근성이 낮고 비용 지원이 낮은 국가로는 이탈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이 있는데, 특히 이들 국가의 0-3세의 ECEC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접근성과 비용이 모두 중간 수준인 국가로는 3-6세에 대한 독일,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의 ECEC 서비스가 포함된다. 한편 접근성은 중간수준이나 비용지원이 높은 국가로는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0-3세), 프랑스(0-3세)가 해당되고, 접근성이 높으나 비용 지원이 높은 국가로는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3-6세), 벨기에(3-6세), 이탈리아(3-6세), 룩셈부르크(3-6세), 네덜란드(3-6세)가 해당된다.

윤홍식(2006b)은 OECD 21개국을 중심으로 일가족양립정책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권과 노동권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부모권은 부모휴가의 급여 대체수준과 기간, 유연성을 변수로 삼았고, 노동권은 0-2세 보육비율과 3-5세 보육비율, GDP 대비 지출, 순보육비용을 변수로 분석한 후 각각을 클러스터링 하고 통합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부모권을 기준으로 분석하면(군집계수=2.5기준) 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그리스·이태리·벨기에,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한국·캐나다·호주,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스위스(독자적인 군집)로 나타난 반면 노동권을 기준으로 분석하면(군집계수=4.7) 덴마크·스웨덴, 핀란드·노르웨이·네덜란드, 독일·이태리, 미국(독자적인 군집), 한국·그리스·호주·영국·아일랜드·캐나다로 나타나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권과 노동권의 통합 분석을 위해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화가 제안되었다. 먼저 부모권과 노동권이 모두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이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노동

권과 부모권이 사민주의 국가들보다는 낮으나 다른 유럽 대륙 국가들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인 가족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과 이탈리아는 부모권은 높으나 노동권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스위스·영국·캐나다·네덜란드·포르투갈·한국은 부모권과 노동권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낮게 나타난 독립적인 국가군인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연택(2007)은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지출 수준과 개입 유형별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그는 지출 수준으로 가족에 대한 총지출/총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의 주안점이 아동에 있는지 노인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출/총사회복지지출과 노인서비스 지출/총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 정책의 개입유형을 분석했는데, 법적 개입유형에서는 출산휴가기간과 출산급여,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합산 기간을 지수화하였다. 경제적 개입 유형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부 과세방식(분리 및 합산 과세 여부)을 더미변수로 처리하고, 상용직/파트타임의 과세와 상용직/상용직의 과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개입 유형으로는 0-2세 보육시설 이용률과 공공시설의 비율, 3-5세 아동의 이용률과 공공시설의 비율, 평균임금 대비 순보육비를 지수화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핀란드·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가 북구군집으로 묶였으며, 그리스·이탈리아·한국·일본이 동아시아 군집으로, 미국·포르투갈·스페인 남유럽 군집으로, 벨기에·뉴질랜드·오스트리아·영국·호주가 영연방군집으로 묶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유형은 에스핑 안텔센의 유형화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3. 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헤를트와 카우프만(1982)은 국가가 가족에 개입하는 정책의 동기를 4가지로 구분하였다³²⁾. 그에 따르면 출산율의 장려는 인구정책적 동기를, 유아녀가족의 소득보장은 사회정책적 동기를, 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은 가족제도적 동기를,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해방적 동기를 따른다. 그에 따르면 초기 가족정책은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가족의 양육기능을 강화하고 대체하는 데에 가장 주된 관심을 두었고, 모성기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가족수당(국가에 따라서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정책수단들을 통해 아동양육자인 부모를 지원하였다(Orloff, 2001). 즉 전통적인 가족정책은 주로 사회정책적 동기와 가족제도적 동기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헤를트와 카우프만의 분석틀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은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지만 유아녀 가족의 소득보장의 일부로 흡수되어 사회정책적 동기와 가족제도적 동기를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OECD SOCX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해방적 동기를 갖는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

32) 첫째, 인구정책적 동기는 국가가 정책을 통해 인구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구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인구의 구조와 변화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정책적 동기는 국가가 가족의 생활상황과 아동의 발달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아녀 가족과 무자녀 가족간에 사회경제적 부담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목적화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제도적 동기는 국가가 개인들이 제도로서의 가족적 생활형태속에서 일상생활을 순조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넷째, 해방적 동기는 가족이 성과 세대간에 지배와 권력관계로 구조화되어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가 가족 내에서 남성으로부터 여성, 부모로부터 아동의 종속성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이다. 그러나 코르피(2000)는 최근의 연구에서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 공급율과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 공급율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전자는 이인소득자 가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후자는 일반적인 가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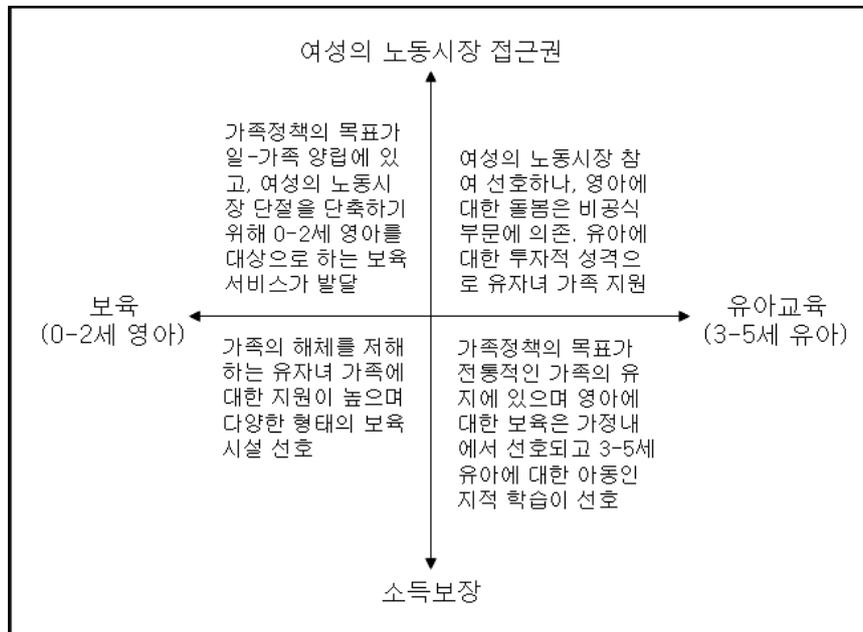
한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과 돌봄 노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주류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남성과 경제영역 중심의 유형화를 탈피할 뿐만 아니라 가족내 권력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기준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적 선행 연구들 역시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접근성을 강제하거나 혹은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윤홍식, 2006a; 윤홍식, 2006b; 장지연 외, 2005).

그러나 코르피가 지적하듯이 일반적인 가족을 지원하는 3-5세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0-2세 영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기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 시설 공급률은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데 반해 3-5세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그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김지경, 2005: 224). 또한 에스핑 안텔센 외(2002)가 지적하듯이 최근의 아동투자에 대한 논의는 수단적 동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 카머만 과 칸(1978) 역시 아동발달을 가족정책에 대한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스트적 시각에서 복지국가를 유형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노동권과 부모권이라는 두 축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헤틀트와 카우프만(1992)의 정책동기 분석들과 에스핑-안텔센(2002)의 아동에 대한 투자 논의를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즉 정책 동기의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통한 해방적 동기를 장려하는 국가와 전통적인 가족을 유지하려는 가족제도적 동기를 가지는 국가는 서로 양극단에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동발달 자체가 중요한 가족정책의 목적이 되는 국가들도 있다.

[그림 V-1] 가족정책의 분석모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을 두 가지 축의 교차를 통해 살펴본다. 첫 번째 축은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을 기반으로 하며, 가족정책이 일반적인 가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소득보장 중심인지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등장한 이인소득자 가족을 양성하기 위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이 목적인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성격

이다. 여기서 돌봄서비스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가 중요하다. 반면에 인적자본 투자에 근거한 아동발달이 목적이라면 3-5세 아동에 대한 인지적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된다. 이는 다시 영아에 대해서는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와 연관되므로 전통적인 가족의 유지가 목적인 국가에서 선호되는 돌봄 서비스 방법이다.

나. 변수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과 전통적인 가족의 유지라는 가족정책의 목적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돌봄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페미니스트적 입장과 헤를트와 카우프만의 정책 동기를 혼합한 총체적인 분석틀에 근거하여 제도의 성과들을 살펴보았다.

가족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는 가족정책의 가족제도적 동기는 소득보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변수로는 주로 가족유형에 따른 평균 임금 대비 가족급여의 순소득 수준(Gauthier, 2002; Korpi, 2000), 가족유형별 세율(OECD, Taxing Wage 2007), 과세단위가 가족인지 개인인지 여부(정연택, 2007; 장지연 외, 2005)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단위가 가족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른 조세격차(tax wedge)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장려되는지를 살펴본다.

아래의 <표 V-6>는 평균 임금 수준을 가지는 2인 자녀를 둔 1인 생계부양자 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조세격차(tax wedge)를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총 조세격차와 가족에 대한 총 조세격차는 상당한 차이를 있다.

조세격차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많은 OECD 국가에서 유자녀 가구에 대해 진보적인 조세지출이나 현금 이전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OECD Taxing Wage, 2007).

벨기에, 체코,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에서 기혼 가구의 1인 소득자는 단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총 노동 비용의 15%를 조세나 현금 이전을 통해 더 받으며,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에서는 이 수치가 23%이상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세금 부담이 약간 악화되며,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다.

한편 평균 소득을 가진, 두 자녀가 있는 1인 소득자 가구의 조세격차의 증가(2006-2007년 사이)는 2.6%(헝가리)에서 -4.8%(체코)까지 다양하다. 다른 OECD 국가들은 조세격차가 1%p 전후로 상승하거나 감소하는데 반해 폴란드(-4.7%p), 아일랜드(-3.0%p), 스웨덴(-2.2%p), 호주(-2.1%p), 캐나다(-2.0%p), 룩셈부르크(1.3%p)는 변화의 폭이 크다. 두 자녀가 있는 1인 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세격차는 OECD 14개국에서 감소하였고, 14개국에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족에 대한 조세의 선호는 11개 국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호주, 캐나다,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가족정책의 목적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족 생활 양립의 원활한 수행이라고 할 때, 이러한 정책의 성과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통해 측정된다. 그러나 아직은 OECD 국가에서 모의 고용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자료가 매년 수집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의 고용율을 나타내는 자료는 다양한 국가적인 자원과 유럽 노동력조사의 자료를 활용한다.

〈표 V-6〉 총 가족조세격차의 비교(2007년 기준)

국가	총 조세격차	총 가족 조세격차 (1)	연간 조세격차의 변화 (%)		
			가족 (2)	싱글 (3)	차이 (4)=(3)-(2)
그리스	42.3	42.6	-0.5	0.4	0.9
프랑스	49.2	41.9	0.0	-1.0	-1.0
벨기에	55.5	40.5	0.2	0.0	-0.1
스웨덴	45.4	39.4	-2.2	-2.4	-0.2
오스트리아	48.5	37.9	0.6	0.3	-0.3
핀란드	43.7	37.8	-0.3	-0.5	-0.2
네덜란드	44.0	36.6	-0.3	-0.4	-0.1
독일	52.2	36.4	-1.0	-1.1	-0.1
이탈리아	45.9	33.8	0.4	0.3	-0.1
스페인	38.9	32.7	-0.9	-0.2	0.7
노르웨이	37.5	30.4	0.4	0.1	-0.3
덴마크	41.3	29.7	0.2	0.1	-0.1
영국	34.1	28.3	0.2	0.1	-0.1
포르투갈	37.4	27.5	-0.4	0.0	0.4
일본	29.3	23.8	0.1	0.5	0.4
캐나다	31.3	19.9	-2.0	-0.5	1.5
스위스	29.6	18.3	0.1	0.1	0.0
미국	30.0	18.1	0.4	0.1	-0.3
한국	19.6	17.3	0.5	1.4	0.8
호주	27.7	15.1	-2.1	-0.6	1.6
룩셈부르크	37.5	14.3	1.3	1.0	-0.3
뉴질랜드	21.5	2.8	-0.4	0.5	0.8
아일랜드	28.3	-1.1	-3.0	-0.7	2.3

주. 평균입금을 받는 자녀가 없는 싱글가구와 두 자녀가 있는 기혼 커플의 1인 소득자 가구임
Source: OECD, Taxing Wages 2006-2007(2007: 17-19)

이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과 16세 이하 부양 자녀의 수에 의해 나타난다.

〈표 V-7〉에서 보듯이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대부분의 국가에서 6세)의 연령에 자녀가 도달할 때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몇 국가(체코, 핀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매우 어린 자녀가 있는 모의 고용율이 현저히 낮다. 이는 육아휴가의 유용성의 확대와 연계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수에 따른 모의 고용율을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서 세 자녀 이상인 모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 자녀 혹은 두 자녀일 때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한편 각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육 시설, 크레췌(crèches), 영아전담 보육시설 등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반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혹은 다른 서비스 기관들은 교육부의 관할하에 있다. 때로 이들 서비스는 혼합적으로 제공되면서 교육부의 관할하에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4세까지 보육시설에, 4-5세는 유치원에, 6세는 의무교육연령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덴마크는 3세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3-6세 아동의 90%는 유치원을 이용하지만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때때로 지방교육청 산하기관이다. 한국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병렬적인 구조이며, 0-3세 아동의 31%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3-5세 아동은 보육시설 23%, 유치원 70%로 구분된다(OECD, 2006).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보육서비스와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면서 아동의 발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을 구분함에 있어 단순히 연령별 이용률만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2세 보육시설의 공급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산율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는 헤를트와 카우프만이 가족정책의 인구정책적 동기와의도 연관된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s: TFR)³³⁾은 재생

산 가능 연령(15-49세)의 여성이 낳은 평균 아동 수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이전 세대를 대체하여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1인당 2.1명의 아동(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

〈표 V-7〉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른 모의 고용율 비교

	자녀의 수(15세미만)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1명	2명	3명	2세 미만	3-5세
Australia	63.30	58.10	58.10	48.30	48.30
Austria	67.70	60.10	46.50	60.50	62.40
Belgium	58.30	58.50	39.40	63.80	63.30
Canada	70.10	73.20	66.30	58.70	68.10
Denmark	m	m	m	71.40	77.80
Finland	71.20	70.90	60.10	52.10	80.70
France	62.20	57.60	38.10	53.70	63.80
Germany	58.40	51.80	36.00	36.10	54.80
Greece	48.40	44.40	37.40	49.50	53.60
Ireland	55.40	52.50	42.30	55.00	55.00
Italy	48.30	41.00	27.40	47.30	50.60
Korea	m	m	m	m	m
Luxembourg	56.00	49.80	33.80	58.30	58.70
Netherlands	70.10	70.60	59.90	69.40	68.30
New Zealand	64.10	64.50	56.70	45.10	60.60
Norway	m	m	m	m	m
Portugal	63.50	59.20	46.10	69.10	71.80
Spain	51.10	44.70	38.50	52.60	54.20
Sweden	80.60	84.70	75.60	71.90	81.30
Switzerland	69.50	65.40	58.00	58.30	61.70
United Kingdom	67.10	62.40	42.30	52.60	58.30
United States	m	m	m	54.20	62.80

Source: OECD Family database(2008).

33) 더 정확하게 출산을 비교하려면 특별한 연령 코호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방법에서는 출생수의 출현은 모의 연령에 의해 프로파일된다(OECD, 2008).

〈표 V-8〉 합계 출산율과 연령별 시설 이용율

	Total Fertility Rates ¹⁾	이용률 ²⁾	
		0-2세	3-5세
Australia	1.81	24.60	84.00
Austria	1.41	8.90	80.00
Belgium	1.72	18.00	100.00
Canada	1.53	38.00	58.00
Denmark	1.80	45.00	58.00
Finland	1.80	35.80	73.00
France	1.94	18.00	100.00
Germany	1.34	8.60	90.00
Greece	1.28	m	m
Ireland	1.88	12.50	56.00
Italy	1.34	18.70	78.00
Korea	1.08	10.00	70.00
Luxembourg	1.70	m	m
Netherlands	1.73	23.00	89.00
New Zealand	2.00	m	m
Norway	1.84	48.00	88.00
Portugal	1.40	12.50	76.30
Spain	1.34	m	m
Sweden	1.77	45.00	91.00
Switzerland	1.42	m	m
United Kingdom	1.80	26.00	98.00
United States	2.05	50.00	63.30

Source: 1) OECD Babies and Bosses(2007:31)

2) OECD Starting Strong II(2005).

일반적으로 제도의 형성과 정책적 목표가 분명하더라도 실제 정책의 집행을 위한 지출은 그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

족정책이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에서 여성부와/혹은 노동부의 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 일-가족 양립 정책이 제도화되어 서로 다른 정책수단이 동시에 운영되거나 선거 혹은 투표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으로 가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제로는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동기와 내용적 분석으로는 정확하게 찾아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족급여지출을 살펴본다. 지출은 가족정책에 투입되는 변수이자 정부의 정책 의도가 드러나는 성과이기도 하다. 다만, 지출을 살펴볼 때 기존 연구들을 답습하여 GDP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과 가족급여의 지출수준만을 비교하기보다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추어 하위항목별 지출 수준을 살펴본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과의 차이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동기 및 목적과 그 실행(지출)을 구분하여 SPSS 12.0을 이용하여 계층적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다. 계층적 군집방법은 거리가 가까운 개체부터 차례대로 묶어 그룹을 형성하는 응집된 계층방법(AHM : Agglomerative Hierarchical Method)과 전체대상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은 후 개체들을 차례로 크기가 더 작은 여러 개의 군집들로 나누는 분할된 계층방법(DHM : Devisive Hierarchical Method)이 있다. 본 분석에 사용한 군집간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 Between Groups)은 AHM의 하나로 군집간의 거리를 각 군집이 속해있는 개체와의 평균거리로 계산한다.

다. 분석결과

군집분석은 국가들을 유형화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므로 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먼저 이론적 분석틀에 입각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V-9〉 변수들의 상관관계

	가족 tax wedge	싱글과 가족의 세금 격차	출산율	1자녀 기혼여 성의 고용율	2자녀 기혼여 성의 고용율	3자녀 기혼여 성의 고용율	2세이하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고용율	3-5세자 녀를 둔 기혼여성 의 고용율	0-2세 보육시설	3-5세 유아교육 기관
가족 tax wedge	1	-0.598** (.003)	-0.248 (0.266)	0.139 (0.538)	0.130 (0.565)	0.047 (0.836)	0.160 (0.476)	0.200 (0.372)	0.054 (0.815)	0.287 (0.207)
싱글과 가족의 세금 격차		1	-0.185 (0.409)	0.054 (0.813)	0.073 (0.746)	0.171 (0.447)	-0.076 (0.736)	-0.133 (0.555)	-0.207 (0.367)	-0.312 (0.168)
출산율			1	-0.005 (0.982)	0.045 (0.842)	0.054 (0.812)	0.236 (0.290)	0.293 (0.185)	0.636** (0.002)	0.346 (0.125)
1자녀 기혼여성 의 고용율				1	0.991** (0.000)	0.948** (0.000)	0.552** (0.008)	0.585** (0.004)	-0.334 (0.139)	0.045 (0.848)
2자녀 기혼여성 의 고용율					1	0.971** (0.000)	0.561** (0.007)	0.603** (0.003)	-0.246 (0.282)	0.079 (0.734)
3자녀 기혼여성 의 고용율						1	0.533** (0.011)	0.577** (0.005)	-0.168 (0.466)	0.019 (0.934)
2세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 의 고용율							1	0.934** (0.000)	-0.002 (0.992)	-0.086 (0.710)
3-5세 자녀를 둔 기혼여성 의 고용율								1	0.099 (0.669)	-0.020 (0.933)
0-2세 보육시설									1	0.513* (0.017)
3-5세 유아교육 기관										1

주. **p< 0.01, *p< 0.05

가족에 대한 조세 격차(tax wedge)와 가족과 1인가구의 조세 격차의 차이는 매우 유의한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가족의 조세격차의 차이는 개인의 조세격차에서 가족의 조세격차를 뺀 수치이므로 가족의 조세격차가 높은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한계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의 조세격차가 높은 국가에서는 개인을 과세 단위로 하기 때문에 1인 부양자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더 선호되

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여성의 기대임금이 높아져서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장지연 외, 2005), 1명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율은 모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정책이 타겟팅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유무에 따른 구분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산율과 0-2세 보육시설 이용률간의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의 인구정책적 동기를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 이용률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0-2세 보육시설 이용률과 3-5세 유아교육기관 이용률의 상관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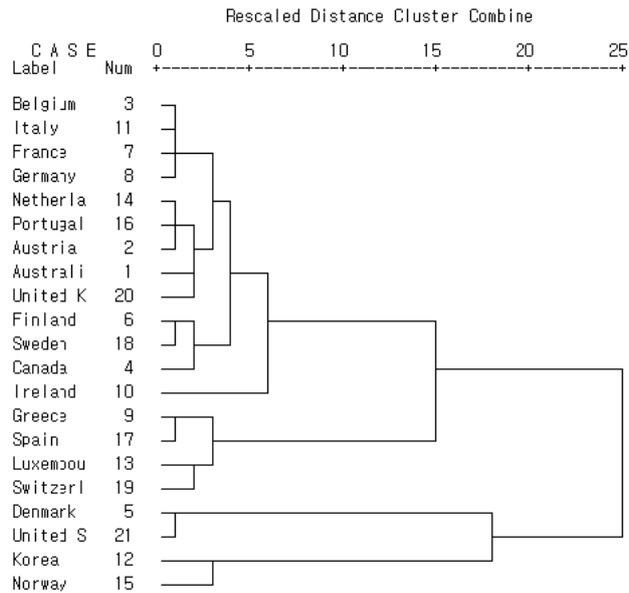
다음으로 OECD 23개국의 가족정책을 동기적 측면에서 군집계수 3.2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전통적으로 조합주의로 불리는 유럽대륙국가들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독일이 하나의 군집(coefficient=0.656)을 만들고, 다음으로 네덜란드·포르투갈·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영국이 다른 군집(coefficient=1.977)을 형성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북유럽 국가군은 매우 상이하게 구분된다. 먼저 핀란드·스웨덴·캐나다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coefficient=1.184), 덴마크와 미국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한다(coefficient=0.682). 한편 그리스·스페인·룩셈부르크·스위스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한국과 노르웨이는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V-2]의 덴드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2] 가족정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 H I E R A R C H I C A L C L U S T E R A N A L Y S I S *****

Dendrogram using Average Linkage (Between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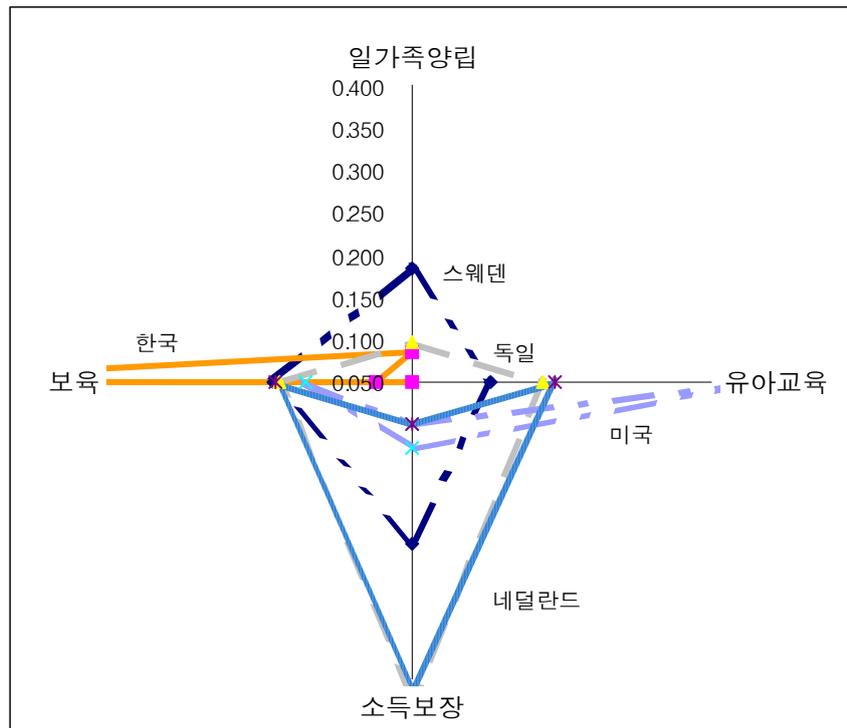
이들 국가에서 나타난 국가들의 유형화는 상이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묶었을 뿐 그 유형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석틀에서 제시한 방사형에서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V-3]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국가의 위치는 상당히 흥미롭다. 먼저 독일은 에스핑-안델센이 지적하듯이 전통적인 가족(남성생계부양자, 여성 가족내 돌봄 노동 수행자)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복지국가 유형을 대표하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즉 전통적인 가족의 유지와 유자녀 가족의 탈빈곤을 위하여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가족정책의 목표이다. 또한 0-2세 영아에게는 가족내 돌봄노동이, 3-5세 유

아들에게는 유아교육의 투자적 측면이 연령발달에 따라 연속적으로 제공된다.

군집분석의 덴드로그램 결과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네덜란드가 포함된 군집은 이후 독일을 포함하는 군집과 하나의 군집을 형성할 만큼 유사성이 높다. 이는 방사형 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네덜란드는 ‘작은 독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그 크기가 적다. 다만 특이한 점은 독일의 일-가족여성양립 수준이 높는데 반해 네덜란드는 일-가족양립은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을 나타낼 정도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 V-3] 각 유형별 대표국가들의 위치



한편 한국과 미국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미국은 여성경제 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양립을 위한 정책적 동기는 매우 낮다. 이는 대부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무급인 것과 가족에 대한 조세격차가 1인 가구의 조세격차보다 높고 가족에 대한 세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비공식부문과 시장에 의존하지만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주로 AFDC, TANF 등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적 측면이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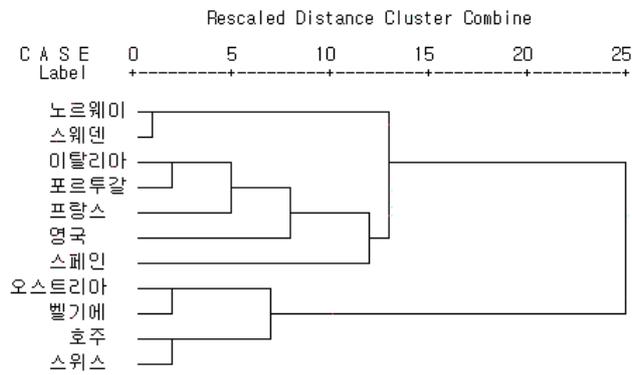
반면에 한국은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대부분이 보육에 대한 투자로 치중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유아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과 일-가족 양립에 대한 정책적 목적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제시 없이 보육이라는 정책적 수단에서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가족정책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수단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OECD 23개국의 지출을 통한 유형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2000년의 경우 소득보장, 육아휴직, 보육, 유아교육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11국가(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스위스)를 분석하였고, 2003년은 동일한 기준으로 12국가(뉴질랜드 첨가)를 분석할 수 있었다.

먼저 2000년을 기준으로 군집화를 실시하면 아래의 [그림 V-4]와 같다. 전통적인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스웨덴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였고, 대륙유럽국가는 두 개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그 하나는 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 군집이고, 다른 하나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군집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호주와 스위스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2000년 지출에서는 영국과 스페인이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먼저 영국은 유럽대륙국가의 두 군집과 각각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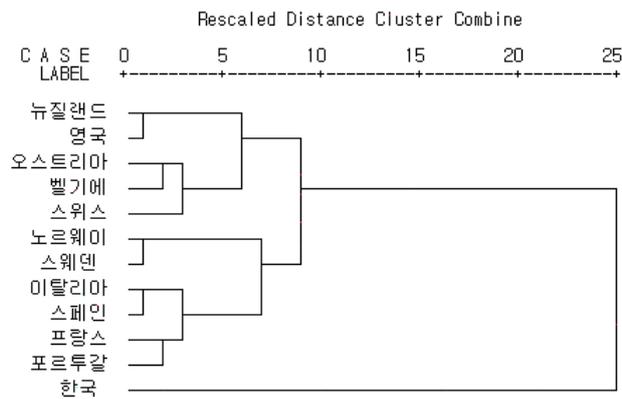
으로 보이고 스페인 역시 영국보다는 약하나 유럽대륙국가의 두 군집들과 약간의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2000년 군집화분석에 따른 덴드로그램



2003년 지출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³⁴⁾.

[그림 V-5] 2003년 군집화분석에 따른 덴드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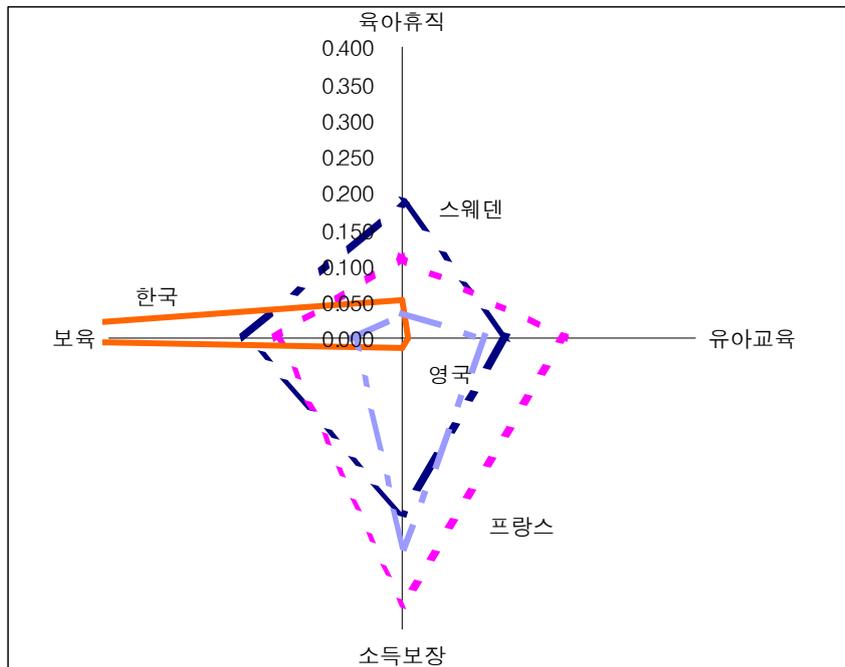


34) 스웨덴 군집은 동일하고, 프랑스 군집에는 포르투갈이 추가되고, 오스트리아 군집에도 스위스가 추가되었다.

다만 호주와 함께 자유주의 군집을 형성하던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군집에 포함되고, 뉴질랜드와 영국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여 자유주의적 속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한국은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는데, 자유주의적 속성(뉴질랜드·영국), 조합주의적 속성(오스트리아 군집), 시민주의적 속성(스웨덴 군집) 모두와 낮지만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 대표국가의 위치를 방사선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책의 동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미국, 한국을 살펴보았으나 독일과 미국의 지출 자료의 누락 및 한계로 독일 군집에서는 프랑스를, 네덜란드 군집에서는 영국으로 대체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2003년 지출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결과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그림 V-6] 항목별 지출을 통해 본 유형별 위치



[그림 V-6] 에서 보듯이 스웨덴과 프랑스, 영국은 유사한 패턴을 가지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먼저 스웨덴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이라는 목적에 여타의 국가보다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가족정책과 일-가족 양립 정책 모두의 실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두 정책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며 병행하는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프랑스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출 역시 높은 편이지만, 유자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이 가장 강력한 국가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유자녀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과 함께 일-가족 양립 정책도 상당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패턴을 가지기는 하지만 영국은 사실상 일-가족양립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자녀 가족의 소득 보장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둔다. 이는 최근 영국에서 '아동빈곤 0%'를 목표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항목별 지출에서조차 보육에 대한 과열 지출이 나타난다. 즉 돌봄 서비스의 성격은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 이상 출산율의 부수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성과로 본다면 지출에 비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⁵⁾.

35) 2005년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54.5%)은 덴마크(75.1%), 미국(69.2%), 영국(69.7%), 독일(66.9%), 프랑스(63.8%)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주재선, 2006).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과 돌봄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가족정책의 목표와 실제 지출을 통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은 전통적인 가족정책과 최근 변화된 가족정책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전통적인 가족정책은 가정내에서 돌봄 노동을 하는 여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최근 변화된 가족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의 급증과 관련이 깊다. 1인 소득자 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한부모 여성 가구주의 증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급증하자 일과 가족생활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가족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이 높다.

다른 한 축인 돌봄 서비스의 성격은 최근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다소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출산율의 높은 상관관계와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에 기반하였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하는 대신 육아휴직기간동안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고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가 발달되어있다. 반면에 인적자본투자이론에 근거하면 아동기는 그 자체로 투자우선순위로서의 목표를 가진다. 이는 특히 0-2세 영아에 인지적 예방적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또한 전통적인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에서 0-2세 어린 영아에 대해서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지만 취학전 연령인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인지적 사회적 교육활동을 선호한다는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분석틀을 토대로 OECD 23개국의 정책 동기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군집분석과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

기적 측면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는 카머만과 칸(1978)이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가졌다고 지적한 국가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또한 윤홍식(2006b)의 부모권과 노동권의 통합분석 결과의 북유럽 국가군집과 독일군집이 일치하였으나, 한국을 포함하는 군집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윤홍식은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시장주의 국가들과 한국이 같은 군집으로 형성하였으나 본 연구의 정책 동기적 측면에서 한국은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적 비중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에 운영비와 중산층 이하 아동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의 형태로 상당한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주의적 특성에서 다소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00년과 2003년 지출을 기준으로 한 군집분석의 결과는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전통적인 가족의 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로 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었고,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중시하는 스웨덴·노르웨이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었다. 또한 오스트리아·벨기에·스위스 역시 안정적으로 동일한 군집을 이루었으나 전통적인 가족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조되고 보육보다 유아교육에의 헌신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주의적 특성을 가지는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은 각각 군집을 이루었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그 의미가 다소 제한적이다³⁶⁾.

이러한 결과는 에스핑-안텔센의 초기저작(1990)의 유형화와 다소 일치되는 결과를 보인다. 즉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들인 독일(프랑스), 스웨덴, 미국(영국)은 에스핑-안텔센의 유형화에서 각각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러나 그의 초기 저작 이후 많은

36) 2000년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호주와 스위스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지만 영국과의 상이성도 낮아 낮은 수준에서 군집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3년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뉴질랜드와 영국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들이 남유럽 국가군과 동아시아 국가군의 유형화를 시도했으나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남유럽 국가들과 일부 대륙국가, 한국은 뚜렷한 군집화에 포함되기 보다는 분석의 기준에 따라 이동하는가 하면(그리스, 스페인 등)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였다(한국).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석틀에서의 위치를 살펴본 방사형 그래프에서는 각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책의 동기적 측면과 지출 모두에서 각 유형별 대표국가가 자료의 누락이나 한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패턴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은 양 분석 모두에서 일가족양립에의 헌신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이며, 독일(프랑스)은 정확하게 반대의 그림을 보여주며 소득보장의 헌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덜란드는 몇 개의 유럽대륙 국가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독일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나 일 가족양립에의 헌신이 마이너스 인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영국)은 일가족 양립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출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나 아동에 대한 투자적 개념이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한국은 일가족 양립과 소득보장 모두의 헌신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보육에 대한 헌신도가 매우 높아 한국의 가족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은 최저 수준(1.08)에서 증가는 했으나 이것이 가족정책의 영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전후 부녀자를 위한 대책으로 시작되었던 1955년의 목표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실제로 전통적인 소득보장의 기능도 달성하지 못하고, 최근 변화된 가족정책의 목표인 일-가족 양립의 기능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IMF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가족양립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가족정책과 별개로 여성의 고용정책(여성부-노동부 중심)이 이루어져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가 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오히려 반대방향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만 2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12.2%)이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73.8%)보다 현저히 낮은 데서도 살펴볼 수 있다(장지연 외, 2005).

오히려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양분화되면서 보육서비스는 유아교육서비스와 거의 일치하면서 주관부서와 전달체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대표적인 논의로 나정 외, 2006와 정미라 외, 2007 참조)되고 있으나 사적 부문에 의한 성장으로 이미 이해단체가 형성되어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이 한국의 가족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3가지이다. 먼저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이 처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여 특히 유자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나 현재 한국의 유자녀 가구의 소득보장의 수준은 매우 낮아 자녀의 존재 여부로 인한 빈곤의 위험과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에 대한 투자의 차이가 생애초기부터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가족정책이 일가족양립의 장려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기존의 보육지출의 상당한 투입에 대한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보육서비스가 유아교육과 병렬적인 구조를 가지며 소모적인 경쟁을 했던 것을 지양하고 보육서비스 고유의 영역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이는 또한 기존의 지출의 투입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0-2세 영아에 대한 적극적인 보육서비스 공급 증가나 부모들이 선호하

지 않는 가정보육시설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시설을 적극 양성하여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족정책이 일-가족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양적 투자에서 불구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투자 없이는 일-가족 양립은 요원한 것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투자는 휴직기간과 임금 대체율, 적용률뿐만 아니라 여성휴가 및 자녀 등 가족의 간병을 위한 휴가 등 다양한 형태의 휴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으로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에 대한 투자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VI. 요약 및 연구의 한계

1. 요약

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의 공공지출과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를 포괄범위로 한다. 2006년도 사회복지지출은 경상GDP 대비 10.01%로 OECD통계를 생산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총지출을 합산한 총사회복지지출은 2006년에 요소GDP 대비 13.67%로 추계되었다.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 대비 13.56%를 차지하였다.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의 약 99%수준으로 두 통계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OECD평균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지출은 2006년말 현재 84조 93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 GDP) 대비 10.01%였다.

둘째, 사회복지지출의 주요 급여부문을 백분율로 보면 '보건'(4)이 전체의 35.3%로 가장 높으며, '실업(퇴직금 포함)'(7)이 22.0%, '노령'(1) 16.7%의 순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은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6)으로 1.3%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된 급여는 보건, 실업, 노령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01%(06)로 OECD 회원국 중 복지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16.59%, 2003

년 이하 같음), 일본(18.39%)에 비하여 약 50%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GDP 대비 30% 수준의 스웨덴(31.85%), 프랑스(29.08%), 독일(28.40%) 등에 비해서는 약 30% 수준이다.

넷째, 총사회복지지출은 2006년 말 현재 102조 3300억원으로 요소 GDP의 13.75%였다. 총사회복지지출의 주요 급여부문을 백분율로 보면 총공공지출(1)은 6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법정민간지출(7)이 18.1%를, 총자발적 민간지출(10)이 1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순사회복지지출은 101조 5060억원으로 요소 GDP의 13.64%이다. 이와 같이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13.75%)보다 0.1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우리의 조세부담과 조세혜택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총량적으로 볼 때 정부가 총사회복지지출에 대하여 조세로 부과하는 부분이 조세혜택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총사회복지지출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13.75%('06)로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미국의 28.2%(2003년, 이하 동일), 일본의 22.6%에 비해 낮았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독일은 약 34%를 넘어 우리의 약 3배 이상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의 약 30~54%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복지지출(29~54%, 요소 GDP 기준)과 OECD 회원국간 격차가 비슷하였다.

일곱째, 순사회복지지출은 우리가 13.64%('06)로 일본 22.2%(2003년, 이하 동일), 미국 27.0%, 영국 28.2%, 덴마크 25.2%, 그리고 스웨덴 30.9%에 비해 약 39~54%의 수준으로 그 격차는 위의 세 통계 중 가장 좁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세의 부담과 경감의 차이 때문이다.

여덟째, 공공부문의 가족급여(OECD SOCX No. 5)와 각국의 가족정책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OECD 23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

였다. 가족급여 지출을 변수로 한 유형화와 가족정책의 성과를 변수로 한 유형화는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에스핑-안델센의 유형화와도 거의 일치한다. 즉, 독일(영국)은 전통적인 가족의 소득보장에 대한 지출이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중요한 정책대상이 아니며, 어린 영아에 대해서는 가족내 돌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매우 발달해있다.

반면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소득보장에 대한 헌신과 함께 일가족양립에 대한 지원 및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어린 영아에서 유아까지 돌봄 서비스가 잘 발달해있어 가장 균형 있는 가족정책을 나타냈다. 한편 미국(영국)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있으나 일가족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출은 전혀 없으며 영아에 대해서는 시장 서비스의 구매에 의존하는 반면 유아를 위한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헌신은 높게 나타난다.

아홉째, 우리나라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출과 보육이용률(0~5세) 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보육투자가 증가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연관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은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내통계를 생산하여 보았으며 OECD 회원국가와 비교한 결과 지출 수준은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비하여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발적 민간부문의 역할과 정부의 조세혜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에는 일부 기초자료 수집의 어려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와 조세혜택 누락 등 한계가 있다.

향후 과제는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대상자의 확대,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와 더불어 성숙 단계에 대비한 보험재정의 안정화 노력, 복지부문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 유인정책과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확대, 그리고 미약한 민간부문의 역할(질병휴가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사회보험의 제도권으로 도입·흡수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을 들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공급주체간 지원금의 이중계산부분이다. 본 연구는 기업재단과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지출액 또는 배분액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재단의 지출금액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일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계산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각 기업재단에 배분된 금액을 알 수 없어 이 부분만큼 과다계상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의 배분처와 배분액 또는 각 기업재단의 수입자료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복지지출 중 누락 또는 제외된 재원이 있다. 사회복지공급주체인 사회복지시설, 민간비영리법인·단체의 지출액 추계는 각 시설이나 법인·단체별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시설의 수입원을 지원하는 각 주체별 배분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이들의 수입원은 크게 보아 정부와 기업재단의 지원금,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의 배분액,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 그리고 자체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이나 단체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정부, 기업재단,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지출 또는 배분액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들 시설의 수입원 중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금 등은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간접세율은 국민 모두에 대한 간접세율이 아니라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이다. 따라서 미시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이전소득자에 대한 간접세율의 추계가 가능하지만 기초자료의 활용상 한계가 있다. 현재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이전급여수령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액을 추계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사례수가 너무 작아(전체조사가구의 10%, 550가구, 2005) 세부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지침에 따라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세율을 추계하고 있다. 다만, 가계 부문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 항목을 일부 포함하는 한계점이 있다(아래의 Minim 적용).

넷째, 기초자료 부족으로 세부 분류할 수 없어 일괄분류한 법정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있다. 한국의 법정퇴직금은 수령 원인별(정년퇴직, 자발적 이직, 해고)로 분류·생산되어야 하지만 기초자료 부재로 ‘실업’에 일괄분류하고 있다. ‘실업급여’에는 ‘실업’과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로 각각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업급여수령자의 실업유형을 분류할 기초 자료가 없어 ‘실업’에 일괄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기업의 정리해고에 의한 실적이든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실적이든 원인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있다.

다섯째, 연금수급자 중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건강보험료와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하였다. 끝으로 자료공개의 비협조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보상액을 포함할 수 없었다.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각 연도.
- 건설교통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 건설교통부, 2004.
- 고경환·장영식·이내연,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_____,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감면제도의 경제적 귀착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32집),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 _____.장영식·박승희·이혜숙·조철환,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원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a.
- _____.장영식·이정우,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2002)와 독일의 사회복지계정 고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b.
- _____.장영식·이태진·박신영,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와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 관세청, 내부자료, 각 연도.
-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각 연도.
- 국가보훈처, 『보훈통계연감』, 각 연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 국방부 보험급여과, 내부자료, 각 연도.
- 국세청, 법인과 내부자료, 각 연도.
-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각 연도.
- 김교성·김종건, 『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 김수정,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통권 38호, 2004, pp. 209-333.
- 김유찬,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김인숙·정재훈·윤홍식, 『가족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2004.
- 김지경, 「우리나라 자녀 양육의 실태와 여성 취업」, 장지연 외,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김진, 「농가경제조사에 대한 대체법 비교」, 『통계연구』, 통계청, 2004.
- 김진욱, 「한국 복지혼합의 구조: 2000년도 지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의 좌표: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 김태성·성경룡,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1993.
- 김혜경,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을 위한 연구」, 『여성연구』, 통권 65호, 2003, pp. 31-56.
- 나성린·현진권,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Tax-benefi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3.
- 나정 외, 『2004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노동부 고용정책과, 내부자료, 각 연도.
- _____,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각 연도.
- _____,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 _____,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 농림부, 『농가경제통계』, 각 연도.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사회봉사총람』, 1994.
- 대한적십자사, 내부자료, 각 연도.
- 대한항공, 내부자료, 각 연도.
- 레스트 설러먼, 이형진(譯), 『NPO란 무엇인가?』, 2000.
-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00.
- 변화순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 별정우체국연합회, 내부자료, 각 연도.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 2002.
- _____, 『의료보호통계』, 각 연도.
-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내부자료, 각 연도.
- _____ 장애인제도과, 내부자료, 각 연도.
- _____ 질병관리과, 내부자료, 각 연도.
- _____, 『보건복지백서』, 1999.
- _____,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사회복지사업기금결산』, 각 연도.
- _____, 『세입세출예산』, 각 연도.
- _____,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예산』, 각 연도.
- _____, 『보건복지재정 투자방향 및 투자전략』, 2008.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을 위한 욕구조사』, 2005.
- _____, 내부자료, 각 연도.

- _____, 『사랑의 열매』, 각 연도.
- 신동면,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45권, 2001.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87.
- 심창학, 「프랑스의 한부모 및 가족 복지 정책의 특징: 명시적, 포괄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 12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3, pp. 125-154.
- 신행선, 「프랑스 비시(Vichy) 정부 시기 가족정책과 여성」, 『서양사론』, 제 92호, 한국서양사학회, 2007, pp. 153-176.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부문화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2004.
- 아시아나항공, 내부자료, 각 연도.
- 오정수, 「우리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봄호, 1998, pp. 40~52.
- 월드비전, 내부자료, 2000.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내부자료, 각 연도.
- 윤홍식, 「가족 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한국사회복지학』, 제 57,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pp. 291-317.
- _____, 「부모 여성 휴가를 통해 본 남성 돌봄 노동 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58권 제 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a, pp. 223-249.
- _____,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58권 제 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b, pp. 341-370.
- _____,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59권 제 2호,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pp. 327-354.
- 이계식·배준호, 「우리나라의 간접세 부담분포 분석」, 곽태원·이계식(편), 『조세정책과 조세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6.
- 이근희, 『한국의 기업복지 실태 및 정립방안』, 한국생산성본부, 1996.
- 이여봉·이미정, 「한국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 15집, 1호, 2003.
- 이선주·박선영·김은정,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 23권 제 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7년, pp. 167-192.
- 이진숙·안은숙, 「가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속에 나타난 쟁점들과 대응」, 『사회복지연구』, 제 30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pp. 5-38.
- _____. 김태원, 「EU 국가들의 가족정책의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 17권 제 1호, 2007, pp. 101-130.
- 이필우, 『조세론』, 법문사, 1995.
- 이형순, 『거시경제학』, 법문사, 1989.
- 인경석·이상석,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재원조달 및 활용방안연구-공동모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자유아카데미, 『무응답 오차』, 2000.
- 장수정,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에 대한 쟁점들-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생산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제 30권, 2007, pp. 219-238.
- 장영식·계훈방·고경환, 『OECD 요구 보건통계 생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장지연·이정우·최은영·김지경, 『일·가족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정미라 외, 『유아교육발전방안』, 경기도교육청·경원대학교, 2007.
- 주재선, 「2006 여성고용동향」, 『젠더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1998.
- 재정경제원, 『예산개요』, 각 연도.
- 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0.
- _____, 『2001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2.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내부자료, 각 연도.
- _____, 『1999년 모금과 구호』, 1999.
- 전상경, 「한국 기업의 기부금 규모분석 : 상장법인과 외감법인의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제5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기빙코리아 2005』,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05.
- 정경배, 「IMF 시대의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한국사회복지』, 겨울호, 1998, pp. 7~25.
- 정기원 외, 2000, 『민간복지자원 총량과약체계 구축방안』,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정기원, 『민간복지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정보통신부, 내부자료, 2000.
- 정선욱, 『사회복지자원의 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2.
- 정연택, 「가족정책의 국제비교-동아시아와 남유럽 복지 체제 비교의 시점에서-」, 『사회복지연구』, 제 34권 제 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pp. 79-106.
- 정형선,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구축』,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007.
- 조상원 외, 『법전』, 현암사, 각 연도.
- 조상원 외, 『세법』, 현암사, 각 연도.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2.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각 연도.

직장의료보험조합(145개), 내부자료, 각 연도.

채구묵,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7호, 2005, pp. 337-361.

철도청, 영업본부 영업계획과 내부자료, 각 연도.

최경석·김양희·김성천·김진희·박정운·윤정향,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2001.

최연실, 「한국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평가」, 『사회과학연구』,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최은영, 「OECD 주요국의 보육정책 동향과 함의」, 장지연 외,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2005, pp. 47-84.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기초자료, 각 연도.

_____, 『농가경제조사 지침서』, 각 연도.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_____, 『한국통계연감』, 각 연도.

한국가족학회(편),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서울, 하우, 1995.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7.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내부자료, 각 연도.

한국라이온스, 내부자료, 각 연도.

한국방송공사, 재원관리국 내부자료, 각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적십자회비 모금제도 개선방안』, 1995.

한국복지재단, 『연보』, 각 연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내부자료, 각 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총무부 내부자료, 각 연도.

- _____, 『사회복지사전』, 1993.
- 한국심장재단, 총무과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총무과 내부자료, 각 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행동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발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발표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05.
- 행정자치부·중앙재해대책본부, 『재해연보』, 각 연도.
-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각 연도.
- _____,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 홍석표, 『국제기준에 의한 한국의 사회보장비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Adema, W., "Net Social Expenditure,"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9, Paris, OECD, 1999.
- _____, "Net Social Expenditure 2nd edi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52, Paris, OECD, 2001.
- _____, *2003 Edition of SOCX Database - A New Structure*, Paris, OECD, 2002.
- _____ & Ladaique, M., "Net Social Expenditure: More Comprehensive Measures of Social Support,"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Paris, OECD, 2005.
- Cunha, Flavio, et al.,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ing Skill Formation*,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Germany, 2005.
- Esping-Andersen, G.,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_____, et al.,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Feldman, L., *Evaluating the impact of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in New Jersey*, Trenton, New Jersey Division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Bureau of Research, Evaluation, and Qualitative Assurance, 1990.

Flora, P., & Heidenheimer, A. J., "The Historical Core and Changing Boundaries of the Welfare State,"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81.

Gauthier, A. H., *The State and the Family*. Oxford, Clarendon, 1996.

_____, "The sources and methods of comparative family policy research," *Comparative Social Research*, Vol. 18, 1999, pp. 31-56.

_____, "Public Policies affecting fertility and families in Europe: A Survey of the 15 Member States," Paper prepared for *the European Observatory on Family Matters; Annual Seminar*, Sevilla, 2000, pp. 15-16.

_____,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s there Convergence?," *Population*, Vol. 57, No. 3, 2002, pp. 447-474.

Gidron, B., Kramer, R. M., & Salamon, L. M.,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2.

Gilbert, N., & Terrell, P.,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Pearson Education, 2004.

_____, Specht, H., & Terrell, P.,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1998.

Heckman, J. J. & L. Lochner, "Rethinking myth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skill formation in a modern economy," Dansiger, Sheldon, & Waldfogel, Jane, eds., *Security the future: investing in children from birth to college*, New York, Russell Sage, 2000.

Herlth, Alois & Kaufmann, Franz-Xaver, "Zur Einfuehrung-Familiale Probleme und sozialpolitische Intervention," Franz-Xaver Kaufmann (eds.), *Staatliche Soziapolitik und Familie*, R. Oldenburg Verlag, Muenchen, 1982, pp. 1-22.

Hernes, H., *Welfare State and Women Power*, Oslo, 1987.

Hiilamo, H., & Kangas, O.,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Child home allowance in Finnish and Swedish political rhetoric," ESPAnet conference, *Changing European Societies-The role for social policy*, Danish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Copenhagen, 13-15 November 2003.

ILO, *World Labour Report 2000: Income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in a Changing World*. 2000.

Johnson, N., *The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Pluralis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7.

Kammerman, S. B., & Kahn, A. J., eds.,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_____, *Family Change and Family Policy in Great Britain, Canad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London, Clarendon Press. 1997.

- Kaufmann, et al.,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Klaus, Peter Strohmeier, "Pluralisierung und Polarisierung der Lebensformen i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3, 1993, pp. 11-22.
- Korpi, Walter,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39-148.
- Lewis, Jane,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No. 3, 1992, pp. 73-91.
- Meyers, M. K., Gornick, J. C., & Katherin, E. Ross, "Public Childcar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Sainsbury, Diane,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Cross-national Variation in Service Organization and Financing*, Institute for Child and Family Policy, 2000.
- Michon, P. 2006. "Familisation and defamilisation policy in 22 European countries,"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Political regulation and social inequality*. 21-23 September, Bremen, 2006.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orean Taxation*, 2000.
- Murdock, G. P., *Social Structure*, New York, Macmillan, 1949.
- Neil Gilbert & Harry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 _____, &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5th ed., Boston, Allyn and Bacon, 2002.

- OECD, *Net Public Social Expenditure*, 1996.
- _____,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Provisional Version, 1996.
- _____, *The Growing Role of Private Social Benefits*, 1998.
-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1998*, 1999.
- _____,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1999.
- _____, *A System of Health Accounts*, Version 1.0, 2000.
-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000.
- _____,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3rd ed., 2001.
- _____, *Net Social Expenditure*, 2nd ed., 2001a.
- _____,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 2001b.
- _____, *Taxing Wages 1999-2000*, 2001.
- _____, *2003 Edition of SOCX Database - A New Structure*, 2002.
-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2001*, 2002.
- _____, *Taxing Wages 2000-2001*, 2002.
- _____, *Taxing Wages 2001-2002*, 2003.
- _____,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1980-2001*, 2004.
- _____, *Society at a Glance*, Paris, 2005.
- _____,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I-IV*, 2005.
- _____, *Starting Strong II*, 2005.
- _____,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2007.
- _____, *Taxing Wages 2006-2007*, 2007.
- _____,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 Interpretive Guide SOCX 1980-2003*, 2007.
- Orloff, Ann Shola, "Gender and the Social Right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tate Policies and Gender Rel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No. 3, 1993, pp. 303-328.

_____, "Farewell to Maternalism: Welfare Reform, Ending Entitlement for Poor Single Mothers and Expanding the Claims for Poor Employed Parents,"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Boston, Harvard Seminar, February 26, 2001.

_____, "Gender and the Social Right of Citizenship," in Goodin, Robert E. & Mitchell, Deborah, eds., *Th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Vol. 1, 2000, p. 66.

Parsons, Talcott, *The Social Structure of the Famil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9.

Rein, M. & Rainwater, L., *Public/Private Interplay in Social Protection*, 1986.

Zimmerman, S. L., *Understanding Family Policy: Theoretical Approaches*, Newbury Park, Sage, 1988.

Sainsbury, Diane, "Gender, Policy Regimes, and Politics," in Sainsbury, D.,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 Oxford, Oxford U.P., 1999.

Schultz, D., *Growth psychology: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7.

Kammerman, Sheila & Kahn, Alfred, eds.,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14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Siaroff, A., Work, "Welfare and Gender Equality: A New Typology," Sainsbury, D., ed, *Gendering Welfare States*, London, Sage, 1994, pp. 82-100.

Spahn, P. B. & Pearson, M., *Tax Modelling for Economies in Transition*,

Macmillan, 1997.

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http://www.kma.org/>(대한의사협회홈페이지)

<http://www.samsung.co.kr/>(삼성그룹)

부록

〈부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항목의 분류

부 문	관 심 영 역	세 부 관 심 영 역
1. 노령	1.1. 현금급여 1.2. 현물급여	1.1.1 연금 1.1.2 조기퇴직연금 1.1.3 기타현금급여 1.2.1 시설보호/가정봉사서비스 1.2.2 기타현물급여
2. 유족	2.1 현금급여 2.2 현물급여	2.1.1 연금 2.2.2 기타현금급여 2.2.1 장례비 2.2.2 기타현물급여
3. 근로무능력관련급여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질병)	3.1 현금급여 3.2 현물급여	3.1.1 연금(장애) 3.1.2 연금(산업재해 및 직업병) 3.1.3 유급질병휴가(산업재해 및 직업병) 3.1.4 유급질병휴가(기타 질병일일수당) 3.1.5 기타현금급여 3.2.1 시설보호/가정봉사서비스 3.2.2 재활서비스 3.2.3 기타현물급여
4. 보건	4.1 현금급여 4.2 현물급여	4.2.1 보건부문경상지출(개인지출) - 입원진료비 - 주간보호비 - 외래진료비 - 재가진료비 - 보조서비스비용 - 의료용품비 4.2.2 보건부문경상지출(집단적 지출) - 보건행정 및 보험 - 예방 및 공중보건

〈부표 1〉 계 속

부 문	관 심 영 역	세 부 관 심 영 역
5. 가족	5.1 현금급여	5.1.1 가족수당 5.1.2 육아휴직 5.1.3 기타현금급여
	5.2 현물급여	5.2.1 아동주간보호/가정봉사서비스 5.2.2 기타현물급여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6.1 현금급여	6.1.1 고용서비스 6.1.2 노동시장훈련 6.1.3 청소년관련사업 6.1.4 고용보조프로그램 6.1.5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6.2 현물급여	
7. 실업	7.1 현금급여	7.1.1 실업보상/퇴직수당
	7.2 현물급여	7.1.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8. 주거	8.1 현금급여	8.1.1 주거수당 8.1.2 기타현금급여
	8.2 현물급여	8.2.1 주거지원 8.2.2 기타현물급여
9. 기타 사회정책 영역	9.1 현금급여	9.1.1 소득지원 9.1.2 기타현금급여
	9.2 현물급여	9.2.1 사회부조 9.2.2 기타현물급여

〈부표 2〉 교통·통신요금의 감면대상자와 감면기준

제 도	노 인	장 애 인	보 훈 대 상 자	
통신 요금	시내·외 전화요금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통화료(50%) · 시외통화료(월 3만원 사용 한도에서 50%) · 114안내요금(100%) · 전화회선으로 PC통신이용 시 동일할인을적용	· 시내·외통화료 50%
	이동통신 요금	-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이동전화(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및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기본요금의 20%)	· 이동전화(기본요금의 30%)
	TV 수신료	-	면 제	면 제
교통 요금	철도요금	· 무궁화호(30%) · 통일호(50%), · 전철(무료)	·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50%) · 전철(무료)	1년 6매 무료제공 (무궁화호 이하 이용)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무 료	무 료	무 료
	국내선 항공료	10%	등록장애인, 동행보호자 1인 50%(1~3급)	일반유공자 30% 상이군경, 동행보호자 1인 50%(1~4급)
	고속도로 통행료	-	50%	1~5급: 면제, 6급: 50% 승합,화물차: 50%
공공 시설	국·공립 박물관, 공원	무 료 (단,국·공립국악 원은 50% 이상)	무 료 (단, 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은 50%)	공원(무료)
	고 궁	무 료	무 료	무 료

주: '-'표는 제도 없음

〈부표 3〉 사회복지지출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 (C+D)	7,573	8,912	10,908	12,624	15,336	26,481	30,849	38,770	55,908
사회복지지출 (C=A+B)	7,371	8,682	10,649	12,293	14,915	18,514	21,557	28,547	47,085
공공부문(A)	5,431	6,395	7,854	9,101	10,711	13,301	15,747	18,666	25,329
법정민간 부문(B)	1,940	2,287	2,796	3,192	4,205	5,212	5,810	9,881	21,756
자발적민간 부문(D)	202	231	259	331	420	7,967	9,292	10,223	8,823
GDP(조원)	186.7	226.0	257.5	290.7	340.2	398.8	448.6	491.1	484.1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A)					16.93				

〈부표 4〉 사회복지지출(구성비)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 (C+D)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회복지지출 (C=A+B)	97.3	97.4	97.6	97.4	97.3	69.9	69.9	73.6	84.2
공공부문(A)	71.7	71.8	72.0	72.1	69.8	50.2	51.0	48.1	45.3
법정민간 부문(B)	25.6	25.7	25.6	25.3	27.4	19.7	18.8	25.5	38.9
자발적민간 부문(D)	2.7	2.6	2.4	2.6	2.7	30.1	30.1	26.4	15.8

〈부표 3〉 계속

(단위: 십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분
58,543	59,109	60,949	63,752	73,070	80,693	88,253	102,330	총사회복지지출 (C+D)
47,160	47,015	48,058	49,386	56,460	67,390	73,275	84,930	사회복지지출 (C=A+B)
33,352	28,653	33,837	36,365	40,668	49,392	55,634	66,401	공공부문(A)
13,808	18,362	14,221	13,021	15,791	17,999	17,641	18,529	법정민간 부문(B)
11,383	12,094	12,890	14,366	16,611	13,303	14,978	17,400	자발적민간 부문(D)
529.5	578.7	622.1	684.3	727.7	779.4	810.5	848.0	GDP(조원)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A)

〈부표 4〉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사회복지지출 (C+D)
80.6	79.5	78.8	77.5	77.3	83.5	83.0	83.0	사회복지지출 (C=A+B)
57.0	48.5	55.5	57.0	55.7	61.2	63.0	64.9	공공부문(A)
23.6	31.1	23.3	20.4	21.6	22.3	20.0	18.1	법정민간 부문(B)
19.4	20.5	21.1	22.5	22.7	16.5	17.0	17.0	자발적민간 부문(D)

〈부표 5〉 사회복지지출(증감률)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 (C+D)		17.7	22.4	15.7	21.5	72.7	16.5	25.7	44.2
사회복지지출 (C=A+B)		17.8	22.7	15.4	21.3	24.1	16.4	32.4	64.9
공공부문(A)		17.8	22.8	15.9	17.7	24.2	18.4	18.5	35.7
법정민간 부문(B)		17.9	22.3	14.2	31.7	23.9	11.5	70.1	120.2
자발적민간 부문(D)		14.3	12.2	28.0	26.9	1,796.6	16.6	10.0	-13.7

〈부표 6〉 사회복지지출(GDP대비)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 (C+D)	4.06	3.94	4.24	4.34	4.51	6.64	6.88	7.89	11.55
사회복지지출 (C=A+B)	3.95	3.84	4.14	4.23	4.38	4.64	4.81	5.81	9.73
공공부문(A)	2.91	2.83	3.05	3.13	3.15	3.33	3.51	3.80	5.23
법정민간 부문(B)	1.04	1.01	1.09	1.10	1.24	1.31	1.30	2.01	4.49
자발적민간 부문(D)	0.11	0.10	0.10	0.11	0.12	2.00	2.07	2.08	1.82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A)					6.38				

〈부표 5〉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분
4.7	1.0	3.1	4.6	14.6	10.4	9.4	16.0	총사회복지지출 (C+D)
0.2	-0.3	2.2	2.8	14.3	19.4	8.7	15.9	사회복지지출 (C=A+B)
31.7	-14.1	18.1	7.5	11.8	21.5	12.6	19.4	공공부문(A)
-36.5	33.0	-22.5	-8.4	21.3	14.0	- 2.0	5.0	법정민간 부문(B)
29.0	6.2	6.6	11.4	15.6	-19.9	12.6	16.2	자발적민간 부문(D)

〈부표 6〉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분
11.06	10.21	9.80	9.32	10.08	10.35	10.89	12.07	총사회복지지출 (C+D)
8.91	8.12	7.72	7.22	7.79	8.65	9.04	10.01	사회복지지출 (C=A+B)
6.30	4.95	5.44	5.31	5.61	6.34	6.86	7.83	공공부문(A)
2.61	3.17	2.29	1.90	2.18	2.31	2.18	2.18	법정민간 부문(B)
2.15	2.09	2.07	2.10	2.29	1.71	1.85	2.05	자발적민간 부문(D)
								연평균증가율 (공공부문, A)

〈부표 7〉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사회복지지출	7,371	8,682	10,649	12,293	14,915	18,514	21,557	28,547	47,085
1.노령	1,166	1,471	2,028	2,661	3,317	4,373	4,651	5,459	8,932
2.유족	298	409	452	494	569	637	720	819	874
3.근로무능력	705	944	1,178	1,182	1,495	1,744	2,049	2,443	2,504
4.보건	2,959	3,269	3,844	4,313	4,889	5,947	7,565	8,771	9,679
5.가족	60	89	111	154	185	263	339	515	651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51	44	103	144	114	168	184	360	1,627
7.실업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5,463	9,436	21,930
실업보상	-	-	-	-	-	-	10	79	799
퇴직금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5,453	9,358	21,131
8.주거	-	-	-	-	-	-	-	-	-
9.기타	335	336	328	359	363	459	586	745	888

〈부표 7〉 계속

(단위: 십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47,160	47,015	48,058	49,386	56,460	67,390	73,275	84,930	사회복지지출
13,008	7,574	6,719	7,338	8,801	11,247	12,649	14,175	1.노령
900	1,040	1,172	1,364	1,597	1,825	2,013	2,235	2.유족
2,432	2,851	3,327	3,962	4,600	5,375	5,686	6,221	3.근로무능력
11,432	12,857	17,721	18,568	20,315	22,427	25,729	30,012	4.보건
684	879	1,252	1,273	1,589	2,337	2,510	5,010	5.가족
3,266	2,313	1,429	1,342	932	941	1,035	1,089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13,968	17,842	13,838	12,487	15,343	17,780	17,661	18,723	7.실업
936	471	845	835	1,030	1,448	1,752	2,074	실업보상
13,032	17,371	12,993	11,652	14,313	16,331	15,909	16,649	퇴직금
-	-	-	-	-	-	-	-	8.주거
1,469	1,659	2,600	3,052	3,284	5,460	5,992	7,465	9.기타

〈부표 8〉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사회복지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노령	15.8	16.9	19.0	21.6	22.2	23.6	21.6	19.1	19.0
2.유족	4.0	4.7	4.2	4.0	3.8	3.4	3.3	2.9	1.9
3.근로무능력	9.6	10.9	11.1	9.6	10.0	9.4	9.5	8.6	5.3
4.보건	40.1	37.7	36.1	35.1	32.8	32.1	35.1	30.7	20.6
5.가족	0.8	1.0	1.0	1.3	1.2	1.4	1.6	1.8	1.4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0.7	0.5	1.0	1.2	0.8	0.9	0.9	1.3	3.5
7.실업	24.4	24.4	24.5	24.3	26.7	26.6	25.3	33.1	46.6
실업보상	-	-	-	-	-	-	0.0	0.3	1.7
퇴직금	24.4	24.4	24.5	24.3	26.7	26.6	25.3	32.8	44.9
8.주거	-	-	-	-	-	-	-	-	-
9.기타	4.5	3.9	3.1	2.9	2.4	2.5	2.7	2.6	1.9

〈부표 8〉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회복지지출
27.6	16.1	14.0	14.9	15.6	16.7	17.3	16.7	1.노령
1.9	2.2	2.4	2.8	2.8	2.7	2.7	2.6	2.유족
5.2	6.1	6.9	8.0	8.1	8.0	7.8	7.3	3.근로무능력
24.2	27.3	36.9	37.6	36.0	33.3	35.1	35.3	4.보건
1.5	1.9	2.6	2.6	2.8	3.5	3.4	5.9	5.가족
6.9	4.9	3.0	2.7	1.7	1.4	1.4	1.3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29.6	38.0	28.8	25.3	27.2	26.4	24.1	22.0	7.실업
2.0	1.0	1.8	1.7	1.8	2.1	2.4	2.4	실업보상
27.6	36.9	27.0	23.6	25.4	24.2	21.7	19.6	퇴직금
-	-	-	-	-	-	-	-	8.주거
3.1	3.5	5.4	6.2	5.8	8.1	8.2	8.8	9.기타

〈부표 9〉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증감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사회복지지출		17.8	22.7	15.4	21.3	24.1	16.4	32.4	64.9
1.노령		26.1	37.9	31.2	24.7	31.8	6.4	17.4	63.6
2.유족		37.2	10.3	9.3	15.2	12.1	13.0	13.8	6.7
3.근로무능력		33.9	24.8	0.3	26.5	16.6	17.5	19.2	2.5
4.보건		10.5	17.6	12.2	13.3	21.7	27.2	15.9	10.4
5.가족		48.2	24.9	38.7	20.2	42.4	28.8	52.0	26.4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14.0	136.5	39.6	- 20.6	46.9	9.2	95.8	352.6
7.실업		18.0	22.9	14.6	33.4	23.5	11.0	72.7	132.4
실업보상		-	-	-	-	-	-	652.8	915.3
퇴직금		18.0	22.9	14.6	33.4	23.5	10.8	71.6	125.8
8.주거		-	-	-	-	-	-	-	-
9.기타		0.2	- 2.3	9.3	1.1	26.6	27.6	27.1	19.2

〈부표 9〉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2	- 0.3	2.2	2.8	14.3	19.4	8.7	15.9	사회복지지출
45.6	- 41.8	- 11.3	9.2	19.9	27.8	12.5	12.1	1.노령
3.0	15.5	12.7	16.4	17.1	14.3	10.3	11.0	2.유족
- 2.9	17.2	16.7	19.1	16.1	16.9	5.8	9.4	3.근로무능력
18.1	12.5	37.8	4.8	9.4	10.4	14.7	16.6	4.보건
5.2	28.4	42.5	1.7	24.8	47.1	7.4	99.6	5.가족
100.7	- 29.2	- 38.2	- 6.0	- 30.6	0.9	10.0	5.3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36.3	27.7	- 22.4	- 9.8	22.9	15.9	- 0.7	6.0	7.실업
17.1	- 49.7	79.5	- 1.2	23.4	40.6	21.0	18.4	실업보상
- 38.3	33.3	- 25.2	- 10.3	22.8	14.1	- 2.6	4.7	퇴직금
-	-	-	-	-	-	-	-	8.주거
65.5	12.9	56.7	17.3	7.6	66.3	9.7	24.6	9.기타

〈부표 10〉 기능별 사회복지지출(GDP대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사회복지지출	3.95	3.84	4.14	4.23	4.38	4.64	4.81	5.81	9.73
1.노령	0.62	0.65	0.79	0.92	0.97	1.10	1.04	1.11	1.85
2.유족	0.16	0.18	0.18	0.17	0.17	0.16	0.16	0.17	0.18
3.근로무능력	0.38	0.42	0.46	0.41	0.44	0.44	0.46	0.50	0.52
4.보건	1.58	1.45	1.49	1.48	1.44	1.49	1.69	1.79	2.00
5.가족	0.03	0.04	0.04	0.05	0.05	0.07	0.08	0.10	0.13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0.03	0.02	0.04	0.05	0.03	0.04	0.04	0.07	0.34
7.실업	0.96	0.94	1.01	1.03	1.17	1.23	1.22	1.92	4.53
실업보상	-	-	-	-	-	-	0.00	0.02	0.17
퇴직금	0.96	0.94	1.01	1.03	1.17	1.23	1.22	1.91	4.36
8.주거	-	-	-	-	-	-	-	-	-
9.기타	0.18	0.15	0.13	0.12	0.11	0.12	0.13	0.15	0.18

〈부표 10〉 계속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91	8.12	7.72	7.22	7.79	8.65	9.04	10.01	사회복지지출
2.46	1.31	1.08	1.07	1.21	1.44	1.56	1.67	1.노령
0.17	0.18	0.19	0.20	0.22	0.23	0.25	0.26	2.유족
0.46	0.49	0.53	0.58	0.63	0.69	0.70	0.73	3.근로무능력
2.16	2.22	2.85	2.71	2.80	2.88	3.17	3.54	4.보건
0.13	0.15	0.20	0.19	0.22	0.30	0.31	0.59	5.가족
0.62	0.40	0.23	0.20	0.13	0.12	0.13	0.13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2.64	3.08	2.22	1.82	2.12	2.28	2.18	2.21	7.실업
0.18	0.08	0.14	0.12	0.14	0.19	0.22	0.24	실업보상
2.46	3.00	2.09	1.70	1.98	2.10	1.96	1.96	퇴직금
-	-	-	-	-	-	-	-	8.주거
0.28	0.29	0.42	0.45	0.45	0.70	0.74	0.88	9.기타

〈부표 11〉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7,371	8,682	10,649	12,293	14,915	18,514
공공 부문	소계	5,431	6,395	7,854	9,101	10,711	13,301
	정부	1,892	2,275	2,587	2,891	3,361	3,890
	사회보험	3,539	4,121	5,266	6,211	7,350	9,411
	연금	1,235	1,571	2,141	2,785	3,453	4,482
	의료보장	1,765	1,848	2,193	2,573	2,918	3,793
	산업재해 보상보험	539	702	932	853	979	1,134
	고용보험	-	-	-	-	-	2
	민간 부문	민간	1,940	2,287	2,796	3,192	4,205
	법정 퇴직금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출산 휴가급여	-	-	-	-	-	-
	유급질병 휴가급여	143	166	190	205	220	235
	민간복지 서비스	-	-	-	-	-	55

〈부표 11〉 계속

(단위: 십억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부재원	재원
21,557	28,547	47,085	47,160	47,015	48,058	합계	
15,747	18,666	25,329	33,352	28,653	33,837	소계	공공 부문
5,040	6,050	7,280	9,273	8,996	9,728	정부	
10,707	12,617	18,048	24,079	19,657	24,110	사회보험	
4,728	5,511	8,945	13,052	7,656	6,712	연금	
4,600	5,432	6,542	8,315	9,623	14,292	의료보장	
1,355	1,556	1,451	1,274	1,456	1,745	산업재해 보상보험	
24	118	1,110	1,438	922	1,361	고용보험	
5,742	9,786	21,622	13,636	18,089	13,873	민간부문	민간 부문
5,453	9,358	21,131	13,032	17,371	12,993	법정 퇴직금	
	85	94	153	212	309	출산 휴가급여	
289	343	397	451	506	571	유급질병 휴가급여	
68	96	134	172	272	348	민간복지 서비스	

〈부표 11〉 계속

(단위: 십억원)

재원	세부재원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49,386	56,460	67,390	73,275	84,930
공공 부문	소계	36,365	40,668	49,392	55,634	66,401
	정부	10,759	11,686	16,558	18,587	24,616
	사회보험	25,608	28,982	32,834	37,047	41,786
	연금	7,330	8,912	10,294	12,095	13,332
	의료보장	14,916	15,947	17,548	19,334	22,249
	산업재해 보상보험	2,016	2,482	2,860	3,026	3,164
	고용보험	1,347	1,641	2,132	2,592	3,041
민간 부문	민간	12,591	15,267	17,394	16,967	17,772
	법정 퇴직금	11,652	14,313	16,331	15,909	16,649
	출산 휴가급여	260	321	362	307	366
	유급질병 휴가급여	679	633	701	751	757
	민간복지 서비스	430	525	605	674	757

〈부표 12〉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17.8	22.7	15.4	21.3	24.1	16.4	32.4	64.9
공공 부문	소계		17.7	22.8	15.9	17.7	24.2	18.4	18.5	35.7
	정부		20.2	13.7	11.8	16.3	15.7	29.6	20.0	20.4
	사회보험		16.4	27.8	17.9	18.3	28.0	13.8	17.8	43.0
	연금		27.2	36.3	30.1	24.0	29.8	5.5	16.6	62.3
	의료보장		4.7	18.7	17.3	13.4	30.0	21.3	18.1	20.4
	산업재해 보상보험		30.2	32.8	- 8.5	14.8	15.8	19.5	14.8	- 6.7
	고용보험		-	-	-	-	-	1,100.0	391.7	840.7
	민간 부문	민간		17.9	22.3	14.2	31.7	22.6	11.3	70.4
	법정퇴직금		18.0	22.8	14.7	33.4	23.5	10.8	71.6	125.8
	출산 휴가급여		-	-	-	-	-	-	-	10.6
	유급질병 휴가급여		16.1	14.5	7.9	7.3	6.8	23.0	18.7	15.7
	민간복지 서비스		-	-	-	-	-	23.6	41.2	39.6

〈부표 12〉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부재원	재원	
0.2	- 0.3	2.2	2.8	14.3	19.4	8.7	15.9	합계	공공 부문	
31.7	-14.1	18.1	7.5	11.8	21.5	12.6	19.4	소계		
27.4	-3.0	8.1	10.6	8.6	41.7	12.3	32.4	정부		
33.4	-18.4	22.7	6.2	13.2	13.3	12.8	12.8	사회보험		
45.9	- 41.3	-12.3	9.2	21.6	15.5	17.5	10.2	연금		
27.1	15.7	48.5	4.4	6.9	10.0	10.2	15.1	의료보장		
-12.2	14.3	19.8	15.5	23.1	15.2	5.8	4.6	산업재해 보상보험		
29.5	-35.9	47.6	- 1.0	21.8	29.9	21.6	17.3	고용보험		
- 36.9	32.7	-23.3	- 9.2	21.3	13.9	- 2.5	4.7	민간부문	민간 부문	
-	38.3	33.3	- 25.2	- 10.3	22.8	14.1	- 2.6	4.7		법정 퇴직금
62.8	38.6	45.8	- 15.9	23.5	12.8	- 15.2	19.2	출산 휴가급여		
13.6	12.2	12.8	18.9	- 6.8	10.7	7.1	0.8	유급질병 휴가급여		
28.4	58.1	27.9	23.6	22.1	15.2	11.4	12.3	민간복지 서비스		

〈부표 13〉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재원	세부재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문	소계	73.7	73.7	73.7	74.0	71.8	71.8	73.0	65.4	53.8
	정부	25.7	26.2	24.3	23.5	22.5	21.0	23.4	21.2	15.5
	사회보험	48.0	47.5	49.5	50.5	49.3	50.8	49.7	44.2	38.3
	연금	16.8	18.1	20.1	22.7	23.2	24.2	21.9	19.3	19.0
	의료보장	23.9	21.3	20.6	20.9	19.6	20.5	21.3	19.0	13.9
	산업재해 보상보험	7.3	8.1	8.8	6.9	6.6	6.1	6.3	5.5	3.1
	고용보험	-	-	-	-	-	0.0	0.1	0.4	2.4
	민간 부문	민간부문	26.3	26.3	26.3	26.0	28.2	27.9	26.6	34.3
	법정 퇴직금	24.4	24.4	24.5	24.3	26.7	26.6	25.3	32.8	44.9
	출산 휴가급여	-	-	-	-	-	-	-	0.3	0.2
	유급질병 휴가급여	1.9	1.9	1.8	1.7	1.5	1.3	1.3	1.2	0.8
	민간복지 서비스	-	-	-	-	-	0.3	0.3	0.3	0.3

〈부표 14〉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7,371	8,682	10,649	12,293	14,915	18,514
공공 부조	소계	861	1,035	1,127	1,258	1,324	1,524
	생활구호	821	1,014	1,126	1,246	1,320	1,490
(사회 보장)	재해구호	40	21	1	12	4	33
	북한이탈주민지원						1
	고엽제,위안부보호						
공공 복지 서비스	소계	1,031	1,240	1,460	1,633	2,037	2,366
	시설보호	52	64	74	85	123	138
	재가복지	104	128	174	239	297	424
	근로복지	38	30	90	107	237	319
	보건의료	837	1,018	1,122	1,202	1,380	1,485
	주거복지						
	교육복지						
사회 보험	소계	3,539	4,121	5,266	6,211	7,350	9,411
	연금	1,235	1,571	2,141	2,785	3,453	4,482
	의료보장	1,765	1,848	2,193	2,573	2,918	3,793
	산업재해보상보험	539	702	932	853	979	1,134
	고용보험						2
민간복지서비스		-	-	-	-	-	55
기업 복지	소계	1,940	2,287	2,796	3,192	4,205	5,157
	법정퇴직금	1,797	2,121	2,605	2,987	3,985	4,922
	출산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143	166	190	205	220	235

〈부표 14〉 계속

(단위: 십억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세부제도	제도
21,557	28,547	47,085	47,160	47,015	48,058	합계	
1,781	2,077	2,512	3,352	3,810	5,265	소계	공공 부조
1,751	2,069	2,449	3,286	3,784	5,239	생활구호	
29	7	62	65	19	10	재해구호	
1	1	1	1	7	16	북한이탈주민지원	
						고엽제,위안부보호	
3,259	3,973	4,768	5,921	5,186	4,463	소계	공공 복지 서비스
163	216	216	197	258	362	시설보호	
580	797	840	915	1,152	1,357	재가복지	
355	601	1,516	3,015	2,149	1,266	근로복지	
2,161	2,359	2,004	1,626	1,421	1,101	보건의료	
		192	168	206	377	주거복지	
						교육복지	
10,707	12,617	18,048	24,079	19,657	24,110	소계	사회 보험
4,728	5,511	8,945	13,052	7,656	6,712	연금	
4,600	5,432	6,542	8,315	9,623	14,292	의료보장	
1,355	1,556	1,451	1,274	1,456	1,745	산업재해보상보험	
24	118	1,110	1,438	922	1,361	고용보험	
68	96	134	172	272	348	민간복지서비스	
5,742	9,786	21,622	13,636	18,089	13,873	소계	기업 복지
5,453	9,358	21,131	13,032	17,371	12,993	법정퇴직금	
	85	94	153	212	309	출산휴가급여	
289	343	397	451	506	571	유급질병휴가급여	

〈부표 14〉 계속

(단위: 십억원)

제도	세부제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49,386	56,460	67,390	73,275	84,930
공공 부조	소계	5,850	6,370	7,503	9,205	11,002
	생활구호	5,528	6,137	7,468	9,167	10,831
(사회 보장)	재해구호	297	197	35	28	168
	북한이탈주민지원	25	36		9	1
	고엽제,위안부보호				1	2
공공 복지 서비스	소계	4,909	5,316	9,055	9,382	13,614
	시설보호	442	458	752	161	1,004
	재가복지	2,138	2,548	2,755	3,129	4,874
	근로복지	860	366	320	269	248
	보건의료	1,118	1,544	1,591	2,482	3,137
	주거복지			3,161	2,776	3,763
	교육복지	352	400	476	565	588
사회 보험	소계	25,608	28,982	32,834	37,047	41,786
	연금	7,330	8,912	10,294	12,095	13,332
	의료보장	14,916	15,947	17,548	19,334	22,249
	산업재해보상보험	2,016	2,482	2,860	3,026	3,164
	고용보험	1,347	1,641	2,132	2,592	3,041
민간복지서비스		430	525	605	674	757
기업 복지	소계	12,591	15,267	17,394	16,967	17,772
	법정퇴직금	11,652	14,313	16,331	15,909	16,649
	출산휴가급여	260	321	362	307	366
	유급질병휴가급여	679	633	701	751	757

〈부표 15〉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17.8	22.7	15.4	21.3	24.1	16.4	32.4	64.9
공공 부조	소계		20.2	8.9	11.6	5.2	15.1	16.9	16.6	20.9
	생활구호		23.5	11.0	10.7	5.9	12.9	17.5	18.2	18.4
(사회 보장)	재해구호		- 47.5	- 95.2	1,100.0	- 66.7	725.0	- 12.1	- 75.9	785.7
	북한이탈주민지원		-	-	-	-	-	-	-	-
	고엽제,위안부보호		-	-	-	-	-	-	-	-
공공 복지 서비스	소계		20.3	17.7	11.8	24.7	16.2	37.7	21.9	20.0
	시설보호		23.1	15.6	14.9	44.7	12.2	18.1	32.5	-
	재가복지		23.1	35.9	37.4	24.3	42.8	36.8	37.4	5.4
	근로복지		- 21.1	200.0	18.9	121.5	34.6	11.3	69.3	152.2
	보건의료		21.6	10.2	7.1	14.8	7.6	45.5	9.2	- 15.0
	주거복지		-	-	-	-	-	-	-	-
	교육복지		-	-	-	-	-	-	-	-
사회 보험	소계		16.4	27.8	17.9	18.3	28.0	13.8	17.8	43.0
	연금		27.2	36.3	30.1	24.0	29.8	5.5	16.6	62.3
	의료보장		4.7	18.7	17.3	13.4	30.0	21.3	18.1	20.4
	산업재해보상보험		30.2	32.8	- 8.5	14.8	15.8	19.5	14.8	- 6.7
	고용보험		-	-	-	-	-	1,100.0	391.7	840.7
민간복지서비스			-	-	-	-	-	23.6	41.2	39.6
기업 복지	소계		17.9	22.3	14.2	31.7	22.6	11.3	70.4	120.9
	법정퇴직금		18.0	22.8	14.7	33.4	23.5	10.8	71.6	125.8
	출산휴가급여		-	-	-	-	-	-	-	10.6
	유급질병휴가급여		16.1	14.5	7.9	7.3	6.8	23.0	18.7	15.7

〈부표 15〉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부제도	제도
0.2	- 0.3	2.2	2.8	14.3	19.4	8.7	15.9	합계	
33.4	13.7	38.2	11.1	8.9	17.8	22.7	19.5	소계	공공 부조
34.2	15.2	38.5	5.5	11.0	21.7	22.8	18.2	생활구호	
4.8	- 70.8	- 47.4	2,870.0	- 33.7	- 82.2	- 20.0	500.0	재해구호	(사 회 보 장)
-	600.0	128.6	56.3	44.0	- 100.0	-	- 88.9	북한이탈주민지원	
-	-	-	-	-	-	-	100.0	고엽제,위안부보호	
24.2	- 12.4	- 13.9	10.0	8.3	70.3	3.6	45.1	소계	공공 복지 서비 스
- 8.8	31.0	40.3	22.1	3.6	64.2	- 78.6	523.6	시설보호	
8.9	25.9	17.8	57.6	19.2	8.1	13.6	55.8	재가복지	
98.9	- 28.7	- 41.1	- 32.1	- 57.4	- 12.6	- 15.9	- 7.8	근로복지	
- 18.9	-12.6	- 22.5	1.5	38.1	3.0	56.0	26.4	보건의료	
-	-	-	-	-	-	-12.2	35.6	주거복지	
- 12.5	22.6	83.0	- 6.6	13.6	19.0	18.7	4.1	교육복지	
33.4	- 18.4	22.7	6.2	13.2	13.3	12.8	12.8	소계	사회 보험
45.9	- 41.3	- 12.3	9.2	21.6	15.5	17.5	10.2	연금	
27.1	15.7	48.5	4.4	6.9	10.0	10.2	15.1	의료보장	
- 12.2	14.3	19.8	15.5	23.1	15.2	5.8	4.6	산업재해보상보험	
29.5	- 35.9	47.6	- 1.0	21.8	29.9	21.6	17.3	고용보험	
28.4	58.1	27.9	23.6	22.1	15.2	11.4	12.3	민간복지서비스	
- 36.9	32.7	- 23.3	- 9.2	21.3	13.9	- 2.5	4.7	소계	기업 복지
- 38.3	33.3	- 25.2	- 10.3	22.8	14.1	- 2.6	4.7	법정퇴직금	
62.8	38.6	45.8	- 15.9	23.5	12.8	- 15.2	19.2	출산휴가급여	
13.6	12.2	12.8	18.9	- 6.8	10.7	7.1	0.8	유급질병휴가급여	

〈부표 16〉 제도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제도	세부제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 부조	소계	11.7	11.9	10.6	10.2	8.9	8.2	8.3	7.3	5.3
	생활구호	11.1	11.7	10.6	10.1	8.9	8.0	8.1	7.2	5.2
(사회 보장)	재해구호	0.5	0.2	0.0	0.1	0.0	0.2	0.1	0.0	0.1
	북한이탈주민지원	-	-	-	-	-	0.0	0.0	0.0	0.0
	고엽제,위안부보호	-	-	-	-	-	-	-	-	-
공공 복지 서비스	소계	14.0	14.3	13.7	13.3	13.7	12.8	15.1	13.9	10.1
	시설보호	0.7	0.7	0.7	0.7	0.8	0.7	0.8	0.8	0.5
	재가복지	1.4	1.5	1.6	1.9	2.0	2.3	2.7	2.8	1.8
	근로복지	0.5	0.3	0.8	0.9	1.6	1.7	1.6	2.1	3.2
	보건의료	11.4	11.7	10.5	9.8	9.3	8.0	10.0	8.3	4.3
사회 보험	소계	48.0	47.5	49.5	50.5	49.3	50.8	49.7	44.2	38.3
	연금	16.8	18.1	20.1	22.7	23.2	24.2	21.9	19.3	19.0
	의료보장	23.9	21.3	20.6	20.9	19.6	20.5	21.3	19.0	13.9
	산업재해보상보험	7.3	8.1	8.8	6.9	6.6	6.1	6.3	5.5	3.1
	고용보험	-	-	-	-	-	0.0	0.1	0.4	2.4
민간복지서비스		-	-	-	-	-	0.3	0.3	0.3	0.3
기업 복지	소계	26.3	26.3	26.3	26.0	28.2	27.9	26.6	34.3	45.9
	법정퇴직금	24.4	24.4	24.5	24.3	26.7	26.6	25.3	32.8	44.9
	출산휴가급여	-	-	-	-	-	-	-	0.3	0.2
	유급질병휴가급여	1.9	1.9	1.8	1.7	1.5	1.3	1.3	1.2	0.8

〈부표 16〉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부제도	제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7.1	8.1	11.0	11.8	11.3	11.1	12.6	13.0	소계	공공 부조
7.0	8.0	10.9	11.2	10.9	11.1	12.5	12.8	생활구호	
0.1	0.0	0.0	0.6	0.3	0.1	0.0	0.2	재해구호	(사회 보장)
0.0	0.0	0.0	0.1	0.1	-	0.0	0.0	북한이탈주민지원	
-	-	-	-	-	-	0.0	0.0	고엽제, 위안부보호	
12.6	11.0	9.3	9.9	9.4	13.4	12.8	16.0	소계	공공 복지 서비스
0.4	0.5	0.8	0.9	0.8	1.1	0.2	1.2	시설보호	
1.9	2.5	2.8	4.3	4.5	4.1	4.3	5.7	재가복지	
6.4	4.6	2.6	1.7	0.6	0.5	0.4	0.3	근로복지	
3.4	3.0	2.3	2.3	2.7	2.4	3.4	3.7	보건의료	
51.1	41.8	50.2	51.9	51.3	48.7	50.6	49.2	소계	사회 보험
27.7	16.3	14.0	14.8	15.8	15.3	16.5	15.7	연금	
17.6	20.5	29.7	30.2	28.2	26.0	26.4	26.2	의료보장	
2.7	3.1	3.6	4.1	4.4	4.2	4.1	3.7	산업재해보상보험	
3.0	2.0	2.8	2.7	2.9	3.2	3.5	3.6	고용보험	
0.4	0.6	0.7	0.9	0.9	0.9	0.9	0.9	민간복지서비스	
28.9	38.5	28.9	25.5	27.0	25.8	23.2	20.9	소계	기업 복지
27.6	36.9	27.0	23.6	25.4	24.2	21.7	19.6	법정퇴직금	
0.3	0.5	0.6	0.5	0.6	0.5	0.4	0.4	출산휴가급여	
1.0	1.1	1.2	1.4	1.1	1.0	1.0	0.9	유급질병휴가급여	

〈부표 17〉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사회복지지출	7,573	8,912	10,908	12,624	15,336	26,481
요소GDP대비%	4.56	4.41	4.74	4.86	5.07	7.46
총공공지출	5,431	6,395	7,854	9,101	10,711	13,301
총법정민간지출	1,940	2,287	2,796	3,192	4,205	5,157
총자발적민간지출	202	231	259	331	420	7,967
조세부담(-)	-	-	-	-	-	1,308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105
간접세	-	-	-	-	-	1,204
조세혜택(+)	-	-	-	-	-	206
T1	-	-	-	-	-	206
T2	-	-	-	-	-	-
순사회복지지출	7,573	8,912	10,908	12,624	15,336	25,378
요소GDP대비%	4.56	4.41	4.74	4.86	5.07	7.15
요소GDP(3-4)	165,999	202,091	229,966	259,869	302,570	354,739
1. 피용자보수	83,884	104,187	118,626	134,214	157,147	186,998
2. 영업잉여	61,304	73,634	83,773	93,801	109,202	119,611
3. 고정자본소모	20,811	24,271	27,566	31,855	36,221	48,132

〈부표 17〉 계속

(단위: 십억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구성항목
30,849	38,770	55,908	58,543	59,109	60,949	총사회복지지출
7.77	8.96	12.91	12.53	11.63	11.20	요소GDP대비%
15,747	18,666	25,329	33,352	28,653	33,837	총공공지출
5,810	9,881	21,756	13,808	18,362	14,221	총법정민간지출
9,292	10,223	8,823	11,383	12,094	12,890	총자발적민간지출
1,506	2,230	4,113	3,887	3,979	3,717	조세부담(-)
115	190	429	294	399	35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1,391	2,040	3,684	3,594	3,580	3,358	간접세
506	556	514	629	1,461	1,767	조세혜택(+)
506	556	514	629	1,461	1,767	T1
-	-	-	-	-	-	T2
29,848	37,096	52,309	55,285	56,591	58,999	순사회복지지출
7.52	8.57	12.08	11.83	11.13	10.84	요소GDP대비%
396,823	432,686	433,001	467,238	508,237	544,244	요소GDP(3-4)
214,430	226,608	216,974	227,934	248,167	270,470	1. 피용자보수
125,608	139,931	141,678	160,297	176,653	185,662	2. 영업잉여
56,784	66,147	74,349	79,007	83,416	88,113	3. 고정자본소모

〈부표 17〉 계속

(단위: 십억원)

구성항목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사회복지지출	63,752	73,070	80,693	88,253	102,330
요소GDP대비%	10.69	11.53	11.75	12.36	13.75
총공공지출	36,365	40,668	49,392	55,634	66,401
총법정민간지출	13,021	15,791	17,999	17,641	18,529
총자발적민간지출	14,366	16,611	13,303	14,978	17,400
조세부담(-)	3,716	4,666	5,442	5,784	6,127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344	513	803	983	1,095
간접세	3,371	4,153	4,639	4,801	5,032
조세혜택(+)	3,482	4,090	4,209	4,945	5,304
T1	3,482	4,090	4,209	4,945	5,304
T2	-	-	-	-	-
순사회복지지출	63,518	72,494	79,460	87,414	101,506
요소GDP대비%	10.65	11.44	11.57	12.24	13.64
요소GDP(3-4)	596,230	633,505	687,028	713,978	744,081
1. 피용자보수	294,481	319,892	344,641	365,161	385,004
2. 영업잉여	210,636	214,763	236,769	237,711	241,764
3. 고정자본소모	91,113	98,851	105,618	111,106	117,313

〈부표 18〉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증감률)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		17.69	22.39	15.73	21.48	72.68	16.49	25.68	44.20
요소GDP대비%		- 3.33	7.56	2.41	4.34	47.28	4.14	15.26	44.10
총공공지출		17.75	22.81	15.88	17.69	24.18	18.39	18.54	35.70
총법정민간지출		17.89	22.26	14.16	31.74	23.95	11.47	70.07	120.18
총자발적민간지출		14.27	12.16	28.04	26.89	1,796.60	16.62	10.02	- 13.69
조세부담(-)		-	-	-	-	-	15.16	48.02	84.45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10.22	64.50	126.31
간접세		-	-	-	-	-	15.59	46.66	80.56
조세혜택(+)		-	-	-	-	-	145.89	9.91	- 7.58
T1		-	-	-	-	-	145.89	9.91	- 7.58
T2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17.69	22.39	15.73	21.48	65.49	17.61	24.28	41.01
요소GDP대비%		- 3.33	7.56	2.41	4.34	41.15	5.14	13.98	40.91

〈부표 18〉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항목
4.71	0.97	3.11	4.60	14.62	10.43	9.37	15.95	총사회복지지출
- 2.96	- 7.18	- 3.71	- 4.52	7.87	1.83	5.24	11.26	요소GDP대비%
31.68	- 14.09	18.09	7.47	11.83	21.45	12.64	19.35	총공공지출
- 36.53	32.98	- 22.55	- 8.44	21.27	13.98	- 1.99	5.03	총법정민간지출
29.02	6.24	6.59	11.45	15.62	- 19.91	12.59	16.18	총자발적민간지출
- 5.49	2.36	- 6.58	- 0.03	25.57	16.63	6.28	5.93	조세부담(-)
- 31.57	35.92	- 10.03	- 4.18	49.13	56.53	22.42	11.3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2.46	- 0.38	- 6.20	0.39	23.20	11.70	3.49	4.81	간접세
22.37	132.25	20.94	97.06	17.46	2.91	17.49	7.26	조세혜택(+)
22.37	132.25	20.94	97.06	17.46	2.91	17.49	7.26	T1
-	-	-	-	-	-	-	-	T2
5.69	2.36	4.26	7.66	14.13	9.61	10.01	16.12	순사회복지지출
- 2.06	- 5.90	- 2.64	- 1.73	7.42	1.07	5.86	11.42	요소GDP대비%

〈부표 19〉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구성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총공공지출	71.72	71.75	72.00	72.09	69.84	50.23	51.05	48.15	45.30
총법정민간지출	25.62	25.66	25.63	25.29	27.42	19.68	18.83	25.49	38.91
총자발적민간지출	2.66	2.59	2.37	2.62	2.74	30.09	30.12	26.37	15.78
조세부담(-)	-	-	-	-	-	4.94	4.88	5.75	7.36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	-	-	-	-	0.39	0.37	0.49	0.77
간접세	-	-	-	-	-	4.55	4.51	5.26	6.59
조세혜택(+)	-	-	-	-	-	0.78	1.64	1.43	0.92
T1	-	-	-	-	-	0.78	1.64	1.43	0.92
T2	-	-	-	-	-	-	-	-	-
순사회복지지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95.84	96.76	95.68	93.56

〈부표 19〉 계속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항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총사회복지지출
56.97	48.5	55.5	57.0	55.7	61.2	63.0	64.9	총공공지출
23.59	31.1	23.3	20.4	21.6	22.3	20.0	18.1	총법정민간지출
19.44	20.5	21.1	22.5	22.7	16.5	17.0	17.0	총자발적민간지출
6.64	6.7	6.1	5.8	6.4	6.7	6.6	6.0	조세부담(-)
0.50	0.7	0.6	0.5	0.7	1.0	1.1	1.1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6.14	6.1	5.5	5.3	5.7	5.7	5.4	4.9	간접세
1.07	2.5	2.9	5.5	5.6	5.2	5.6	5.2	조세혜택(+)
1.07	2.5	2.9	5.5	5.6	5.2	5.6	5.2	T1
-	-	-	-	-	-	-	-	T2
94.43	95.74	96.80	99.63	99.21	98.47	99.0	99.2	순사회복지지출

〈부표 20〉 총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GDP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 (D)		
	공공부문(A)	법정민간 부문(B)				
1990	7,573	7,371	5,431	1,940	202	186,691
1991	8,912	8,682	6,395	2,287	231	226,008
1992	10,908	10,649	7,854	2,796	259	257,525
1993	12,624	12,293	9,101	3,192	331	290,676
1994	15,336	14,915	10,711	4,205	420	340,208
1995	26,481	18,514	13,301	5,212	7,967	398,838
1996	30,849	21,557	15,747	5,810	9,292	448,596
1997	38,770	28,547	18,666	9,881	10,223	491,135
1998	55,908	47,085	25,329	21,756	8,823	484,103
1999	58,543	47,160	33,352	13,808	11,383	529,500
2000	59,109	47,015	28,653	18,362	12,094	578,665
2001	60,949	48,058	33,837	14,221	12,890	622,123
2002	63,752	49,386	36,365	13,021	14,366	684,264
2003	73,070	56,460	40,668	15,791	16,611	724,675
2004	80,693	67,390	49,392	17,999	13,303	779,381
2005	88,253	73,275	55,634	17,641	14,978	810,516
2006	102,330	84,930	66,401	18,529	17,400	848,045

〈부표 21〉 총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 (D)
		공공부문(A)	법정민간 부문(B)		
1990	100.0	97.3	71.7	25.6	2.7
1991	100.0	97.4	71.8	25.7	2.6
1992	100.0	97.6	72.0	25.6	2.4
1993	100.0	97.4	72.1	25.3	2.6
1994	100.0	97.3	69.8	27.4	2.7
1995	100.0	69.9	50.2	19.7	30.1
1996	100.0	69.9	51.0	18.8	30.1
1997	100.0	73.6	48.1	25.5	26.4
1998	100.0	84.2	45.3	38.9	15.8
1999	100.0	80.6	57.0	23.6	19.4
2000	100.0	79.5	48.5	31.1	20.5
2001	100.0	78.8	55.5	23.3	21.1
2002	100.0	77.5	57.0	20.4	22.5
2003	100.0	77.3	55.7	21.6	22.7
2004	100.0	83.5	61.2	22.3	16.5
2005	100.0	83.0	63.0	20.0	17.0
2006	100.0	83.0	64.9	18.1	17.0

〈부표 22〉 사회복지지출 총괄(증감률)

(단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 (D)
		공공부문(A)	법정민간 부문(B)		
1991	17.7	17.8	17.7	17.9	14.3
1992	22.4	22.7	22.8	22.3	12.2
1993	15.7	15.4	15.9	14.2	28.0
1994	21.5	21.3	17.7	31.7	26.9
1995	72.7	24.1	24.2	23.9	1,796.6
1996	16.5	16.4	18.4	11.5	16.6
1997	25.7	32.4	18.5	70.1	10.0
1998	44.2	64.9	35.7	120.2	- 13.7
1999	4.7	0.2	31.7	- 36.5	29.0
2000	1.0	- 0.3	- 14.1	33.0	6.2
2001	3.1	2.2	18.1	- 22.5	6.6
2002	4.6	2.8	7.5	- 8.4	11.4
2003	14.6	14.3	11.8	21.3	15.6
2004	10.4	19.4	21.4	14.0	- 19.9
2005	9.4	8.7	12.6	- 2.0	12.6
2006	16.0	15.9	19.4	5.0	16.2

〈부표 23〉 사회복지지출 총괄(GDP대비)

(단위: %)

구분	총사회복지지출(C+D)				
	사회복지지출(C=A+B)				자발적 민간부문 (D)
	공공부문(A)		법정민간 부문(B)		
1990	4.06	3.95	2.91	1.04	0.11
1991	3.94	3.84	2.83	1.01	0.10
1992	4.24	4.14	3.05	1.09	0.10
1993	4.34	4.23	3.13	1.10	0.11
1994	4.51	4.38	3.15	1.24	0.12
1995	6.64	4.64	3.34	1.31	2.00
1996	6.88	4.81	3.51	1.30	2.07
1997	7.89	5.81	3.80	2.01	2.08
1998	11.55	9.73	5.23	4.49	1.82
1999	11.06	8.91	6.30	2.61	2.15
2000	10.21	8.12	4.95	3.17	2.09
2001	9.80	7.72	5.44	2.29	2.07
2002	9.32	7.22	5.31	1.90	2.10
2003	10.08	7.79	5.61	2.18	2.29
2004	10.35	8.65	6.34	2.31	1.71
2005	10.89	9.04	6.86	2.18	1.85
2006	12.07	10.01	7.83	2.18	2.05

〈부표 24〉 기능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사회복지지출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실업 보상	퇴직금				
1990	7,371	1,166	298	705	2,959	60	51	1,797	-	1,797	-	335
1991	8,682	1,471	409	944	3,269	89	44	2,121	-	2,121	-	336
1992	10,649	2,028	452	1,178	3,844	111	103	2,605	-	2,605	-	328
1993	12,293	2,661	494	1,182	4,313	154	144	2,987	-	2,987	-	359
1994	14,915	3,317	569	1,495	4,889	185	114	3,985	-	3,985	-	363
1995	18,514	4,373	637	1,744	5,947	263	168	4,922	-	4,922	-	459
1996	21,557	4,651	720	2,049	7,565	339	184	5,463	10	5,453	-	586
1997	28,547	5,459	819	2,443	8,771	515	360	9,436	79	9,358	-	745
1998	47,085	8,932	874	2,504	9,679	651	1,627	21,930	799	21,131	-	888
1999	47,160	13,008	900	2,432	11,432	684	3,266	13,968	936	13,032	-	1,469
2000	47,015	7,574	1,040	2,851	12,857	879	2,313	17,842	471	17,371	-	1,659
2001	48,058	6,719	1,172	3,327	17,721	1,252	1,429	13,838	845	12,993	-	2,600
2002	49,386	7,338	1,364	3,962	18,568	1,273	1,342	12,487	835	11,652	-	3,052
2003	56,460	8,801	1,597	4,600	20,315	1,589	932	15,343	1,030	14,313	-	3,284
2004	67,390	11,247	1,825	5,375	22,427	2,337	941	17,780	1,448	16,331	-	5,460
2005	73,275	12,649	2,013	5,686	25,729	2,510	1,035	17,661	1,752	15,909	-	5,992
2006	84,930	14,175	2,235	6,221	30,012	5,010	1,089	18,723	2,074	16,649	-	7,465

〈부표 25〉 기능별 사회복지지출(구성비)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실업 보상	퇴직금				
1990	100.0	15.8	4.0	9.6	40.1	0.8	0.7	24.4	-	24.4	-	4.5
1991	100.0	16.9	4.7	10.9	37.7	1.0	0.5	24.4	-	24.4	-	3.9
1992	100.0	19.0	4.2	11.1	36.1	1.0	1.0	24.5	-	24.5	-	3.1
1993	100.0	21.6	4.0	9.6	35.1	1.3	1.2	24.3	-	24.3	-	2.9
1994	100.0	22.2	3.8	10.0	32.8	1.2	0.8	26.7	-	26.7	-	2.4
1995	100.0	23.6	3.4	9.4	32.1	1.4	0.9	26.6	-	26.6	-	2.5
1996	100.0	21.6	3.3	9.5	35.1	1.6	0.9	25.3	0.0	25.3	-	2.7
1997	100.0	19.1	2.9	8.6	30.7	1.8	1.3	33.1	0.3	32.8	-	2.6
1998	100.0	19.0	1.9	5.3	20.6	1.4	3.5	46.6	1.7	44.9	-	1.9
1999	100.0	27.6	1.9	5.2	24.2	1.5	6.9	29.6	2.0	27.6	-	3.1
2000	100.0	16.1	2.2	6.1	27.3	1.9	4.9	38.0	1.0	36.9	-	3.5
2001	100.0	14.0	2.4	6.9	36.9	2.6	3.0	28.8	1.8	27.0	-	5.4
2002	100.0	14.9	2.8	8.0	37.6	2.6	2.7	25.3	1.7	23.6	-	6.2
2003	100.0	15.6	2.8	8.1	36.0	2.8	1.7	27.2	1.8	25.4	-	5.8
2004	100.0	16.7	2.7	8.0	33.3	3.5	1.4	26.4	2.1	24.2	-	8.1
2005	100.0	17.3	2.7	7.8	35.1	3.4	1.4	24.1	2.4	21.7	-	8.2
2006	100.0	16.7	2.6	7.3	35.3	5.9	1.3	22.0	2.4	19.6	-	8.8

〈부표 26〉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증감률)

(단위: %)

	사회복지지출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실업 보상	퇴직금			
1991	17.8	26.1	37.2	33.9	10.5	48.2	- 14.0	18.0		18.0	0.2
1992	22.7	37.9	10.3	24.8	17.6	24.9	136.5	22.9		22.9	- 2.3
1993	15.4	31.2	9.3	0.3	12.2	38.7	39.6	14.6		14.6	9.3
1994	21.3	24.7	15.2	26.5	13.3	20.2	- 20.6	33.4		33.4	1.1
1995	24.1	31.8	12.1	16.6	21.7	42.4	46.9	23.5		23.5	26.6
1996	16.4	6.4	13.0	17.5	27.2	28.8	9.2	11.0		10.8	27.6
1997	32.4	17.4	13.8	19.2	15.9	52.0	95.8	72.7	652.8	71.6	27.1
1998	64.9	63.6	6.7	2.5	10.4	26.4	352.6	132.4	915.3	125.8	19.2
1999	0.2	45.6	3.0	- 2.9	18.1	5.2	100.7	36.3	17.1	- 38.3	65.5
2000	- 0.3	- 41.8	15.5	17.2	12.5	28.4	- 29.2	27.7	- 49.7	33.3	12.9
2001	2.2	- 11.3	12.7	16.7	37.8	42.5	- 38.2	- 22.4	79.5	- 25.2	56.7
2002	2.8	9.2	16.4	19.1	4.8	1.7	- 6.0	- 9.8	- 1.2	- 10.3	17.3
2003	14.3	19.9	17.1	16.1	9.4	24.8	- 30.6	22.9	23.4	22.8	7.6
2004	19.4	27.8	14.3	16.9	10.4	47.1	0.9	15.9	40.6	14.1	66.3
2005	8.7	12.5	10.3	5.8	14.7	7.4	10.0	- 0.7	21.0	- 2.6	9.7
2006	15.9	12.1	11.0	9.4	16.6	99.6	5.3	6.0	18.4	4.7	24.6

〈부표 27〉 기능별 사회복지지출(GDP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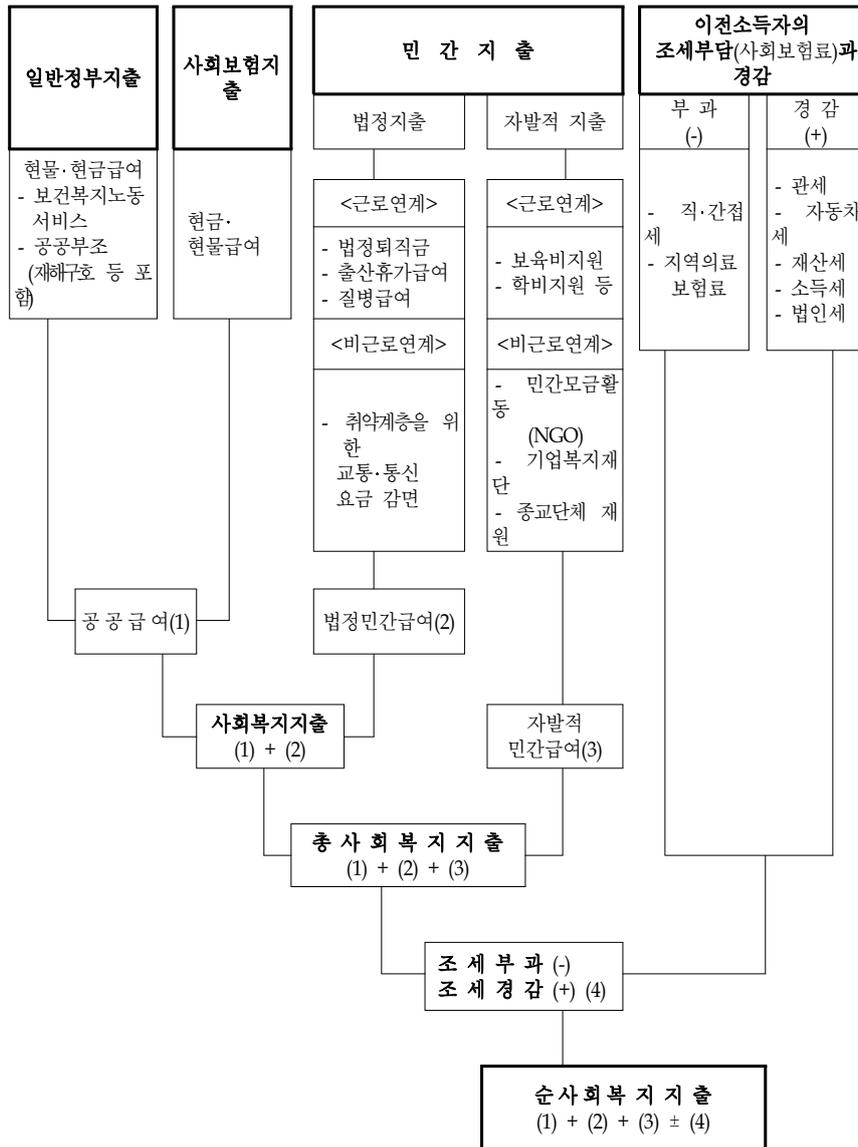
	사회복지지출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실업 보상	퇴직금				
1990	3.95	0.62	0.16	0.38	1.58	0.03	0.03	0.96	-	0.96	-	0.18
1991	3.84	0.65	0.18	0.42	1.45	0.04	0.02	0.94	-	0.94	-	0.15
1992	4.14	0.79	0.18	0.46	1.49	0.04	0.04	1.01	-	1.01	-	0.13
1993	4.23	0.92	0.17	0.41	1.48	0.05	0.05	1.03	-	1.03	-	0.12
1994	4.38	0.97	0.17	0.44	1.44	0.05	0.03	1.17	-	1.17	-	0.11
1995	4.64	1.10	0.16	0.44	1.49	0.07	0.04	1.23	-	1.23	-	0.12
1996	4.81	1.04	0.16	0.46	1.69	0.08	0.04	1.22	0.00	1.22	-	0.13
1997	5.81	1.11	0.17	0.50	1.79	0.10	0.07	1.92	0.02	1.91	-	0.15
1998	9.73	1.85	0.18	0.52	2.00	0.13	0.34	4.53	0.17	4.36	-	0.18
1999	8.91	2.46	0.17	0.46	2.16	0.13	0.62	2.64	0.18	2.46	-	0.28
2000	8.12	1.31	0.18	0.49	2.22	0.15	0.40	3.08	0.08	3.00	-	0.29
2001	7.72	1.08	0.19	0.53	2.85	0.20	0.23	2.22	0.14	2.09	-	0.42
2002	7.22	1.07	0.20	0.58	2.71	0.19	0.20	1.82	0.12	1.70	-	0.45
2003	7.79	1.21	0.22	0.63	2.80	0.22	0.13	2.12	0.14	1.98	-	0.45
2004	8.65	1.44	0.23	0.69	2.88	0.30	0.12	2.28	0.19	2.10	-	0.70
2005	9.04	1.56	0.25	0.70	3.17	0.31	0.13	2.18	0.22	1.96	-	0.74
2006	10.01	1.67	0.26	0.73	3.54	0.59	0.13	2.21	0.24	1.96	-	0.88

〈부표 28〉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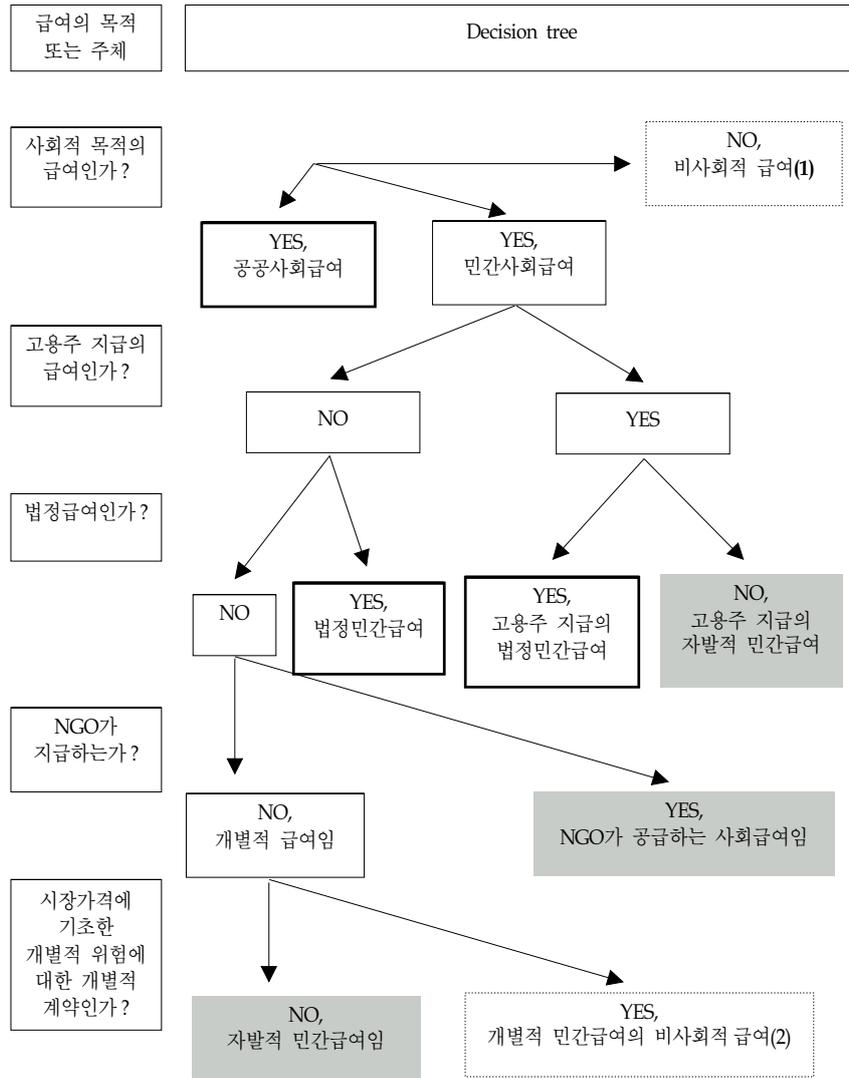
연도	GDP	사회지출	공공	민간	사회지출	공공	민간
1990	186,691	7,371	5,432	1,940	3.95	2.91	1.04
1991	226,008	8,682	6,395	2,287	3.84	2.83	1.01
1992	257,525	10,649	7,854	2,796	4.14	3.05	1.09
1993	290,676	12,293	9,101	3,192	4.23	3.13	1.10
1994	340,208	14,915	10,711	4,205	4.38	3.15	1.24
1995	398,838	18,514	13,301	5,212	4.64	3.34	1.31
1996	448,596	21,557	15,747	5,810	4.81	3.51	1.30
1997	491,135	28,547	18,666	9,881	5.81	3.80	2.01
1998	484,103	47,085	25,329	21,756	9.73	5.23	4.49
1999	529,500	47,160	33,352	13,808	8.91	6.30	2.61
2000	578,665	47,015	28,653	18,362	8.12	4.95	3.17
2001	622,123	48,058	33,837	14,221	7.72	5.44	2.29
2002	684,264	49,386	36,365	13,021	7.22	5.31	1.90
2003	724,675	56,460	40,668	15,791	7.79	5.61	2.18
2004	779,381	67,390	49,392	17,999	8.65	6.34	2.31
2005	810,516	73,275	55,634	17,641	9.04	6.86	2.18
2006	848,045	84,930	66,401	18,529	10.01	7.83	2.18
90/06연평균	9.9	16.5	16.9	15.1			

[부도 1] 순사회복지지출 구성도: 추계과정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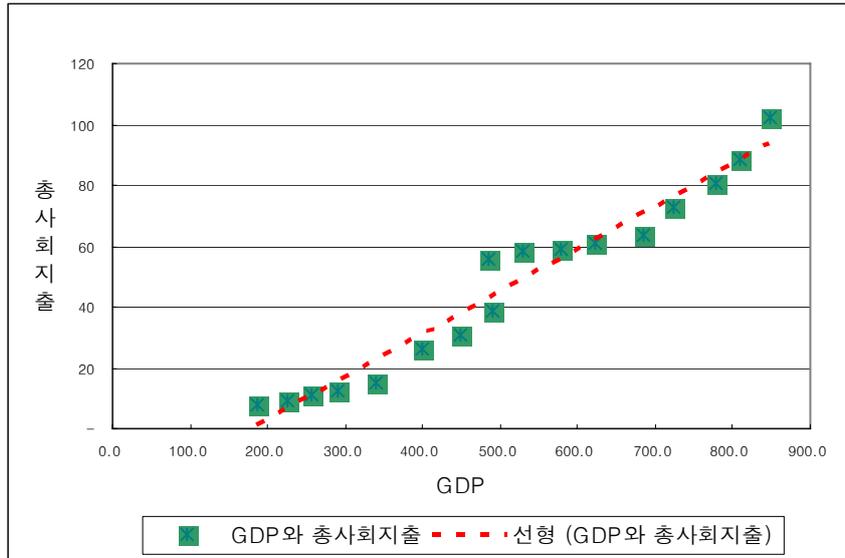
주: 1)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수령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임.
 2) 간접세액은 총사회복지지출에서 현물급여를 제외하고 평균간접세율을 곱하여 구함.

[부도 2] 사회적 급여의 범위: 의사결정나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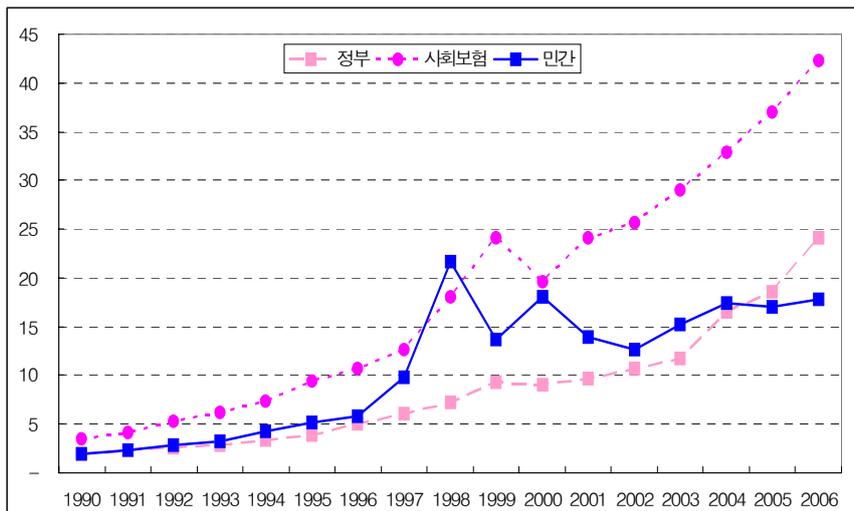


주: □ 부분은 사회복지지출 영역, ■ 부분은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추가 영역, ▨ 부분은 총사회복지지출 제외 영역임.
 자료: OECD, *Net Social Expenditure*, 1999에서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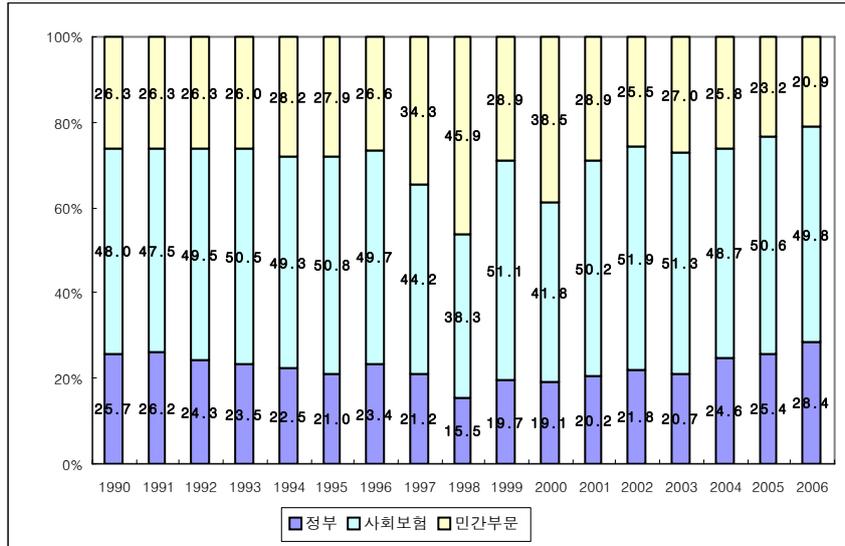
[부도 3] GDP와 총사회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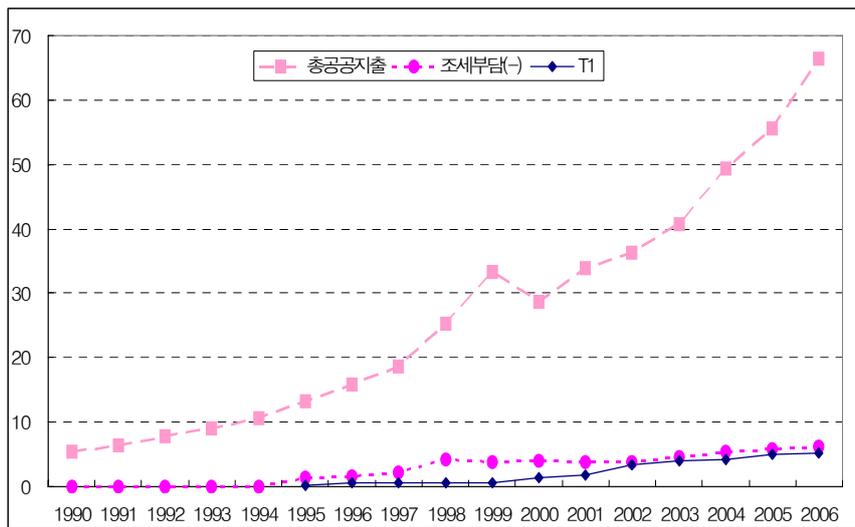
[부도 4]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



[부도 5] 자원별 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부도 6]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



[부도 7]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 현황(구성비)

